이 과제는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고용노동부

KLI 한국노동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22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진성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전영준(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지혜(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정해웅(한국노동연구원 전문보조원)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보고서의 구성 ····· 1

제2절 근로장려세제 개요 ····· 2

1.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 ····· 2

2. 제도 개요 ····· 2

제3절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연계성 ····· 7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해외 사례 ····· 11

1. 국가별 비교(미국, 영국, 프랑스) ····· 12

2. 미국의 EITC ····· 14

3. 영국의 WTC ····· 18

4. 프랑스의 PPE ····· 22

제5절 선행연구 ····· 26

1. 선행연구 요약 ····· 26

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 ····· 28

3.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 30

4. 미국 외 국가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 33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 35

제1절 근로장려금 수급 추이 ····· 35

제2절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 40

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현황(국세통계포털) ····· 40

2.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현황(한국복지패널) ····· 44

제3절 소 결 ····· 53

제3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 분석 ····· 55

제1절 일반균형분석의 의의 ····· 55

제2절 모 형 ····· 56

1. 모형의 구조 ····· 56

2. 모형 캘리브레이션 ····· 67

제3절 분석결과 ····· 71

1. 기준경제(S0) ····· 71

2. 정책시뮬레이션(S1-S7) ····· 78

제4절 소 결 ····· 91

제4장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 ····· 9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93

제2절 제도 주요 개정사항 ····· 94

1.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 개정 연혁 ····· 94

2.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유인 발생 시점 ····· 101

제3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 103

1. 연구모형 ····· 105

2. 자 료 ····· 108

3. 기초통계 ····· 109

제4절 분석결과 ····· 115

제5절 소 결 ····· 124

제5장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통한 정책효과 추정 ····· 127

제1절 서 론 ····· 127

제2절 분석방법 ····· 129

1. 정책효과의 정의 ····· 129

2.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 131

3. 근로장려세제 개편 효과 추정을 위한 적용 ····· 134

제3절 분석결과 ····· 135
1. 전체 처치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 ····· 135
2. 세부 처치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 ····· 138
제4절 소 결 ·····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3
제1절 요약 및 정리 ····· 143
1. 보고서 요약 ····· 143
2. 분석 결과 정리 ····· 146
제2절 정책 제언 ····· 148
1. 노동 참여 효과의 원인 ····· 148
2. 정책 제언 ····· 150

참고문헌 ····· 154

[부 록]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 개정 주요 연혁 ····· 161

표 목 차

〈표 1- 1〉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체계 세부 변화 ····· 5
〈표 1- 2〉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 7
〈표 1- 3〉 소득구간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7
〈표 1- 4〉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제도 비교 ····· 13
〈표 1- 5〉 EITC 급여체계(2021년 과세연도 기준) ····· 15
〈표 1- 6〉 EITC 유형별 조정총소득(2021년 과세연도 기준) ····· 16
〈표 1- 7〉 연도별 EITC 지급 현황 II : 2009-2019년 ····· 18
〈표 1- 8〉 WTC 집단별 최대 추가 지급액(2021년 과세연도 기준) ····· 19
〈표 1- 9〉 WTC 노동시간 조건 ····· 20
〈표 1-10〉 연도별 WTC 지급 현황 : 2010-2020년 ····· 21
〈표 1-11〉 PPE 급여체계(2014년 과세연도 기준) ····· 23
〈표 1-1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 ····· 28
〈표 1-13〉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reduced form analysis) ····· 30
〈표 1-14〉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structural analysis) ····· 32
〈표 1-15〉 미국 외 국가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 33

〈표 2- 1〉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 38
〈표 2- 2〉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 연도별 추이 ····· 39
〈표 2- 3〉 재산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 39
〈표 2- 4〉 재산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액 연도별 추이 ····· 40
〈표 2- 5〉 2021년 가구유형, 연령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 41
〈표 2- 6〉 2021년 가구유형, 산정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 42
〈표 2- 7〉 2021년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 43
〈표 2- 8〉 2021년 소득 종류별 '총급여액 등'의 가구수 분포 ····· 43
〈표 2- 9〉 복지패널 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가구원 관측수 추이 ····· 44
〈표 2-10〉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연령 분포 ····· 45
〈표 2-11〉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교육수준 ····· 46
〈표 2-12〉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삶의 사다리 점수 ····· 46

〈표 2-13〉 2020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 47
〈표 2-14〉 2020년 수급한 근로장려금의 사용현황 ····· 48
〈표 2-15〉 2020년 수급한 근로장려금의 도움정도 ····· 48
〈표 2-16〉 2020년 근로장려금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 49
〈표 2-17〉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제활동상태 ····· 50
〈표 2-18〉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사업장 규모 ····· 50
〈표 2-19〉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 51
〈표 2-20〉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 52
〈표 2-21〉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계약기간 설정 ···· 52
〈표 2-22〉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근로지속 가능성 ··· 52

〈표 3- 1〉 소득계층별 연령별 구직률 및 이직률 ····· 69
〈표 3- 2〉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 70
〈표 3- 3〉 거시경제 변수(기준경제) ····· 74
〈표 3- 4〉 정책시나리오 ····· 79
〈표 3- 5〉 거시경제변수 변화 ····· 82
〈표 3- 6〉 지니계수 ····· 82
〈표 3- 7〉 고용효과(전체) ····· 83
〈표 3- 8〉 고용효과(최저소득계층) ····· 83
〈표 3- 9〉 고용효과(차상위계층) ····· 84

〈표 4- 1〉 근로장려세제상 가구유형 정의 변화 ····· 101
〈표 4- 2〉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근로유인 발생 시점 기준) ····· 102
〈표 4- 3〉 기초통계량 ····· 110
〈표 4- 4〉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와 자격 여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117
〈표 4- 5〉 임금근로 및 자영업 고용효과 분석 결과 ····· 119
〈표 4- 6〉 임금근로 고용효과 분석 결과 ····· 121
〈표 4- 7〉 2019년 이후 임금근로 고용효과 – 이질적 효과 분석 결과 ···· 123

〈표 5- 1〉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6
〈표 5- 2〉 연령별 단독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9

〈표 5- 3〉 연령별 비단독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9
〈표 5- 4〉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40

〈표 6- 1〉 2018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 149
〈표 6- 2〉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분석 ····· 152

〈표 A- 1〉 근로장려세제 도입 ····· 161
〈표 A- 2〉 대상요건 - 신청 가능 요건 ····· 163
〈표 A- 3〉 대상요건 - 제외 요건 ····· 165
〈표 A- 4〉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 166
〈표 A- 5〉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 ····· 168
〈표 A- 6〉 가구유형 ····· 170
〈표 A- 7〉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172
〈표 A- 8〉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세부 변화 ····· 174

그림목차

[그림 1-1] 2021년(귀속연도) 총급여액 및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6
[그림 1-2]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 노동참여 유인 증가 ····· 8
[그림 1-3]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의 연관성 ····· 10
[그림 1-4] EITC 급여체계(단독가구, 2021년 과세연도 기준) ····· 15
[그림 1-5] 연도별 EITC 지급현황 I : 제도 도입 이후 ····· 17
[그림 1-6] WTC 급여 구조(기본 급여, 2021년 과세연도 기준) ····· 19
[그림 1-7] PPE 급여 구조(개인 부분, 2014년 과세연도 기준) ····· 23
[그림 1-8] 연도별 PPE 지급 현황 : 2002-2015년 ····· 25

[그림 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도별 수급가구수 추이 ····· 36
[그림 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도별 수급액 추이 ····· 36
[그림 2-3]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 37
[그림 2-4]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수급금액 연도별 추이 ··· 37
[그림 2-5]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수급액 연도별 추이 ····· 38

[그림 3-1] 소득계층별 연령별 임금률 ····· 69
[그림 3-2] 연령별 고용률 ····· 75
[그림 3-3] 연령별 전일제 비율 ····· 77
[그림 3-4] 연령별 노동공급 (노동시간) ····· 78
[그림 3-5] 연령별 고용효과 1(최저소득계층) ····· 85
[그림 3-6] 연령별 고용효과 2(최저소득계층) ····· 88
[그림 3-7] 연령별 고용효과 3(최저소득계층) ····· 89

[그림 4-1] 연도별 수급자격가구 비중 ····· 112
[그림 4-2] 연도별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 ····· 113
[그림 4-3] 연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 114
[그림 4-4] 연도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분포 ····· 115

[그림 4-5] 연도별 수급자격가구 비중(추정) ····· 125
[그림 4-6] 연도별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추정) ····· 126

[그림 5-1] 총급여액·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변천 ····· 128
[그림 5-2] SDID, DID, SC로 추정한 캘리포니아 법안 99호의 효과 ····· 132
[그림 5-3] 근로소득 유무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7
[그림 5-4] 임금근로자 주당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7
[그림 5-5]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유무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 138

요 약

□ 1장 : 서 론

○ (정책 배경과 발전)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됨.

- 도입 이후로 꾸준히 정책 대상 확대 및 지급액의 증가가 있었고, 그 중 2018년에 큰 제도 개편이 있었음.
- 정책 대상 확장 : (1) 30세 미만 단독가구 대상 추가, (2) 자산요건 확장(1.4억 → 2.0억), (3) 가구별 소득평가액(총급여액등) 구간 확장
-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대폭 상승

○ (고용연계성)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 이론적인 소득-여가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면
- (1) 점증구간에서 노동참여 증가 효과가 기대됨.
-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선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의 효과는 노동참여 증진과 저해 두 가지 경우 모두 수요-공급 모형으로 설명 가능하므로 이론적 예측이 어려움.

□ 2장 :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추이)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통해

2008년 도입 이후로 꾸준히 수급가구수와 지급액이 증가해왔음을 볼 수 있음.

- 특히 2018년의 제도 개편으로 수급가구수와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식) 복지패널의 근로장려금 관련 설문을 통해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
- 지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수급액 사용처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근로의욕(근로상태의 유지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임.

○ (수급가구의 근로 현황) 복지패널을 통해 수급가구의 근로자들은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임시임금근로와 일용임금근로의 비율이 높음.
-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음.

□ 3장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 일반균형모형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기에 용이함.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결과 1 : EITC 도입과 2018 개편) EITC의 도입과 현행제도로의 확장은 저소득층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전일제 비중이 줄어듦으로써 노동시간은 감소시킴.

○ (결과 2 : 제도 확장) (1) 2022년 개편안, (2) 최대지급액 상승과 함께 점증구간 기울기 상향, (3) 자산기준 완화 시나리오를 2018년 개편을 토대로 한 기준 경제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용률의

소폭 상승이 있었음.

- (1) 2022 개편안은 최저소득계층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차상위계층에서의 전일제 비율이 소폭 상승함.
- (2) 최대지급액 상승을 통한 점증구간 기울기 상승은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비율의 감소를 불러옴.
- (3) 자산기준 완화는 최저소득계층보다 차상위계층에서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비율 감소 효과를 보임.

○ (결과 3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영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상한액의 상승과 급여액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때, (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EITC의 효과를 비교해봄.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고용률이 내려가고 노동시간도 감소함.
- (2) 최저임금 상향조정은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킴.

□ 4장 :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함.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에 두고 일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Eligibility$)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함.

○ (분석결과 1) 근로 및 사업소득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했을 때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분석결과 2) 근로소득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했을 때, 분석범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옴.

- 2018년 이전만 범위에 포함하면 약 2%p, 2019년 이후만 포함하면 약 9%p의 계수가 추정됨.
- 이는 모형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두 동일할 때, 수급요건의 변화가 근로소득의 유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해석할 수 있음.

□ 5장 : 2018년 제도 개편의 정책 효과 추정

○ (분석방법) 20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함.
- 2018년 개편에서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산 2억 미만) 가구원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20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함.
- 비교집단을 정책의 영향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 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함(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분석결과) 근로소득유무, 근로시간, 점증구간소득유무 세 가지의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됨.
- 근로장려금의 확대가 노동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연령별, 가구형태별 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표준오차가 커서 추정 정확도에 아쉬움이 있음.

□ 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분석 결과 정리) 3장에서 다룬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과 4장과 5장에서 다룬 실증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세제는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및 급여 상승과 최저임금의 상향은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정책 체감도 등이 반영되고 단기적 정책 효과에 집중한 실증분석에서는
-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노동참여의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었으나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노동참여를 늘린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

○ (정책 제언) 노동 참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원인을 고려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서술함.

- 근로장려금 수급이 노동참여 결정을 바꿀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비탄력적인 노동).
- 노동공급 결정시기(t-1년)와 근로장려금 수급시기(t년 9월)의 차이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여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사전적 고려가 이루어지기보다,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주어지는' 사후적 수급으로 인식되어 노동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첫째로, 사회복지정책의 인프라 활용을 제안함. 여러 복지정책들의 심사를 위해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1) 신청시기를 고정할 필요가 없고, (2) 지급주기를 연간에서 월간 등으로 좁힐 수 있고, (3) 한번 신청한 뒤에는 재심사와 갱신이 쉽게 이뤄지며, (4) 정책 대상자 추가 발굴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음.
- 둘째로, 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제안함. 노동유인 증진보다 소득지원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미루어 보아 기존 두 가지 기능을 그대로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지원에 집중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필요함. 소득지원에 집중한다면 정책명 변경이나,

사다리꼴의 지급액 구조를 점증구간 없이 평탄구간부터 시작하는 영국식 지급액 구조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함.

○ 서론,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 실증 분석(2장으로 구성)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됨.

○ 서론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과 제도의 개요, 고용연계성, 해외사례 그리고 선행연구를 다루었음.

○ 근로장려세제 현황에서는 국세통계포털과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 추이와 지급 현황 그리고 수급 가구의 여러 특성들을 살펴 봄.

○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기준 경제를 설정한 뒤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예 : 근로장려세제 없음, 최저임금 상승 등)의 균제상태(steady state)와 비교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장기적 정책효과를 파악함.

○ 첫 번째 실증 분석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

○ 두 번째 실증 분석은 2018년(귀속연도)에 있었던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잠재적 수급 대상(2억 미만의 자산을 가진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음.

제2절 근로장려세제 개요

1.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1)]

○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가구수가 증가

○ 도입 이전까지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었음.

- 근로능력이 부족한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나 차상위 근로빈곤층[2)]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음.

○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부터 도입됨.

-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산정된 장려금을 2009년에 지급

2. 제도 개요

가. 수급요건

□ 기본요건

○ 신청자(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도입 초기에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1) 국세청(2007),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과 국세청(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를 참고하여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2)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아닌 계층.

전문직[3]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소득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종교인소득에도 확대됨.

□ 총소득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4],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아야 함(이 소득평가액을 '총급여액등'이라고 통칭함).

○ 총급여액등의 상한은 가구형태별로 다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높음.

- 2022년 발표된 개정안에서 총급여액 상한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임.

□ 재산요건

○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보다 낮아야 함.

○ 재산 합계액 계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점차 완화되어옴.

- 초기 1억 미만에서 2014년(귀속연도 기준)에 1.4억 미만, 2018년에 2억 미만 그리고 2022년에 2.4억 미만으로 완화됨.
- 2018년 개정에서 재산요건 상한은 2억이되, 1.4억에서 2억 사이의 자산을 가진 가구는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2022년 개정안에서는 반감되는 재산한도가 1.4억에서 1.7억으로 완화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4) 사업업종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부양자녀요건 및 단독가구 연령요건

○ 도입 초기에는 부양자녀 1인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무자녀 가족가구에 확대되며 부양자녀요건 폐지
○ 2013년 귀속 소득분부터 연령대별로 단독가구에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기타

○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수급대상에 포함
○ 도입 초기에는 무주택자 혹은 5천만 원 이하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6년 귀속 소득분부터 주택요건 폐지

나. 급여체계

○ 신청자(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총급여액등)에 대해 장려금 산정
○ 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 대해 점증구간, 평탄(최대지급)구간, 점감구간, 최대지급액으로 구성된 급여체계를 적용해서 계산됨.
○ 2011년, 201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부양자녀 인원별로 급여체계 차등
○ 2013년 귀속 소득분부터 가구형태를 단독가구[5], 홑벌이 가구[6], 맞벌이 가구[7]로 구분한 가구형태별로 급여체계 차등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순으로 최대지급액과 소득상한이 높아지는 형태
○ 이후 현재까지 가구형태별로 급여체계 확대

---

5)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6)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혹은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표 1-1〉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체계 세부 변화

(단위 : 만 원)

연도	주택요건	재산요건	가구형태	총급여액등 요건	최대 지급액
2008	무주택/ 5천만 원 이하 1주택	5천만 원 미만 전액 수급 1억 원 미만 50% 감액	부양자녀 1인 이상	1,700	120
2011	무주택/ 6천만 원 이하 1주택	상동	무자녀 가족가구 부양자녀 1명 부양자녀 2명 부양자녀 3명 이상	1,300 1,700 2,100 2,500	70 140 170 200
2013	상동	상동	단독가구 (60세 이상)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4	무주택/ 1주택	1억 원 미만 전액 수급 1.4억 원 미만 50% 감액	단독가구 (60세 이상)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5	상동	상동	단독가구 (50세 이상)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1,300 2,100 2,500	70 170 210
2016	주택요건 폐지	상동	단독가구 (40세 이상)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1,300 2,100 2,500	77 185 230
2017	-	상동	단독가구 (30세 이상)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1,300 2,100 2,500	85 200 250
2018	-	1.4억 원 미만 전액 수급 2억 원 미만 50% 감액	단독가구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2,000 3,000 3,600	150 260 300
2021	-	상동	단독가구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2,200 3,200 3,800	150 260 300
2022 (개편안)	-	1.7억 원 미만 전액 수급 2.4억 원 미만 50% 감액	단독가구 가족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2,200 3,200 3,800	165 285 330

자료 : 한종석, 김선빈, 장용성(2019)의 표 1을 토대로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그림 1-1] 2021년(귀속연도) 총급여액 및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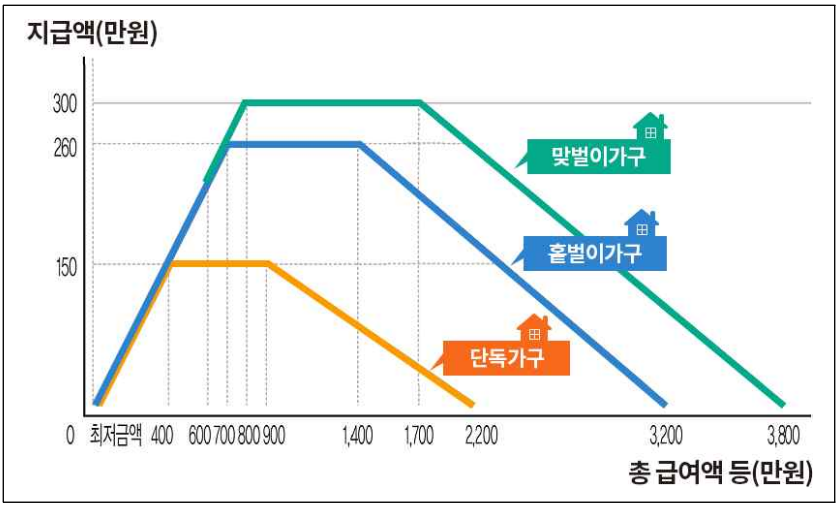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웹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다. 근로장려금 신청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지급

○ t-1년 귀속 연간 총급여액, 총소득, 재산에 대해 t년의 세제가 적용되어 t년 5월 신청 후 9월 지급(재산은 t-1년 6월 1일 기준)

□ 반기 신청지급

○ 2019년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 신청과 지급이 가능

○ t-1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해서 t-1년 9월 신청 후 t-1년 12월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재산은 t-2년 6월 1일 기준)

○ t-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t년 3월 신청 후 t년 6월 정산(t-1년 근로소득, 총소득, 재산에 대해 산정된 장려금과 t-1년 12월에 지급된 장려금을 비교해서 부족분은 추가지급, 초과분은 환수)[8]

8) 2019년 도입 당시에는 상반기분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한 장려금 산정액

〈표 1-2〉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점과 지급시점

	시점					
	t-1년 9월	t-1년 12월	t년 3월	t년 5월	t년 6월	t년 9월
정기신청	-	-	-	t-1년 연간소득분 신청	-	지급
반기신청	t-1년 상반기분 신청	t-1년 상반기분 지급	t-1년 하반기분 신청	-	정산	-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웹페이지를 토대로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제3절 근로장려세제의 고용연계성

□ 근로장려세제의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점증구간에서 노동참여가 없는 가구에 노동참여 유인을 제공함.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유인이 있음.

〈표 1-3〉 소득구간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구간	경로	결과
점증	(대체효과) 순임금률 증가 → 여가기회비용 증가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노동공급 ↑ 노동공급 ↓
평탄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노동공급 ↓
점감	(대체효과) 순임금률 감소 → 여가기회비용 감소 (소득효과) 실질소득 증가 → 여가시간 늘림	노동공급 ↓

자료 : 서민지(2012), p.24 〈표 12〉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의 35%를 12월에 지급 후 하반기분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0년 6월에 지급. 이후 실제 연간 소득에 대해 계산된 장려금과 비교해서 2020년 9월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소득-여가 모형을 통한 노동참여 증진 효과의 이해

○ 소득-여가 모형을 통해 점증구간의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평탄구간의 높이, 즉 최대지급액의 상승) 노동참여 유인이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림 1-2]는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세제가 없을 때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사람이 근로장려세제하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는 경우를 보여줌(여가 감소, $L \rightarrow L'$)
- 점증구간의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상대적으로 여가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까지 노동참여를 하게 됨.

[그림 1-2] 소득-여가 모형에서 근로장려금 노동참여 유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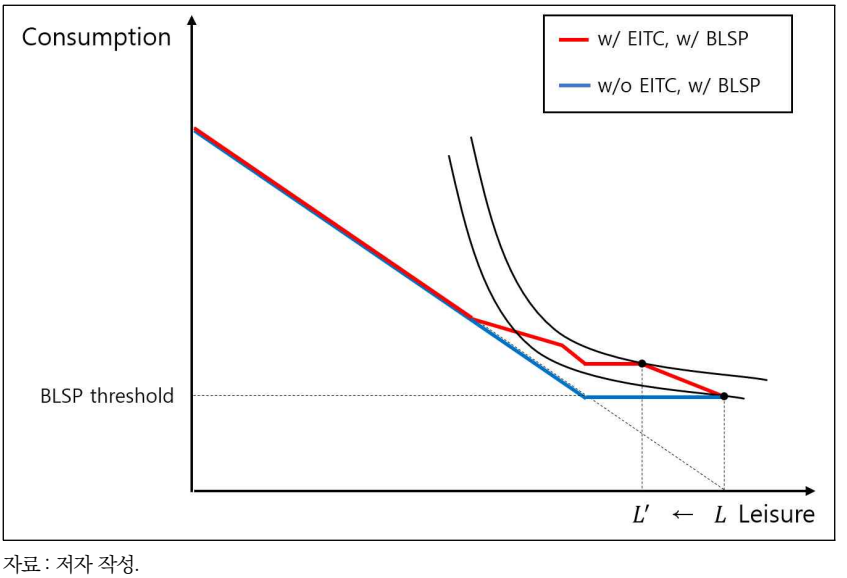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 소득-여가 모형의 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을 때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는 경우, 최소한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노동참

여하는 경우가 이미 많으므로 이 상황에 노동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아주 높음.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없을 때 노동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노동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여가에 대한 선호가 아주 높으므로 근로장려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노동참여에 나서는 경우가 적을 것임.

○ 비슷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선이 높아지면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가 더 높음.

- 소득기준선이 높아질수록 극단적인 여가 선호자 외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수급자에 포함되기 시작함.
-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이 제공하는 노동유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노동참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오는 중이며, 학계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음.

○ [그림 1-3]은 기초적인 노동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축소됨을 보여줌.

- 최저임금이 없을 때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효과의 증가 폭($E_B - E_A$)이 최저임금이 있을 때의 노동공급 효과 증가 폭($E_C - E_A$)보다 큼.

○ 그러나 그림과 달리, 근로장려금을 통해 늘어난 노동공급이 크지 않으면 최저임금 제도가 없을 때의 고용량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음($E_A < E_B < E_C$). 노동공급 그래프의 우측 이동폭이 작을 때에는 최저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낮으므로($W_C < W_B$) 고용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최저임금이 상승하였더라도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움.

[그림 1-3]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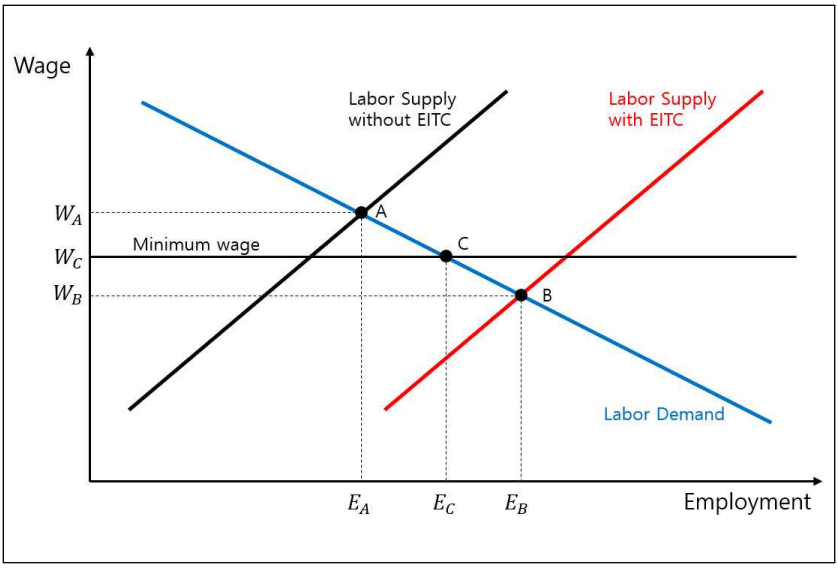

자료 : Rothstein and Zipperer(2020) p. 6 Figure C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근로장려세제의 개편과 실제 정책 효과

○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은 모든 가구유형의 점증구간 기울기를 가파르게 변화시킴.

○ 이론적으로 노동참여가 늘어나는 반응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첫 번째 이유로, 정책 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노동참여 결정에 고려할 만큼 체감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함.

-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책 대상자가 얼마나 체감하는지 그리고 지급액의 산정구조(사다리꼴)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노동공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t년 9월)과 근로장려금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t-1년) 사이의 시간이 짧지 않아서 노동공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예시 : 올해 노동참여를 안하려던 사람이 내년 9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계산해서 노동참여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노동참여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두 번째, 정책 대상자의 비탄력적인 노동공급으로 인해 노동참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점증구간 기울기에 맞춰서 점증구간의 끝, 즉 평탄구간 시작점에 근로소득을 맞출 수 있는 임금 혹은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아닐 경우 근로장려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근로소득이 없는 인구 중, (1)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변화에 반응이 없고, (2)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적은 근로시간의 일자리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해외 사례

○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조사하였음.

○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모델이 된 미국과 이를 각국의 환경과 방식에 맞게 발전시켜온 영국, 프랑스를 선정하였음.

- 영국, 프랑스의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급여 체계(예 :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사다리꼴식 지급액 결정구조)와 수급가구 요건 등 제도적 세부사항과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어갔는지에 초점을 맞춤.

○ 먼저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요약 정리된 부분을 먼저 설명한 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순서로 제도의 상세에 대해 다룸.

1. 국가별 비교(미국, 영국, 프랑스)

○ 빈곤 해소와 노동 동기의 제공이라는 제도 목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세 국가 간에는 급여체계, 수급요건, 지급주기, 급여수준과 같은 제도형태에 있어서 상이성을 보이고 있음(Laun, L., 2019; Marx, Nolan, 2014).

○ 급여체계 : 영국의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점증구간이 없이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만이 존재함.

- 미국과 프랑스는 세 구간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미국은 가구 형태에 상관 없이 점증, 평탄, 점감의 순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서 급여 체계의 구조가 달라짐.
- 프랑스에서는 무자녀 독신 가구의 경우 점증→점감, 유자녀 가구의 경우 점증→점감→평탄,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점증→점감→평탄→점감 구조의 순 등으로 설계되어 있음.

○ 수급요건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모두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아래의 소득수준에 있어야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영국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을 추가로 요건에 포함하고 있음.

- 미국과 프랑스는 수급요건으로 소득이라는 상위 범주 내에서 근로소득이라는 하위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미국은 프랑스와 달리 투자소득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는 과세대상소득(revenu fiscal de référence)을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과는 다른 범주인 조정 총소득을 사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근로소득 요건에 있어서 하한 요건, 즉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요구하고 있어, 소득계층 중 최하에 속하는 계층이 제외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수급 요건으로 사용되는 범주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소득이며, 노동시간을 수급 요건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영국 외에 아일

랜드, 뉴질랜드 등과 같은 비교적 소수의 국가 정도만이 존재함(Laun, L., 2019).

○ 지급주기 : 미국과 프랑스는 지급 시점이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로 다르지만 지급주기는 연 1회라는 점에서 동일함. 영국의 경우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월 1회 또는 주 1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급여수준[9] : 홑벌이(전일제) 2자녀 가구 기준 최대지급액을 1인당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였을 때, 영국이 9.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미국 8.6%, 프랑스가 3.4% 순으로 나타났음.

- 같은 앵글로-색슨 레짐 국가군에 속하는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0.5%p인 것에 비해, 대륙 레짐 국가군에 속하는 프랑스가 영국과 미국에 비해 각각 5.7%p, 5.2%p가 낮아 급여 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 한국의 홑벌이 2자녀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260만 원으로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6.5%임.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

〈표 1-4〉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제도 비교

구분		미국 EITC	영국 WTC	프랑스 PPE
도입 연도		1975년	1999년 (1999년 WFTC로 도입되었으며, 2003년 WTC와 CTC로 분리)	2001년
급여체계		점증, 평탄, 점감	평탄, 점감	가구 형태에 따라 복합적
수급요건		조정총소득, 투자소득	노동시간	근로소득, 과세 대상 소득
지급주기		연 1회 (상반기)	월 1회 또는 주 1회	연 1회(하반기)
급여수준	최대 지급액	$5,980	£3,135	€1,116
	1인당 GDP	$69,288	£34,415	€32,419
	비율	8.6%	9.1%	3.4%

주 : 최대 지급액은 홑벌이(전일제) 2자녀 가구 기준이며, 미국, 영국은 2021년, 프랑스는 2014년 과세연도 기준임.

자료 : Tax Policy Center(2022a); UK Goverment(2022e); Drees(2018 : 220); WorldBank(2022)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9)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추가적으로 EITC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급여 수준 비교의 해석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함.

난 수치이지만 프랑스에 비해서는 높으며, 그 차이를 볼 때 영국과는 2.6%p, 미국과는 2.1%p, 프랑스와는 3.1%p로 프랑스보다는 영국과 미국의 최대지급액 수준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한 최대지급액은 400만 원으로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10.0%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어지는 지원금 규모가 작지 않음.

2. 미국의 EITC

□ 배경

○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 Tax Credit, EITC)는 자녀가 있는 근로 가정에 대한 한시적 제도로서 1975년에 도입이 되었음(Crandall-Hollick, 2018).

○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점증 구간과 점감 구간만이 존재하였으나, Revenue Act of 1978(P.L. 95-600)에 의해 1979년부터 평탄 구간이 추가되었음(Hotz, 2001).

○ 가구 규모에 따른 급여 조정 부분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없었으나, Omnibus Reconciliation Act of 1990(OBRA90; P.L. 101 508)에 의해 가구 규모에 따른 조정이 1991년에 도입되었음(Crandall-Hollick, 2018).

○ 2002년에는 부부가 함께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혼 벌금(marriage penal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합산 신고 가구에 대해서 평탄 구간, 점감 구간의 길이를 단독 신고 가구에 비해 늘림(Rachidi, 2015).

□ 급여체계

○ 미국의 EITC의 급여체계는 [표 1-5]와 [그림 1-4]에서 보듯이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1-5〉 EITC 급여체계(2021년 과세연도 기준)

구분		자녀 수			
		0	1	2	3~
단독 가구	급여 증가율	15.3%	34%	40%	45%
	점증 구간	$9,820	$10,640	$14,950	
	최대 급여액	$1,502	$3,618	$5,980	$6,728
	평탄 구간	$11,610	$19,520		
	급여 감소율	15.3%	15.98%	21.06%	21.06%
	점감 구간	$21,417	$42,158	$47,915	$51,464
부부 가구	급여 증가율	15.3%	34%	40%	45%
	점증 구간	$9,820	$10,640	$14,950	
	최대 급여액	$1,502	$3,618	$5,980	$6,728
	평탄 구간	$17,550	$25,470		
	급여 감소율	15.3%	15.98%	21.06%	21.06%
	점감 구간	$27,367	$48,108	$53,865	$57,414

자료 : Tax Policy Center(2022a)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그림 1-4] EITC 급여체계(단독가구, 2021년 과세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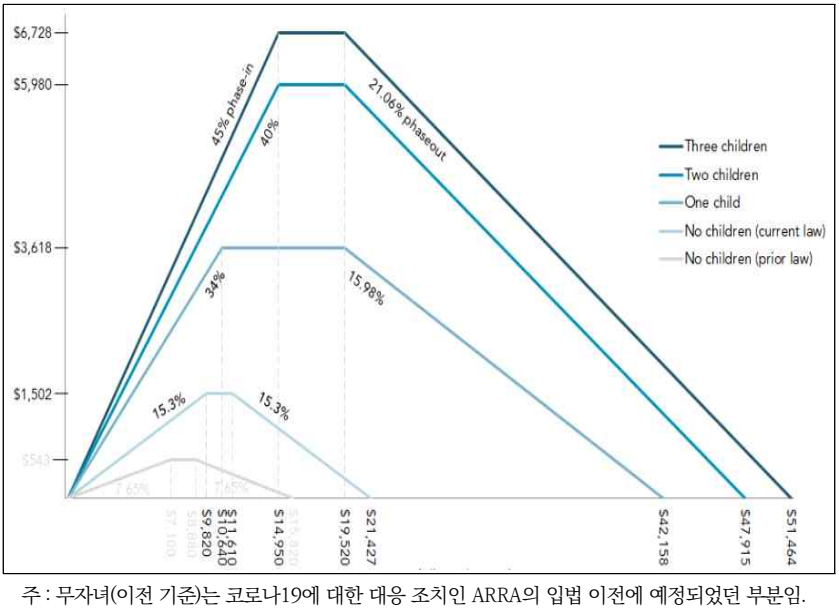

주 : 무자녀(이전 기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인 ARRA의 입법 이전에 예정되었던 부분임.
자료 : Tax Policy Center(2022b)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가구형태(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의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급여체계의 파라메터 값들(구간값, 변화율 등)이 차등화되어 있음.
○ (기준 예시) 홑벌이 가구 2자녀 기준 최대급여액은 $5,980임.

□ 수급요건

○ 청구자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다음의 〈표 1-6〉과 같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 조정총소득이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소득 조정(adjustments to income) 항목들을 제한 금액을 말함.
  - 총소득에는 임금, 배당금, 자본이득, 사업소득,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소득 조정 항목들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위자료 지급 등이 있음(Internal Revenue Service, 2022c).
  - 조정총소득 상한 기준액은 과세 단위 및 자녀 수에 따라 〈표 1-6〉과 같이 달라짐.
○ 투자소득이 $10,000 이하(2021년 기준)이어야 함.
  - 여기서 투자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금, 순임대료, 순자본이득 등을 말함(Falk, 2014).
  - 우리나라와 달리 자산요건이 없음.

〈표 1-6〉 EITC 유형별 조정총소득(2021년 과세연도 기준)

(단위 : 달러)

자녀 수	단독 신고 (single or head of household hilers)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joint filers)
0	21,430	27,380
1	42,158	48,108
2	47,915	53,865
3명 이상	51,464	57,414

자료 : Internal Revenue Service(2022a)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지급 결정 구조

○ t-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액을 산정함.

○ 직접 입금 또는 선불 현금 카드 방식을 택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t년도 3월 1일 이전에 환급을 받게 됨(Internal Revenue Service, 2022b).

□ 지급 규모 현황

○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제도가 계속 확장되면서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음.

○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표 1-7〉에서와 같이 최근 10년간 수급자 수, 지급액에 있어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1-5] 연도별 EITC 지급현황 I : 제도 도입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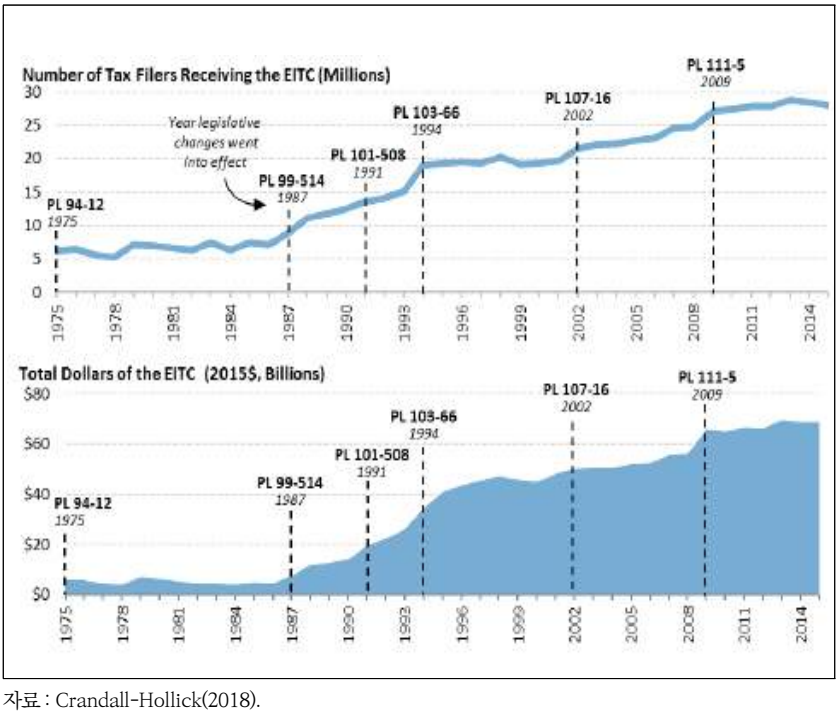

자료 : Crandall-Hollick(2018).

〈표 1-7〉 연도별 EITC 지급 현황 II : 2009-2019년

	수급자 수(명)	총 지급액(백만 달러)	평균 지급액(달러)
2009	27,041,498	59,239	2,191
2010	27,367,757	59,562	2,176
2011	27,911,726	62,906	2,254
2012	27,848,264	64,129	2,303
2013	28,821,785	68,082	2,362
2014	28,537,908	68,339	2,395
2015	28,081,708	68,525	2,440
2016	27,382,904	66,723	2,437
2017	27,030,382	66,443	2,458
2018	26,492,486	64,924	2,451
2019	26,738,391	64,478	2,411

자료 : Tax Policy Center(2022a)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3. 영국의 WTC

□ 배경

○ 영국의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WTC)의 기원은 1971년에 가족 문제, 특히 한부모 가족의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 FIS) 제도임(Dilnot, McCrae, 1999).

○ 이후 가족소득보조 제도는 1988년에 급여의 관대성(generosity) 강화 등의 개선을 하여 가족급여(Family Credit, FC) 제도로 변화하였음.

○ FC 제도는 1999년 미국의 EITC 제도의 영향을 받아 세액공제 방식인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es Tax Credit, WFTC)로 변화되었음(Strickland, 1988).

○ 2003년 WFTC는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WTC)와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 CTC)로 분리되었으며(Fisher, 2011), 2012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을 통하여 WTC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UC)로 통합되었음(Dwyer, Wright, 2014; Royston, 2012).

□ 급여 체계

○ 영국의 WTC 제도에는 점증 구간이 없으며, 평탄 구간과 점감 구간만이 존재함.

- 점감 구간의 시작점은 £6,565이며 감액률은 41%임(UK Government, 2022k).

○ WTC의 급여의 구조는 기본 급여 + 추가 급여의 형태임.

[그림 1-6] WTC 급여 구조(기본 급여, 2021년 과세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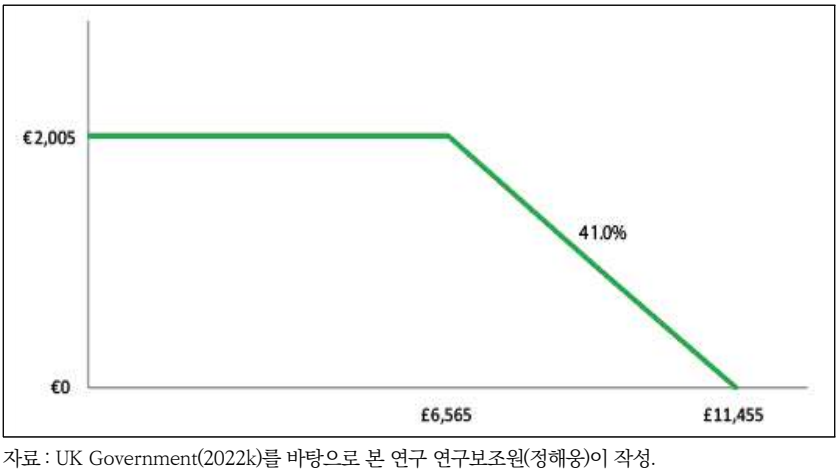

자료 : UK Government(2022k)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표 1-8〉 WTC 집단별 최대 추가 지급액(2021년 과세연도 기준)

가구 특성	지급액
부부	£2,005
한부모	£2,060
주당 30시간 노동	£830
장애인	£3,240
중증 장애인	£1,400
양육비	£175(1자녀), £300(2자녀 이상)

주 : 주당 30시간 노동 부분의 경우 신청자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함. 독신일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하지만,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부양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합산 30시간 이상(최소한 한 명은 16시간) 일하면 됨(UK Government, 2022b).

자료 : UK Government(2022k)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기본 지급액은 연 £2,005임.
- 소득, 연령, 노동 시간, 부양 아동의 수 및 연령, 육아 비용, 장애 여부와 같은 청구자 특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지급액은 〈표 1-8〉과 같음.
- (기준 예시) 홑벌이(전일제) 가구 2자녀 기준(주당 30시간 이상 노동) 최대급여액은 £3,135임.

□ 수급 요건

○ WTC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 특성별로 〈표 1-9〉와 같이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UK Government, 2022f).

- 자녀 양육 부부의 경우 요구되는 주당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24시간이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요구되는 주당 노동시간은 16시간임(UK Government, 2022f).
  -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노동 무능력(장애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급여를 받는 경우)
  -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또는 감옥에 있는 경우

〈표 1-9〉 WTC 노동시간 조건

가구 특성	주당 노동시간
핵심 경제 활동 연령대 노동자(Aged 25 to 59)	30시간
고령자(Age 60 or over)	16시간
장애인(Disabled)	16시간
한부모(Single with one or more children)	16시간
자녀 양육 부부(Couple with one or more children)	일반적으로 24시간(둘 중 하나는 16시간)

자료 : UK Government(2022f)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지급 결정 구조

○ t-1년도 4월 6일부터 t년도 4월 5일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

액을 산정함(UK Goverment, 2022d).

○ 신청 이후 5주 이후 첫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지급 주기는 매주 혹은 매달임(UK Goverment, 2022c).

□ 지급 규모 현황

○ 〈표 1-10〉을 보면 수급자 수 및 총지급액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WTC가 2012년 UC로 통합되면서 WTC를 신규로 신청할 수 없게 되었음.
- 기존 WTC 수급자는 취업, 실업, 자녀가 생긴 경우 등의 상황 변동이 아니라면,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하여 수급받던 WTC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UC를 신청하여야 함(UK Goverment, 2022g).

〈표 1-10〉 연도별 WTC 지급 현황 : 2010-2020년

연도	WTC와 CTC 동시 수급			WTC만 수급		
	수급자 (천 가구)	총 지급액 (백만 £)	평균 지급액(£)	수급자 (천 가구)	총 지급액 (백만 £)	평균 지급액(£)
2010	1,964	16,273	8,286	544	1,298	2,386
2011	1,904	16,433	8,631	540	1,304	2,415
2012	1,783	15,691	8,800	512	1,191	2,326
2013	1,780	15,921	8,944	512	1,175	2,295
2014	1,785	16,247	9,102	508	1,186	2,335
2015	1,759	16,224	9,223	480	1,131	2,356
2016	1,654	15,220	9,202	401	931	2,322
2017	1,556	14,340	9,216	342	818	2,392
2018	1,365	12,653	9,270	278	695	2,500
2019	1,056	9,851	9,329	212	560	2,642
2020	868	8,756	10,088	217	655	3,018

자료 : UK Goverment(2022j)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4. 프랑스의 PPE

□ 배경

○ 고용 수당 제도(Prime pour l'emploi, PPE)는 미국의 EITC와 영국의 WFTC의 영향을 받아 (1) 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2) 실업 상태의 저숙련자 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됨(Bonnefoy et al., 2009; Dupont, Sterdyniak, 2001; Pervier, 2005).

○ 2009년 PPE와 제도적 중복성이 강한 적극적 연대 급여(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정책이 시행되면서 PPE의 수급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음(Drees, 2018).

○ 2016년 1월 1일, 제도간 중복 문제로 통합 논의가 계속되었던 PPE와 활동적 rSa(rSa activité)는 경제활동 추가수당(Prime d'activité, PA)으로 통합되었음(Drees, 2018).

□ 급여 체계

○ PPE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 내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개인별 PPE 금액의 합산액과 가구별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지급액을 합산하여 가구 단위 PPE 금액을 산출함.

- PPE의 기본 급여체계는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탄 구간이 없이 점증 구간과 점감 구간만이 존재하며, 〈표 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형태에 따라 점감 구간 이후에 평탄 구간 및 점감 구간 등이 발생하게 됨.
- 단, PPE 산정액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PPE를 지급하지 아니함(Drees, 2018).
- (기준 예시) 홑벌이(전일제) 가구 2자녀 기준 최대급여액은 €1,116임.

[그림 1-7] PPE 급여 구조(개인 부분, 2014년 과세연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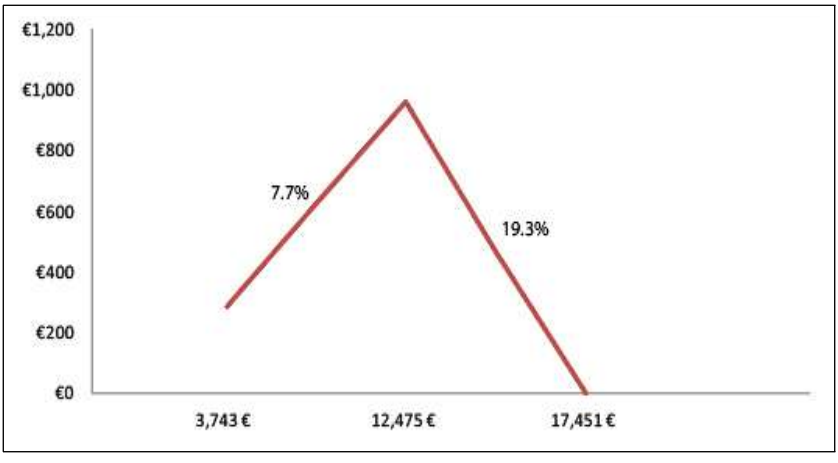

자료 : Drees(2018 : 220)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표 1-11〉 PPE 급여체계(2014년 과세연도 기준)

노동소득 EI	기본 급여액	가구 형태별 추가 지급액			
		홑벌이 가구주	부양 자녀 부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독신/사별/이혼 가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사별/이혼 가구
€3,743 ≦ EI ≦ €12,475	EI x 7.7%	€83	자녀 1명당 €36	자녀 1명당 €36	첫째 €72, 둘째 이후 자녀 1명당 €36
€12,475 < EI ≦ €17,451	(€17,451 - EI) x 19.3%				
€17,451 < EI ≦ €24,950	0		€36	0	€72
€24,950 < EI ≦ €26,572	0	(€26,572 - EI) x 5.1%			

주 : 1) 여기서 홑벌이 가구란 부부 및 시민연대계약 구성원 중 한 명이 일을 하지 않거나 €3,743 미만의 노동소득자를 말함.
2) 여기서 부양 자녀란 일을 하지 않거나 €3,743 미만의 노동소득자를 말함.
자료 : Drees(2018 : 220)를 토대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수급 요건

○ PPE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Ministe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eforme de l'etat, 2012; Institut des Politiques Publiques, 2022).

- 첫째, 가구 구성에 따라 가구의 과세 대상 연소득이 다음의 금액 미만이어야 함. ① 단독 가구 : €16,251(추가 자녀 1명당 €4,490) ② 부부 및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가구 : €32,498(추가 자녀 1명당 €4,490)
- 둘째, 가구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유급 노동을 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인정되는 유급노동의 범위는 임금노동, 자영업, 시간제 및 전일제를 모두 포함함.
- 셋째, 가구 구성원 1명당 연 근로소득이 (1) 최소 €3,507(전일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의 0.3배) 이상이어야 하며, (2)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17,451 이하, (3) 부부 및 시민연대계약 가구이면서 둘 중 최소 한 명이 €3,743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 또는 단독 가구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26,572 이하여야 함.

□ 지급 결정 구조

○ t-1년도의 과세대상 노동소득에 대해서 t년도 하반기에 연 1회 지급됨 (Drees, 2018; Ministe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eforme de l'etat, 2012).

□ 지급 규모 현황

○ [그림 1-8]에서 보듯이 PPE 수급가구 수는 제도 도입 초기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PPE의 급여체계의 파라메터 값들이 동결되고, 2009년 rSa가 도입되면서 PPE의 수급가구 수는 감소하기 시작함. 제도가 종결된 2015년의 PPE 수급가구 수는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Montgolfier, 2015).

○ PPE 총 지급액은 제도 도입 이후 전반기 동안 수급가구 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전반기 동안 급여 수준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기 때문임(Bonnefoy et al., 2009; Montgolfier, 2015).

[그림 1-8] 연도별 PPE 지급 현황 : 2002-2015년

(단위 : 십억 유로,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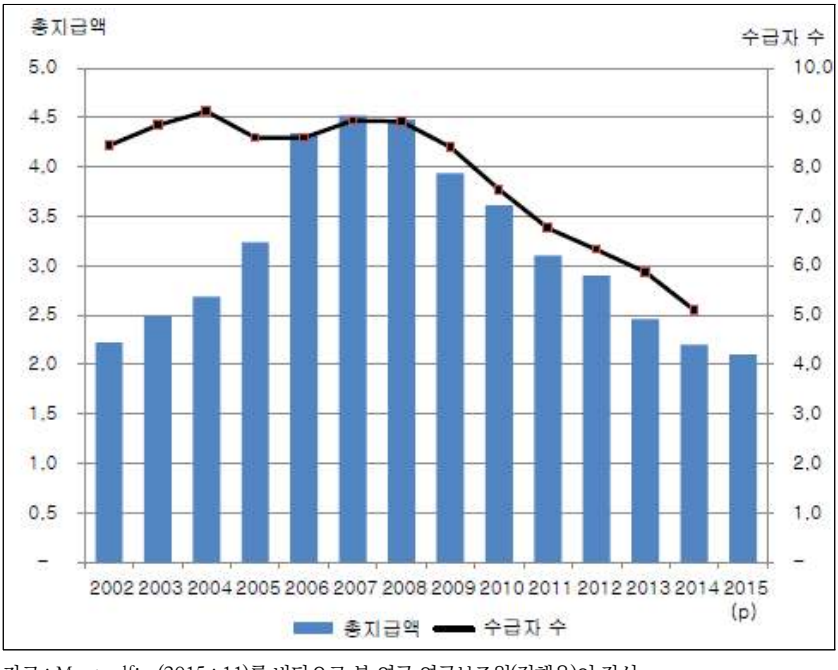

자료 : Montgolfier(2015 : 11)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제5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요약

가.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 제도 도입 및 2018년 이전 제도 개편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분석자료, 분석 대상 제도 개편, 분석 대상 가구, 식별전략 등에 따라서 노동공급 반응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지혜 · 이정민(2018)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제도 변화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여부의 변화를 이용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추정했으며, 여러 분석자료, 제도 변화, 사회인구학적 집단별로 나누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2018 제도 개편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질적 경제주체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한 한종석 외(2019)에서는 자산분포와 가격변수가 고정된 단기에서 단독가구의 고용률 증가를 혼인가구의 노동공급 감소가 상쇄해서 전체적인 고용률은 소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
- 자체 설문조사와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김문정 · 김빛마로(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특정 집단(단독가구나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노동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나. 해외의 근로장려세제

○ 선행연구 대부분이 미국 EITC와 영국 WFTC를 분석하였으며 여성 한부

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리고 근로시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비교적 최근 연구인 Kleven(2021)은 많은 선행연구가 이용한 CPS 자료와 식별전략을 바탕으로 노동공급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몇몇 연구들은 노동공급 효과가 사회인구학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부양자녀 인원수 및 연령별 효과(Francesconi & Van der Klaauw, 2007; Michelmore & Pilkauskas, 2021)
- 혼인가구에 대한 효과(Eissa & Hoynes, 2004; Francesconi et al., 2009)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Blundell et al., 2016)

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

〈표 1-12〉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유민이 외 (2014)	한국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가구 특성별로 분석	복지패널 (2006-2010)	EITC 도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 가능한 최대금액의 변화를 이용한 회귀분석	기혼자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혼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대웅 외 (2015)	한국 EITC가 경제활동참여 및 근로시간,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복지패널 (2009, 2013)	EITC 도입을 이용한 성향점수 매칭 및 매칭 이중차분, 삼중차분 모형 분석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가구주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가 여성 가구주보다 높게 나타남
홍민철 외 (2016)	한국 EITC의 노동공급,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복지패널 (2007, 2011) 노동패널 (2007, 2011) 재정패널 (2008, 2011)	EITC 도입을 이용한 매칭 이중차분 모형 분석	분석자료별로 다른 결과 도출 복지패널 : 경제활동참여 감소, 주당 근로시간 감소, 빈곤율 증가 재정패널 : 경제활동참여 증가, 주당 근로시간 감소 노동패널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없음
남재량 (2017)	한국 EITC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노동패널 (2008-2012)	EITC 도입 및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분석	가구 내 취업자 수와 연간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점증구간에서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안종석 외 (2017)	한국 EITC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국세청 미시자료 (2008-2015) 재정패널 (2009-2015)	전이확률행렬 2011, 2013, 2014년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분석	수급자의 고용 지속성과 실업 탈출 확률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점증구간에 있는 가구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표 1-12〉의 계속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신우리·송헌재 (2018)	한국 EITC의 확대개편이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패널 (2009-2015)	EITC 도입 및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모형 분석	분석기간 내에서 비교적 수급요건이 크게 완화된 2011년, 2014년 제도 개편이 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박지혜·이정민 (2018)	한국 EITC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분석	노동패널(2005-2016) 재정패널(2010-2016) 복지패널(2006-2017) 가금복(2012-2017)	EITC 도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가능 여부와 수급가능 금액의 변화를 이용한 회귀분석	대체로 노동시장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자료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혼재 근로소득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한 2013년까지의 제도 변화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60-64세에 대한 효과가 평균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한종석 외 (2019)	2019년 한국 EITC 개편이 가구형태별 연령별 노동공급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동패널 지역별고용조사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캘리브레이션 후 정책실험	고용률의 경우 단독가구의 고용률 증가를 혼인가구의 고용률 감소가 상쇄하여 전체적인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점감구간의 확대로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경제 전체의 유효노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문정·김빛마로 (2020)	2019년 한국 EITC 확대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자체 설문조사	EITC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자산요건을 기준으로 통제집단 설정	전체 표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공급 효과를 발견하지 못함 가구형태별 분석을 통해 단독가구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 발견
홍우형 (2021)	2014년 한국 EITC 개편이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패널 (2012-2016)	EITC 제도 변화를 이용한 패널 고정효과모형 분석	가구 내 부소득자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 내 주소득자의 노동공급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박지원 (2022)	한국 EITC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복지패널 (2016-2018)	표본선택모형을 통해 미취업자와 기취업자에 대한 효과 분해	미취업자의 근로일수 및 주 근로시간이 증가 기취업자의 노동공급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소폭 감소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3.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가.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reduced-form analysis)

〈표 1-13〉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reduced form analysis)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Eissa & Liebman (1996)	EITC가 여성 한부모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CPS (1985-1987, 1989-1991)	1986년 EITC 확대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혹은 한 명인) 미혼여성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Ellwood (2000)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 개편이 노동공급, 혼인/동거 결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1975-1999)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시간당 임금에 따른 수급 금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해서 설정	한부모가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Meyer & Rosenbaum (2000)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1968-1997)	198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진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혹은 한 명인) 미혼여성	한부모가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부양자녀수가 많아 EITC 수급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노동시장참여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Meyer & Rosenbaum (2001)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1984-1996)	198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진 주별/연도별 조세/보조금 정책변화를 이용한 회귀분석	EITC와 조세제도의 변화가 같은 기간에 일어난 노동시장참여 증가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표 1-13〉의 계속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Grogger (2003)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가 여성 가구주 가구의 복지 수급, 노동공급, 임금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1979-2000)	1990년대 EITC를 포함한 복지제도 개편을 이용한 고정효과 회귀분석	EITC가 분석기간 동안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 증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Eissa & Hoynes (2004)	EITC가 기혼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CPS (1985-1997)	1975년부터 1996년 사이의 EITC 도입 및 확대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혼인가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기혼남성의 노동공급 증가를 상쇄해서 기혼가구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Hoynes & Patel (2018)	노동공급 효과를 고려한 EITC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CPS (1985-2011)	1990년대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이벤트 스터디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혹은 한 명인) 미혼여성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Lim & Michelmore (2018)	EITC가 기혼여성의 자영업 활동에 미친 효과 분석	SIPP (1990-2008)	EITC 제도 변화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기혼여성의 자영업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Bastian (2020)	1975년 EITC의 도입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CPS (1971-1986)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여성	EITC의 도입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Michelmore & Pilkauskas (2021)	EITC의 노동공급 효과를 부양자녀의 연령대별로 분석	CPS (1990-2016)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자녀의 나이가 13~17세인 미혼여성	EITC는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인 미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자녀의 나이가 3~12세인 미혼여성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Kleven (2021)	EITC의 노동시장참여 효과 분석	CPS (1968-2017)	EITC의 1975년 도입 및 이후 확대를 이용한 이벤트 스터디 분석	노동시장참여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나.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structural analysis)

〈표 1-14〉 미국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structural analysis)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Dickert et al. (1995)	EITC 확대가 근로시간, 노동시장 참여에 미친 효과 분석	SIPP	- 미시모의실험 모형	1993년 EITC 확대로 한부모가구와 가구 내 주소득자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threya et al. (2014)	EITC가 비숙련 여성의 노동공급과 소비보험에 미치는 효과 분석	CPS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캘리브레이션 후 정책실험	비숙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가 근로시간 감소를 상쇄해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위험과 한부모가구가 될 위험에 대한 보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Koşar (2019)	EITC가 여성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분석	PSID	생애주기 모형 추정 후 정책실험 경력연수를 통한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 채널이 존재	노동시장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공급 효과가 경력연수를 늘림으로써 미래의 임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Froemel & Gottlieb (2021)	노동공급, 저축, 임금변화를 고려한 EITC 확대의 후생효과 분석	CPS SCF IRS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캘리브레이션 후 정책실험	노동시장참여가 늘어나고 소득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줄어들고 숙련/비숙련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Ortigueira & Siassi (2022)	EITC를 포함한 미국 조세/보조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가구구성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CPS SCF SIPP IRS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 캘리브레이션 후 정책실험 혼인/동거가 내생적으로 결정	EITC의 소득요건에서 가구 내 부소득자의 소득을 공제해주면 기존 혼인가구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할 뿐 아니라 혼인가구의 증가(동거가구의 감소)로 노동시장참여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4. 미국 외 국가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표 1-15〉 미국 외 국가의 EITC에 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목적	분석자료	연구방법론	주요 결과
Francesconi & Van der Klaauw (2007)	영국 WFTC의 도입이 여성 한부모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BHPS (1991-2001)	1999년 WFTC 도입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미혼여성	여성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장참여 효과는 주로 미취학 연령의 부양자녀가 한 명인 여성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Francesconi et al. (2009)	영국 WFTC의 도입이 혼인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분석	BHPS (1991-2002)	1999년 WFTC 도입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통제집단 : 부양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여성의 노동공급에 유의한 영향 없음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남 미취학 연령의 부양자녀가 한 명인 여성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Blundell et al. (2016)	영국 WFTC 제도의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 효과 분석	BHPS (1991-2008)	이중차분 분석 및 생애주기 모형 추정 후 정책실험 학력 선택과 경력연수를 통한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 채널이 존재	주당 근로시간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WFTC의 특성과 가구소득 요건, 부양자녀 요건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파트타임 근로 위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경력연수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위험에 대한 보험효과로 후생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Laun (2017)	스웨덴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 개편이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친 효과 분석	스웨덴 통계청 행정자료 (2001-2010)	제도의 확대개편이 2007년 1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된 것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 (회귀단절모형)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연구 자문위원(천동민)이 작성.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제1절 근로장려금 수급 추이

□ 수급규모 추이

○ 가구형태별로 소득요건과 최대수급액이 나뉘기 시작한 2015년(2014년 귀속소득)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봄.

○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가구수, 총수급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가장 큰 폭의 확대가 있었던 2019년(2018년 귀속소득)에서의 수급규모 증가가 두드러짐.

- 20대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의 수급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수급가구는 귀속소득 기준 2017년 221만 가구에서 2018년에 410만여 가구로 늘었음.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수급액도 2017년 1.7조 원에서 2018년 5조 원 정도로 대폭 늘어났으며, 주로 근로장려금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의 수급액 상승에서 비롯되었음.

[그림 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도별 수급가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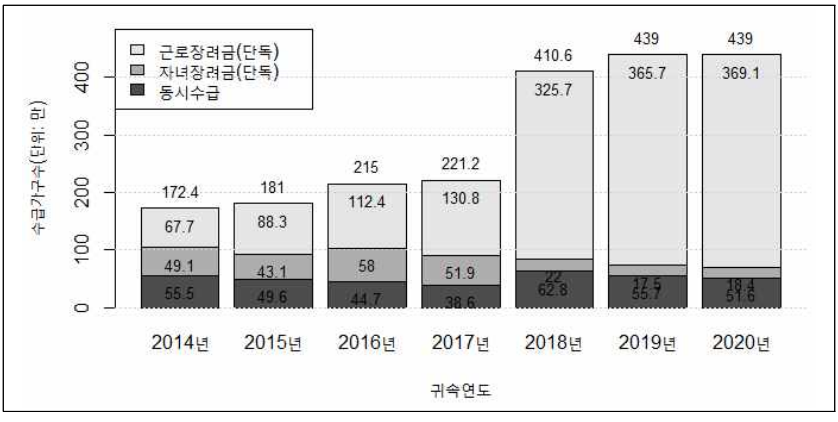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도별 수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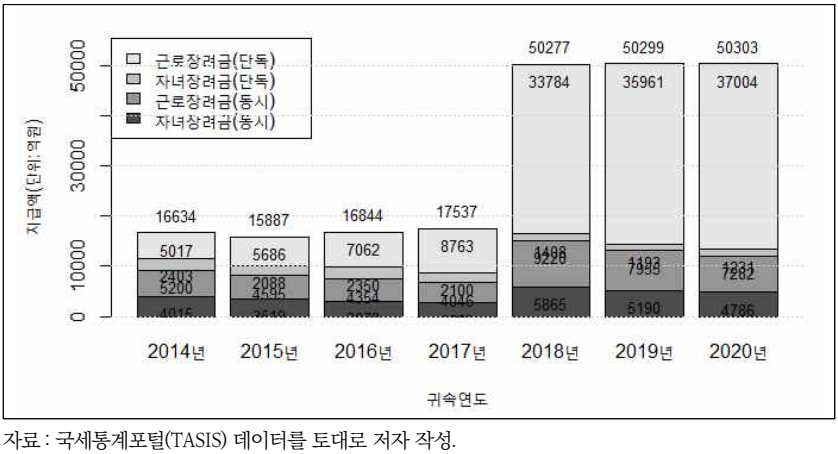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가구형태별 수급규모 추이

○ 귀속소득 기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급가구수가 조금씩 증가
- 이는 연도별 단독가구 연령제한 완화에 따른 단독가구수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19년(2018년 귀속소득)의 제도 확대로 인해 수급가구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단독가구가 차지함.

- 귀속년도 기준 2017년에서 2018년 증가분(189만여 가구)에서 단독가구 증가분(159만여 가구)이 약 84% 정도를 차지함.

[그림 2-3]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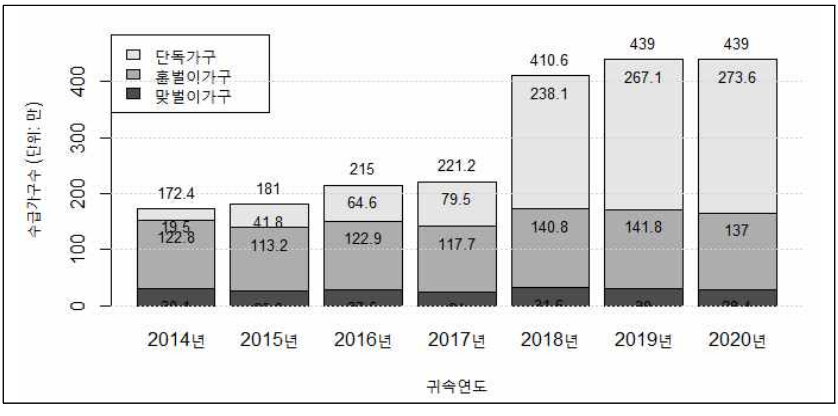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19년(2018년 귀속소득)의 제도 확대로 인한 최대수급액 증액은 모든 가구유형의 수급액을 크게 증가시킴.

- 수급가구수에서는 단독가구에 비해 큰 증가가 없었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최대수급액 증가에 따른 총수급액 상승이 있었음.

[그림 2-4]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수급금액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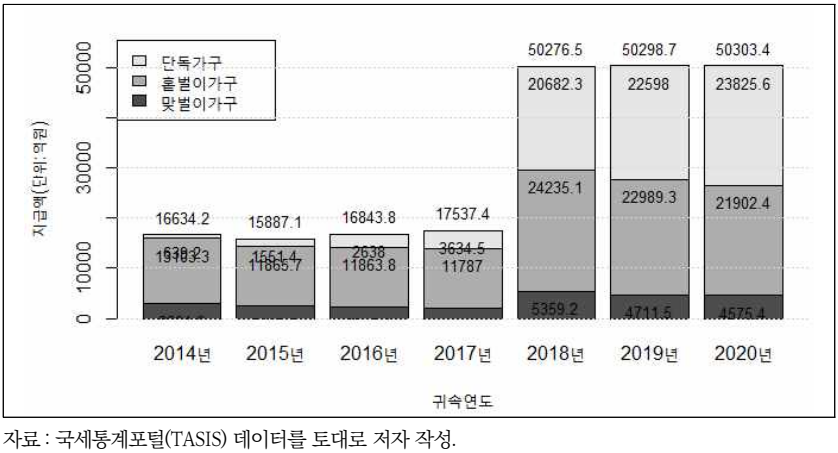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가구당 평균수급액도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2018 귀속소득)에 모든 가구유형에서 증가하였음.

[그림 2-5]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수급액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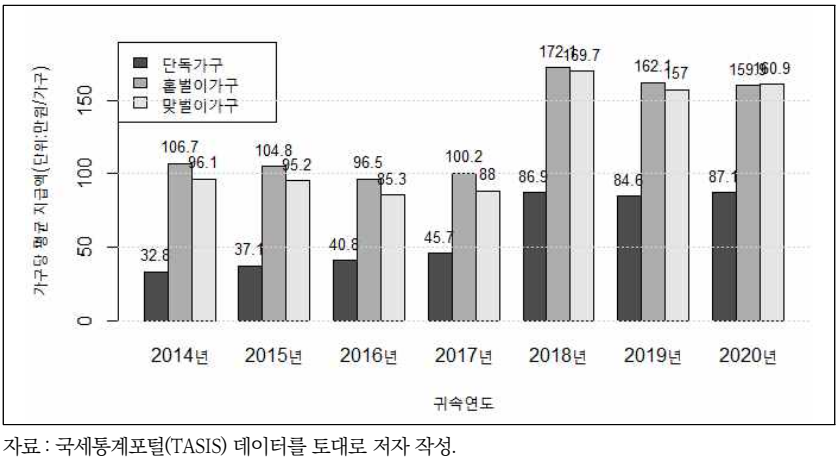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의 확대를 단독가구의 수급 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2016년(2015 귀속소득)에 50세 이상 포함, 2017년 40세 이상 포함, 2018년 30세 이상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2018년 귀속소득)

〈표 2-1〉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귀속연도	연령 분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합계
2014	6	4	53	159	102,657	91,799	194,678
2015	0	0	0	201,504	120,906	95,574	417,984
2016	0	0	155,778	225,777	139,987	124,941	646,483
2017	6,111	148,657	139,254	210,459	145,268	145,683	795,432
2018	1,029,219	294,455	236,244	350,461	264,089	206,779	2,381,247
2019	1,118,000	315,122	255,644	395,252	319,757	267,664	2,671,439
2020	1,120,414	338,311	264,030	392,376	345,448	275,770	2,736,349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2〉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액 연도별 추이

(단위 : 억 원)

귀속연도	연령 분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합계
2014	3	2	22	64	40,553	23,277	63,921
2015	0	0	0	83,288	47,984	23,872	155,144
2016	0	0	69,270	100,728	59,455	34,348	263,801
2017	2,805	72,103	69,003	104,392	68,604	46,547	363,454
2018	870,221	250,283	209,885	319,327	243,480	175,031	2,068,227
2019	903,716	263,593	224,608	351,884	287,434	228,560	2,259,795
2020	943,766	291,605	234,170	354,054	314,730	244,231	2,382,556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에 연령요건이 폐지됨.

- 이에 따라 귀속소득 기준 2015년에 50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집단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고, 매해 연령그룹이 확대됨을 볼 수 있음.

□ 재산분류별 수급규모 추이

○ 2019년(2018년 귀속소득)부터 자산요건이 2억으로 확대되면서 1억 4천

〈표 2-3〉 재산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연도별 추이

귀속연도	재산분류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4,000만 원 미만	1억 4,000만 원 이상	합계
2014	42,510	198,447	286,817	230,820	266,654	207,297	0	1,232,546
2015	48,361	262,753	337,766	247,072	265,639	217,362	0	1,378,953
2016	66,553	306,647	359,984	264,273	300,388	272,597	0	1,570,442
2017	78,090	312,246	380,250	286,446	330,531	306,049	0	1,693,612
2018	111,925	545,566	735,293	565,752	623,504	644,904	658,267	3,885,211
2019	118,952	551,370	754,899	608,138	665,056	691,518	824,344	4,214,277
2020	136,318	527,480	725,466	616,342	681,585	711,256	808,386	4,206,833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4〉 재산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액 연도별 추이

(단위 : 억 원)

귀속연도	재산분류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4,000만 원 미만	1억 4,000만 원 이상	합계
2014	340	1,727	2,593	2,112	2,473	973	0	10,217
2015	323	1,990	2,707	2,052	2,271	938	0	10,280
2016	437	2,267	2,820	2,160	2,545	1,187	0	11,416
2017	574	2,408	3,079	2,423	2,926	1,398	0	12,808
2018	1,234	6,239	8,559	6,793	7,767	8,198	4,213	43,003
2019	1,235	6,064	8,440	6,964	7,901	8,404	4,907	43,915
2020	1,422	5,804	8,098	7,066	8,118	8,718	5,061	44,286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만 원 이상 자산을 가진 가구가 수급하게 됨.

○ 수급가구수는 1억 4,000만 원 이상 가구가 1억 원 이상 1억 4,000만 원 미만 자산 가구와 비슷하지만, 수급액은 절반수준임.

- 자산 수준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미만 구간의 가구에는 5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반영됨.

제2절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현황 (국세통계포털)

□ 가구유형별 수급 현황

○ [그림 2-3]과 [그림 2-4]에서 2021년(귀속연도 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수와 수급액을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았음.

○ 귀속연도 2020년에 가구형태별 분류에 연령 분류와 산정구간(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 분류를 추가하여 수급 가구의 현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파악해봄.

○ 〈표2-5〉는 가구유형에 연령분류를 추가하여 각 세부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수와 근로장려금 수급액 그리고 가구당 평균 수급액을 보여줌.

- 단독가구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율이 높고, 평균 수급액은 연령집단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
- 홑벌이와 맞벌이 수급가구는 40대,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이 주를 이룸.
- 맞벌이 수급가구 중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 수급액이 높은데, 이는 다른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점감구간이 아닌 점증 혹은 평탄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2-5〉 2021년 가구유형, 연령분류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 억 원, 만 원/가구)

연령분류	가구유형											
	전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수	금액	평균 수급액	가구수	금액	평균 수급액	가구수	금액	평균 수급액	가구수	금액	평균 수급액
~29	1,187,593	10,349	87	1,120,414	9,438	84	57,219	788	138	9,960	123	124
30~39	524,090	5,376	103	338,311	2,916	86	147,607	1,992	135	38,172	468	123
40~49	604,484	7,079	117	264,030	2,342	89	286,324	4,046	141	54,130	692	128
50~59	725,363	8,280	114	392,376	3,541	90	263,052	3,787	144	69,935	953	136
60~70	673,978	7,981	118	345,448	3,147	91	269,300	3,889	144	59,230	944	159
70~	491,325	5,221	106	275,770	2,442	89	193,891	2,371	122	21,664	407	188
총합	4,206,833	44,286	105	2,736,349	23,826	87	1,217,393	16,873	139	253,091	3,587	142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표2-6〉은 근로장려금 산정구간에 따라 각 가구유형에 속하는 가구들의 수, 비중을 보여줌.

- 전체 가구유형으로 봤을 때 점증구간 33%, 평탄구간 24% 그리고 점

감구간에 42% 가량 분포되어 있음.

- 가구소득 분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테지만, 구간 길이와의 상관관계 또한 거칠게나마 보임(구간의 길이가 점감구간, 점증구간, 평탄구간 순서로 길기 때문).
-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점감구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속해 있고, 점증과 평탄구간에는 적게 분포되어 있음.

〈표 2-6〉 2021년 가구유형, 산정구간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산정구간	근로장려금 규모 분류	가구유형							
		전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점증구간	50만 원 미만	421,284	10.0%	343,633	12.6%	77,651	6.4%	-	-
	100만 원 미만	365,365	8.7%	290,735	10.6%	74,630	6.1%	-	-
	150만 원 미만	435,745	10.4%	331,543	12.1%	104,202	8.6%	-	-
	200만 원 미만	65,965	1.6%	-	-	65,965	5.4%	-	-
	250만 원 미만	71,695	1.7%	-	-	67,189	5.5%	4,506	1.8%
	300만 원 미만	12,068	0.3%	-	-	7,955	0.7%	4,113	1.6%
평탄구간		1,016,944	24.2%	708,013	25.9%	266,984	21.9%	41,947	16.6%
점감구간	300만 원 미만	45,069	1.1%	-	-	22,665	1.9%	22,404	8.9%
	250만 원 미만	129,514	3.1%	-	-	101,593	8.3%	27,921	11.0%
	200만 원 미만	141,110	3.4%	-	-	106,993	8.8%	34,117	13.5%
	150만 원 미만	558,893	13.3%	382,164	14.0%	139,103	11.4%	37,626	14.9%
	100만 원 미만	500,809	11.9%	356,907	13.0%	105,613	8.7%	38,289	15.1%
	50만 원 미만	389,668	9.3%	290,206	10.6%	66,474	5.5%	32,988	13.0%
기타		52,704	1.3%	33,148	1.2%	10,376	0.9%	9,180	3.6%
총합		4,206,833	100.0%	2,736,349	100.0%	1,217,393	100.0%	253,091	100.0%

주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연 6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 지급됨.

주 : 평탄구간에서의 근로장려금 규모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임.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소득 종류별 수급가구의 소득 분포

○ 〈표 2-7〉은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분포를 보여줌(예 : 상용근

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 가구수 기준, 근로소득이 약 60%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나머지 39.4% 정도를 차지함.

○ 평균 수급액은 일용근로소득 가구에서 가장 낮고 종교인소득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 2021년 소득 종류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

(단위 : %, 억 원, 만 원/가구)

	전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중복 (상용+일용)		
가구수	4,206,833	1,115,314	1,038,541	381,710	1,655,775	15,493
비율(%)	100	26.5	24.7	9.1	39.4	0.4
금액	44,286	11,576	10,088	4,370	18,036	216
비율(%)	100	26.1	22.8	9.9	40.7	0.5
평균 수급액	105.3	103.8	97.1	114.5	108.9	139.6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일용근로소득만을 신고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평균 수급액이 낮은 이유는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임.

○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가구는 다른 소득종류집단에 비해 소득 낮지 않았

〈표 2-8〉 2021년 소득 종류별 '총급여액 등'의 가구수 분포

(단위 : %)

총급여액 등 규모별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중복 (상용+일용)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500만 원 미만	16.7	66.1	18.8	30.4	11.0
1000만 원 미만	19.5	17.2	24.6	22.2	18.8
1500만 원 미만	21.4	8.5	20.7	18.3	22.0
2000만 원 미만	22.0	5.4	17.3	15.5	19.6
2500만 원 미만	11.7	1.5	7.8	5.9	16.4
3000만 원 미만	6.7	0.9	6.4	5.0	11.6
3600만 원 미만	1.9	0.4	4.4	2.8	0.6

자료 :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고 가구 구성도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나 맞벌이가 많아서 높은 평균 수급액을 받았다고 해석됨.

○ 〈표 2-8〉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평가액인 '총급여액 등'의 규모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가구수 분포를 보여줌.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평가액 기준 연소득 500만 원이 안되는 경우가 65% 이상임.
- 사업소득도 연소득 500만 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가 30% 정도로 다른 소득 종류 가구에 비해 많았음.

2.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현황(한국복지패널)

□ 복지패널 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추이

○ 복지패널은 다른 패널에 비해 차상위 및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여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포함하고 있음.

〈표 2-9〉 복지패널 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가구원 관측수 추이

조사기준 연도	근로장려금 미수급가구 가구원 관측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가구원 관측수
2009	4,424	394
2010	14,403	293
2011	18,274	346
2012	17,528	456
2013	16,829	305
2014	16,220	444
2015	15,270	719
2016	14,605	817
2017	14,016	907
2018	13,635	783
2019	11,966	1,494
2020	11,668	1,476
총합	168,838	8,434

자료 : 복지패널 1차~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복지패널 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2019년(2018년 귀속소득)에 대폭 증가하였음(783 → 1494).

○ 이후 수급가구 현황 파악은 2020년을 조사시점으로 하는 16차 복지패널을 사용함.

○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019년을 귀속연도로 하고 2020년에 근로장려금을 실수령하였음.

-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복지패널 내 수급가구가 전체 수급가구를 잘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편 후 20대 단독가구의 많은 유입으로 인해 대표성을 띤다면 20대의 비율이 매우 높아야 하지만, 복지패널 내 수급가구의 연령 분포는 그렇지 않음.
- 복지패널은 표본 수와 패널의 성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대표성을 띤 자료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수급 가구의 자세한 단면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표 2-10〉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연령 분포

(단위 : %)

연령 구분	비율
29세 이하	4.8
30세 이상 39세 이하	7.4
40세 이상 49세 이하	18.1
50세 이상 59세 이하	28.3
60세 이상	41.5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교육 수준과 주관적 행복도

○ 가구형태, 자산수준, 소득수준은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파악하였으니, 기

초적인 교육수준과 주관적 행복도를 살펴 봄.

○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교육수준을 확인해 봄.

○ 고등학교 졸업이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14%), 4년제 대학교 졸업(12%) 순서였음.

〈표 2-11〉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교육수준

(단위 : %)

교육수준	비율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0
중학교 졸업	13.7
고등학교 졸업	42.1
전문대 졸업	9.6
4년제 대학 졸업	12.3
석사 학위 취득	3.4

주 :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복지패널의 설문 중 '삶의 사다리 점수' 항목은 주관적 행복감을 0에서 10 사이의 점수로 측정함.

○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는 미수급 가구 구성원에 비해 조금 점수가 낮게 나타남.

- 미수급 가구 평균은 6.9점인 반면, 수급 가구 평균은 6.2점임.

○ 주관적 행복감이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표 2-12〉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한 가구의 삶의 사다리 점수

(단위 : %)

삶의 사다리 점수	근로장려금 미수급	근로장려금 수급
0	0.2	0.2
1	0.5	0.4
2	1.0	1.4
3	1.9	4.5
4	3.6	7.0
5	12.9	21.0

〈표 2-12〉의 계속

삶의 사다리 점수	근로장려금 미수급	근로장려금 수급
6	14.8	19.1
7	25.2	22.8
8	26.6	16.7
9	9.9	4.3
10	3.4	2.6
전체	100.0	100.0

주 :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식

○ 복지패널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식, 사용처, 만족도, 근로의욕의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음.

○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수 있음.

○ 〈표 2-13〉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구성원이 미수급가구에 비해 근로장려세제를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급가구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모른다는 경우가 없었음.
- 내용을 어느 정도 혹은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도 수급가구의 95.2%를 차지함.
- 다만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한 응답이므로, 근로장려금의 급여체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 공급 선택을 조정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음.

〈표 2-13〉 2020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근로장려금 미수급	근로장려금 수급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12.6	0.0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27.9	4.8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있다	38.6	57.3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있다	20.9	37.8
전체	100.0	100.0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표 2-14〉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이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여줌.

- 근로장려금의 사용처는 일상 생활비가 90%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저축과 교육비가 각각 4%와 3%를 차지함.
- 도덕적 해이의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표 2-14〉 2020년 수급한 근로장려금의 사용현황

(단위 : %)

수급한 근로장려금 사용현황	비율
아이들 교육비	3.3
일상 생활비	90.7
의료비	1.4
문화오락비	0.6
저축	4.0
기타	0.1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9%,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8%였음.

〈표 2-15〉 2020년 수급한 근로장려금의 도움정도

(단위 : %)

근로장려금의 도움정도	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다	1.3
그저 그렇다	11.8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59.2
매우 도움이 되었다	27.6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그저 그렇다거나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높은 비율이 아니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음.
- 근로장려금이 소득 보조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원의 근로의욕을 높임.

-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거나 매우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7%, 21%임.
-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21% 정도 있었으나, 의욕이 줄어들었다는 부정적 응답은 거의 없었음.
- 다만 언급된 근로의욕이 '계속 일을 해나갈' 의욕인지, '새로 일을 시작할' 의욕인지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움.
- 이를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증가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표 2-16〉 2020년 근로장려금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근로장려금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비율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0.0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0.3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21.5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57.1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21.1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 현황

○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해본 결과, 임금근로자가 51.7%, 자활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가 9.3%, 자영업자 8.6%, 비경제활동인구는 24.2%였음.

○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음.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38%임.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편이 아님을 보여줌.

〈표 2-17〉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주된 경제활동참여 상태	비율
상용직 임금근로자	19.6
임시직 임금근로자	23.1
일용직 임금근로자	9.0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9.3
고용주	0.8
자영업자	8.6
무급가족종사자	0.9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4.5
비경제활동인구	24.2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에 대해서 근로형태나 조건에 대해 더 상세히 분석하였음.

○ 〈표 2-18〉은 임금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보여줌.

-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70%로, 대다수가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
- 3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장 근무 비율은 9.2% 정도임.

〈표 2-18〉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

사업장 규모	비율
1인 이상 4인 이하	23.2
5인 이상 9인 이하	20.5
10인 이상 29인 이하	26.3
30인 이상 49인 이하	6.0
50인 이상 69인 이하	4.8
70인 이상 99인 이하	3.2

〈표 2-18〉의 계속

사업장 규모	비율
100인 이상 299인 이하	6.8
300인 이상 499인 이하	3.8
500인 이상 999인 이하	1.1
1,000인 이상	4.3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표 2-19〉는 수급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여줌.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당 보수도 가장 높음.
- 임금근로자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각각 월 165만 원과 134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장려금의 수급 금액이 임금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표 2-5〉에 따르면, 2021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 105만 원).

〈표 2-19〉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단위 : 만 원/월, 시간/주)

임금근로 형태	월평균 임금	주당 근로시간
상용직 임금근로자	260.4	42.2
임시직 임금근로자	165.1	37.4
일용직 임금근로자	134.4	26.0
전체	205.6	38.7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수급가구의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봄.

- 시간제가 20%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함.
- 근무시간 형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비교적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2-20〉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형태

(단위 : %)

근로시간 형태	비율
시간제	20.1
전일제	79.9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41%가량 되고, 근로지속에서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로 근무조건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음.

- 잠재적 해고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와 조건부 채용이 43%, 41%로 가장 많았음.

〈표 2-21〉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계약기간 설정

(단위 : %)

계약기간 설정	비율
계약기간 정해져 있음	41.3
계약기간 정해져 있지 않음	58.7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22〉 2020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임금근로자의 근로지속 가능성

(단위 : %)

근로지속 가능성		비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41.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58.7
잠재적 해고 사유	소계	100.0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42.9
	묵시적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14.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으로 채용됨	40.9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1.9
전체		100.0

주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임.
자료 : 복지패널 16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3절 소 결

○ 이 장에서는 (1) 근로장려금의 지급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2) 근로장려금의 현황을 가구형태 · 연령 · 소득 · 자산별로 분석하였으며, (3) 수급가구의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알아봄.

○ 근로장려금은 도입부터 꾸준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8년(귀속연도)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2018년 개편으로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증가와 동시에 정책대상 확대(30대 미만 단독가구의 유입과 자산요건 완화)가 이루어졌음.
- 개편에 의한 수급가구와 총지급액의 증가를 국세통계포털 데이터를 활용한 연령 및 자산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연령 · 가구형태별 수급가구 집단에서 20대 단독가구가 가구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전체의 26%).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대부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편임.

-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의 존재와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지급액 결정 방식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근로 유인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 근로의욕에 대한 응답은 '근로를 이어갈 의욕'과 '근로를 시작할 의욕'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노동참여 효과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 기능이 잘 작동함을 짐작할 수 있음.
- 수급액 사용처에 대한 응답에서도 도덕적 해이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근로의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음.

- 임시임금근로와 일용임금근로의 비율이 높고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도 높음.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제3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 분석

제1절 일반균형분석의 의의

□ 본 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분석하는 주요 방법은 제도 실시에 따라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임.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제도 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공급에 대한 선택을 파악하는 면에서 유용한 방법임.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용한 서베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초기에 여러 데이터셋에서 나타나던 현상임.

○ 제도의 확대에 따라 서베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수가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가구 중 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면에서 서베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실증분석 시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근로장려세제도 외의 요소가 완벽히 통제되지 않아 실증분석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

전히 존재함.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대부분 단기 분석에 국한된 경우가 많으며 장기효과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음.

○ 제도 개편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가능
- 서베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수급가구 수의 부족, 여타 변수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이 미치는 영향, 올해의 근로장려금이 전년도의 근로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 등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모형의 구조에 따라 제도 개편의 장기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제2절 모 형

1. 모형의 구조

□ 본 장에서 이용한 모형은 제도 개편의 장기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된 모형임.

○ 모형에서 분석할 균형은 균제상태(steady state)로서 장기균형으로 해석
- 거시경제 수준에서의 충격은 없으나, 각계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은 실업에 빠질 수 있는 개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에 직면함.
- 모형에서의 균형을 균제상태로 정의하는 이유는 거시경제변수와 인구분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임. 다만 각 개인의 고용상태(employment status)는 변할 수 있음.

○ 본 장의 분석은 장기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단기분석 결과를 제

시한 여타 장들에서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모형이 상정하는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

○ 가계 부문은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5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
- 각 소득계층의 가계는 기혼가구와 독신가구로 구성
- 기혼가구는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인 배우자로 구성
  기혼가구는 가구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자의 생애기간동안의 노동과 소비(저축)를 결정함.
- 독신가구는 자신의 노동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
- 각 개인은 21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사망위험 없이 80세까지 생존함.
- 가계는 유산상속동기가 없는 순수한 생애주기 선호를 가진 개인들로 구성
- 생애기간동안 각 개인은 실업위험에 직면하며, 취업기회가 주어지면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근로, 혹은 실업상태 3개 중 하나를 선택함.

○ 기업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returns-to-scale)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함.
-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반영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숙련 노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취업률이 변동하는 상황을 상정

○ 정부는 복지정책을 유지
- 복지정책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MLSS), 최저임금제로 구성

○ 노동시장, 자본시장,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적

가. 가 계

□ 취업기회와 취업에 대한 의사결정

○ 각 개인은 생애기간동안 실업위험에 직면하며, 이러한 실업위험은 취업기회가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상정함으로써 모형에 반영됨.
-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fp 확률로 취업기회를 얻게 되며 1-fp로 취업기회를 얻지 못함.
-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sp 확률로 해고를 당하며 1-sp로 계속 취업기회를 가짐.

○ 각 개인의 취업상태는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취업기회와 해당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됨.
- 취업기회를 얻는 사람은 실업상태,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중 하나를 선택
- 전일제 (시간제) 취업 시 노동시간은 $\hat{h}_1$ ($\hat{h}_2$)임.
-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계속 실업상태에 있음.

○ 개인들을 아래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유형 1 (ϵ=1) : 전기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η=1) 취업기회가 있는 사람 ($s=\epsilon$). 이들은 전기의 노동시간($\hat{h}_q$)에 따라 2개의 소집단으로 다시 분류 (q=1,2)
- 유형 2 (ϵ=2) :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으로서 (η=0) 취업기회가 있는 사람 ($s=\epsilon$).
- 유형 3 (ϵ=3) : 전기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η=1)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s=u$). 이들은 전기의 노동시간($\hat{h}_q$)에 따라 2개의 소집단으로 다시 분류 (q=1,2)
- 유형 4 (ϵ=4) :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으로서 (η=0) 취업기회가 없는 사람 ($s=u$).

○ 두 사람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기혼가구의 유형 ($\epsilon_M=(\epsilon_p,\epsilon_s)$)은 위의 4개 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ϵ_M=(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취업기회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복지급여

○ 실업보험

- 단기 실업자 (ϵ=1, η'=0; ϵ=3)에게 취업 시 임금의 일정부분 지급
- 장기 실업자 (ϵ=2, η'=0; ϵ=4)에게는 미지급

여기서 말하는 장기 실업자는 2기간 이상 연속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함. 본 모형의 한 기간의 길이가 1년이므로 장기실업자는 2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현실의 실업보험의 급여 수급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였음.

$$W_{UI}(q) = \zeta we_{i-1}\hat{h}_q \quad (1)$$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비자산소득(y)과 보유자산(k)이 일정수준($W_{MLSS}^{\max}$, $k_{MLSS}^{\max}$) 미만인 가구에 지급
- 보충급여 방식

기초생계비(W_{MLSS})와 비자산소득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급여로 지급

$$W_{MLSS} = W_{MLSS}^{B} - y(1-edr) - R_{MLSS}k \quad (2)$$

- 비자산소득의 소득인정액은 해당소득에서 소득공제율(edr)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보유자산의 소득인정액을 더한 금액임.
- 보유자산의 소득인정액은 보유자산(k) × 자산의 소득환산율(R_{MLSS})

로 결정됨.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 점증구간 $(we\hat{h}_q < yc_1)$, 평탄구간 $(yc_1 \leq we\hat{h}_q < yc_2)$, 점감구간 $(we\hat{h}_q \geq yc_3)$에 한계급여율 결정
- 한계급여율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에서 각각 $(rc_1 > 0)$, $(rc_2 = 0)$, $(rc_3 < 0)$

$$EITC(we\hat{h}_q) = \begin{cases} rc_1 we\hat{h}_q & \text{if } we\hat{h}_q < yc_1 \\ rc_1 yc_1 + rc_2(we\hat{h}_q - yc_1) & \text{if } yc_1 \leq we\hat{h}_q < yc_2 \\ rc_1 yc_1 + rc_2 yc_2 + rc_3(we\hat{h}_q - yc_2) & \text{if } yc_2 \leq we\hat{h}_q < yc_3 \\ 0 & \text{if } we\hat{h}_q \geq yc_3 \end{cases} \quad (3)$$

- 한계급여율은 미혼가구, 홑벌이 기혼가구, 맞벌이 기혼가구에 상이한 수준이 적용됨.
- 보유자산 요건 :

  근로장려금 수급의 소득요건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에도 보유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못함.

  보유자산 요건은 한계급여와 같이 가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최저임금제

○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 저소득근로자의 실제 임금수준(hw)은 최저임금 수준($min\ W$)과 노동생산성 기준 임금(we) 중 높은 수준

$$hw = \begin{cases} we & \text{if } we > \min W \\ \min W & \text{if } we \leq \min W \end{cases} \quad (4)$$

□ 선호체계

○ 기혼가구와 독신가구는 각각 가구의 생애소득, 개인의 생애소득을 극대화
- 가구의 효용함수는 Cho and Rogerson(1988)을 상정
  $\alpha_{M_1}, \alpha_{M_2}$ (α_S)는 각각 기혼가구 (미혼가구)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 (개인)의 노동에 대한 비효용의 강도를 의미
  γ는 Frisch elasticity를 의미

$$\max E_g \sum_{t=g+1}^{g+60} \beta^{t-g-1} u_M(c_M(k_M, \epsilon_M, t), l_{MP}(k_M, \epsilon_M, t), l_{MS}(k_M, \epsilon_M, t))$$

$$\max E_g \sum_{t=g+1}^{g+60} \beta^{t-g-1} u_S(c(k, \epsilon, t), l(k, \epsilon, t)) \quad (5)$$

$$u_M(c_M, \hat{h}_{M_1}, \hat{h}_{M_2}) = 2\ln(0.5c_M) - \alpha_{M_1}\frac{\hat{h}_{M_1}^{1+\gamma}}{1+\gamma} - \alpha_{M_2}\frac{\hat{h}_{M_2}^{1+\gamma}}{1+\gamma}$$

$$u_S(c_S, \hat{h}_S) = \ln(0.5c_S) - \alpha_S\frac{\hat{h}_S^{1+\gamma}}{1+\gamma}$$

□ 예산제약

○ 매기 세후자산소득($(1-\tau_k)rk$, $(1-\tau_k)rk_M$)과 세후 비자산소득 (y^d, y_M^d)을 소비 (c_S, c_M)와 자산축적 ($k'-k$, $k_M{}'-k_M$)에 배분
- 신용제약 : 부채를 지지 못함($k_M > 0, k > 0$).

$$k_M{}'(k_M, \epsilon_M, t) + c_M(k_M, \epsilon_M, t) = (1 + r(1-\tau_k))k_M + y_M^d(k_M, \epsilon_M, t)$$

$$k'(k, \epsilon, t) + c(k, \epsilon, t) = (1 + r(1-\tau_k))k + y^d(k, \epsilon, t) \quad (6)$$

- τ_k : 자본소득세율

○ 비자산소득(y^d, y_M^d)은 세후 비자산소득과 복지급여의 합으로 결정

$$
\begin{aligned}
y_M^d = {} & hw_P\hat{h}_{Pq}(1-\tau_y(hw_P\hat{h}_{Pq})-\tau_{UI}) + hw_S\hat{h}_{Sq}(1-\tau_y(hw_S\hat{h}_{Sq})-\tau_{UI}) \\
& + W_{PUI}(\epsilon, q) + W_{SUI}(\epsilon, q) \\
& + W_{M,MLSS} \\
& + EITC_M(hw_P\hat{h}_{Pq} + hw_S\hat{h}_{Sq}, k_M)
\end{aligned} \tag{7}
$$

$$
\begin{aligned}
y^d = {} & hw\,\hat{h}_q(1-\tau_y(hw\,\hat{h}_q)-\tau_{UI}) \\
& + W_{UI}(\epsilon, q) + W_{MLSS} + EITC(hw\,\hat{h}_q, k)
\end{aligned}
$$

$$
hw\,(hw_P, hw_S) = \max(we, \min W)
$$

- $\tau_y(\bullet)$: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함수를 나타냄.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로서 근로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상정함.
- 근로자 유형별 그리고 근로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미혼가구와 기혼가구의 비자산소득은 다음과 같음.

• $\epsilon\,(\epsilon_M, \epsilon_S)$=1 or 2, $\eta' = 1$,

$$
\begin{aligned}
y^d = {} & hw\hat{h}_q(1-\tau_y(y)-\tau_{UI}) + EITC(hw\hat{h}_q, k) \\
& + MLSS(hw\hat{h}_q, k)
\end{aligned}
$$

$$
\begin{aligned}
y_{MP}^d = {} & hw_{MP}\hat{h}_{Pq}(1-\tau_y(y)-\tau_{UI}) \\
& + EITC(hw_{MP}\hat{h}_q + hw_{MS}\hat{h}_{Sq}, k_M) \\
& + MLSS(hw_{MP}\hat{h}_q + hw_{MS}\hat{h}_{Sq}, k_M)
\end{aligned}
$$

$$
y_{MS}^d = hw_{MS}\hat{h}_{Pq}(1-\tau_y(y)-\tau_{UI}) + EITC(hw_{MS}\hat{h}_{Mq}, k_M)
$$

• $\epsilon\,(\epsilon_M, \epsilon_S)$=1, $\eta' = 0$,

$$
y^d = \max(W_{UI},\ W_{MLSS})
$$

$$
y_{MP}^d(y_{MS}^d) = \max(W_{UI},\ W_{MLSS})
$$

• $\epsilon\,(\epsilon_M, \epsilon_S)$=2, $\eta' = 0$, (8)

$$
y^d = W_{MLSS}
$$

$$
y_{MP}^d(y_{MS}^d) = W_{MLSS}
$$

• $\epsilon\,(\epsilon_M, \epsilon_S)$=3,

$y^d = \max(W_{UI}, W_{MLSS})$

$y^d_{MP}(y^d_{MS}) = \max(W_{UI}, W_{MLSS})$

• $\epsilon\,(\epsilon_M, \epsilon_S)$=4,

$y^d = W_{MLSS}$

$y^d_{MP}(y^d_{MS}) = W_{MLSS}$

□ 가계의 최적화 의사결정

○ 가계의 노동시간, 소비에 대한 최적화 의사결정은 아래 가치함수로 요약될 수 있음.

- 생애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기회가 주어지면 ($\epsilon\,(\epsilon_M, \epsilon_S)$=1, 2), 소비와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근로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epsilon\,(\epsilon_M, \epsilon_S)$=3, 4),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V(k,\epsilon,t) = \max_{k',\hat{h}_q}\left(u\left((1+r(1-\tau_k))k-k'+y^d\right),\hat{h}_q\right)+\beta E_{t+1}V(k',\epsilon',t+1) \quad (9)$$

$$V(k,\epsilon_P,\epsilon_S,t) = \max_{k_M',\hat{h}_{Pq},\hat{h}_{Sq}}\left(u\left((1+r(1-\tau_k))k_M-k_M'+y^d_{MP}+y^d_{SP}\right),\hat{h}_{Pq},\hat{h}_{Sq}\right) + \beta E_{t+1}V(k_M',\epsilon_P',\epsilon_S',t+1)1)$$

나. 기 업

□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노동(N)과 자본(K)을 생산재 혹은 투자재로 변환

○ 생산함수는 Cobb-Douglas 함수로 가정

○ 임금률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생산성과 동일하게 결정

○ 자산수익률은 최저임금제 적용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변동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자산수익률은 감소

$$Y = AK^{1-\alpha}N^{\alpha} \tag{10}$$

$$w = \alpha AK^{1-\alpha}N^{1-\alpha} \tag{11}$$

$$r = Y - wN_{\min}/K - \delta \tag{12}$$

$$\begin{aligned} N = & \sum_k \sum_t \sum_{\epsilon=1 \text{or} 2} \sum_q \phi(k,\epsilon,t) \cdot 1(\eta'(k,\epsilon,t)=1) e\hat{h}_q \\ & + \sum_k \sum_t \sum_{\epsilon_P=1 \text{or} 2} \sum_{\epsilon_S=1 \text{or} 2} \sum_q \phi(k,\epsilon_P,\epsilon_S,t)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 e\hat{h}_{Pq} \\ & + 1(\eta_S'(k,\epsilon_P,\epsilon_S,t)=1) e\hat{h}_{Sq}) \end{aligned} \tag{13}$$

$$\begin{aligned} N_{\min} = & \sum_k \sum_t \sum_{\epsilon=1 \text{or} 2} \sum_q \phi(k,\epsilon,t) \cdot 1(\eta'(k,\epsilon,t)=1) hw\hat{h}_q \\ & + \sum_k \sum_t \sum_{\epsilon_P=1 \text{or} 2} \sum_{\epsilon_S=1 \text{or} 2} \sum_q \phi(k,\epsilon_P,\epsilon_S,t)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 hw\hat{h}_{Pq} \\ & + 1(\eta_S'(k,\epsilon_P,\epsilon_S,t)=1) hw\hat{h}_{Sq}) \end{aligned}$$

$$\begin{aligned} K = & \sum_k \sum_t \sum_{\epsilon} \phi(k,\epsilon,t) k \\ & + \sum_{k_M} \sum_t \sum_{\epsilon_P} \sum_{\epsilon_S} \phi(k_M,\epsilon_P,\epsilon_S,t) k_M \end{aligned} \tag{14}$$

다. 정 부

□ 정부는 실업보험제도, 기초생보, EITC, 최저임금제를 유지

○ 실업보험급여는 실업보험료로 조달, 기초생보와 EITC 지출액은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로 조달

$$\tau_{UI} wN_{\min} = \sum_{k}\sum_{t}\sum_{\epsilon}\sum_{q} W_{UI}(k,\epsilon,t)\,\phi(k,\epsilon,t) + \sum_{k}\sum_{t}\sum_{\epsilon_P}\sum_{\epsilon_S}\sum_{q}(W_{MP,UI}(k_M,\epsilon_P,\epsilon_S,t) + W_{MS,UI}(k_M,\epsilon_P,\epsilon_S,t))\phi(k,\epsilon_p,\epsilon_S,t) \quad (15)$$

$$\tau_y(wN_{\min})wN_{\min} + \tau_k rK = \sum_{k}\sum_{\epsilon}\sum_{t}\sum_{q} W_{UI}(k,\epsilon,t)\,\phi(k,\epsilon,t) + \sum_{k}\sum_{t}\sum_{\epsilon_P}\sum_{\epsilon_S}\sum_{q}(W_{MP,UI}(k_M,\epsilon_P,\epsilon_S,t) + W_{MS,UI}(k_M,\epsilon_P,\epsilon_S,t))\phi_M(k,\epsilon_p,\epsilon_S,t) \quad (16)$$

라. 경쟁균형

□ 경쟁균형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치함수 $V(,\epsilon,k)$, $V_M(k_M,\epsilon_P,\epsilon_S,t)$, 의사결정함수 $c(k,\epsilon,t)$, $k'(k,\epsilon,t)$, $\eta'(k,\epsilon,t)$, $\hat{h}_q(k,\epsilon,t)$, $c_M(k_M,\epsilon_P,\epsilon_S,t)$, $k_M'(k_M,\epsilon_P,\epsilon_S,t)$, $\eta_P'(k_M,\epsilon_P,\epsilon_S,t)$, $\eta_S'(k_M,\epsilon_P,\epsilon_S,t)$, $\hat{h}_{Pq}'(k_M,\epsilon_P,\epsilon_S,t)$, $\hat{h}_{Sq}'(k_M,\epsilon_P,\epsilon_S,t)$, 구직률 결정함수 $fp(\min W)$, 자산분포별 유형별 인구분포 $\phi(k,\epsilon,t)$, $\phi_M(k_M,\epsilon_P,\epsilon_S,t)$, 노동과 자본의 가격함수 $\{w,r\}$로 정의됨.

1. 개인의 의사결정과 집계변수의 변화의 일관성 (식 13, 14 만족)
2. 요소가격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만족 (식 11, 12 만족)
3. 요소가격, 정부의 정책변수, 구직률 결정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사결정함수가 가계의 동태적 최적화 함수의 해가 됨.
4. 재화시장 균형

$$AK^{1-\alpha}N^{\alpha} = C + \delta K \quad (17)$$

5. $k(k',\epsilon,t)$와 $k_M(k_M',\epsilon_P,\epsilon_S,t)$을 각각 $k'(k,\epsilon,t)$와 $k_M'(k_M,\epsilon_P,\epsilon_S,t)$들의 역함수로 정의하면, 연령별 인구분포

$\phi(k,\epsilon,t)$와 $\phi(k_M,\epsilon_P,\epsilon_S,t)$는 아래 식 (18)∽(22)에 의해 결정

$$
\begin{aligned}
&\phi(k',1q,t)=(1-sp(t))\sum_{\epsilon=1,2k(k',\epsilon,t-1)}\sum\phi(k,\epsilon,t-1)\ \cdot 1(\eta'(k,\epsilon,t-1)=1)\\
&\qquad\qquad\cdot 1(\hat{h}(k,\epsilon,t-1)=\hat{h}_{1q})\\
&\phi(k',1q,\epsilon_S t)\\
&\quad=(1-sp(t))\sum_{\epsilon_P=1,2\ k(k',\epsilon_P,\epsilon_S,t-1)}\sum\phi(k,1q,\epsilon_S,t-1)\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1)\\
&\qquad\qquad\cdot 1(\hat{h}_P(k,\epsilon_P,\epsilon_S,t-1)=\hat{h}_{1q})\\
&\phi(k',\epsilon_P,1qt)\\
&\quad=(1-sp(t))\sum_{\epsilon_S=1,2\ k(k',\epsilon_P,\epsilon_S,t-1)}\sum\phi(k,\epsilon_P,1q,t-1)\ \cdot 1(\eta_S'(k,\epsilon_P,\epsilon_S,t-1)=1)\\
&\qquad\qquad\cdot 1(\hat{h}_S(k,\epsilon_P,\epsilon_S,t-1)=\hat{h}_{1q})
\end{aligned}
\tag{18}
$$

$$
\begin{aligned}
&\phi(k',2,t)=fp(t)\sum_{\epsilon=1,2k(k',\epsilon,t-1)}\sum\phi(k,\epsilon,t-1)\ \cdot 1(\eta'(k,\epsilon,t-1)=0)\\
&\qquad+fp(t)\sum_{\epsilon=3,4k(k',\epsilon,t-1)}\sum\phi(k,\epsilon,t-1)\\
&\phi(k_M',2,\epsilon_S,t)\\
&\quad=fp(t)\sum_{\epsilon_P=1,2\ k_M(k_M',\epsilon_P,\epsilon_S 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0)\\
&\quad+fp(t)\sum_{\epsilon_P=3,4\ k_M(k_M',\epsilon_P,\epsilon_S 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phi(k_M',\epsilon_P,2,t)\\
&\quad=fp(t)\sum_{\epsilon_S=1,2\ k_M(k_M',\epsilon_P,\epsilon_S,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S'(k,\epsilon_P,\epsilon_S,t-1)=0)\\
&\quad+fp(t)\sum_{\epsilon_S=3,4\ k_M(k_M',\epsilon_P,\epsilon_S 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end{aligned}
\tag{19}
$$

$$
\begin{aligned}
&\phi(k',3q,t)=sp(t)\sum_{\epsilon=1,2k(k',\epsilon,t-1)}\sum\phi(k,\epsilon,t-1)\ \cdot 1(\eta'(k,\epsilon,t-1)=1)\\
&\qquad\qquad\cdot 1(\hat{h}(k,\epsilon,t-1)=\hat{h}_{3q})\\
&\phi(k',3q,\epsilon_S t)\\
&\quad=sp(t)\sum_{\epsilon_P=1,2\ k(k',\epsilon_P,\epsilon_S,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1)\\
&\qquad\qquad\cdot 1(\hat{h}_P(k,\epsilon_P,\epsilon_S,t-1)=\hat{h}_{3q})\\
&\phi(k',\epsilon_P,3qt)\\
&\quad=sp(t)\sum_{\epsilon_S=1,2\ k(k',\epsilon_P,\epsilon_S,t-1)}\sum\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S'(k,\epsilon_P,\epsilon_S,t-1)=1)\\
&\qquad\qquad\cdot 1(\hat{h}_S(k,\epsilon_P,\epsilon_S,t-1)=\hat{h}_{3q})
\end{aligned}
\tag{20}
$$

$$\phi(k',4,t)=(1-fp(t))\sum_{\epsilon=1,2}\sum_{k(k',\epsilon,t-1)}\phi(k,\epsilon,t-1)\ \cdot\ 1(\eta'(k,\epsilon,t-1)=0)$$
$$+(1-fp(t))\sum_{\epsilon=3,4}\sum_{k(k',\epsilon,t-1)}\phi(k,\epsilon,t-1)$$

$$\phi(k_M',2,\epsilon_S,t)$$
$$=fp(t)\sum_{\epsilon_P=1,2}\sum_{k_M(k_M',\epsilon_P,\epsilon_S t-1)}\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P'(k,\epsilon_P,\epsilon_S,t-1)=0) \quad (21)$$
$$+fp(t)\sum_{\epsilon_P=3,4}\sum_{k_M(k_M',\epsilon_P\epsilon_S t-1)}\phi(k,\epsilon_P,\epsilon_S,t-1)$$

$$\phi(k_M',\epsilon_P,4,t)$$
$$=(1-fp(t))\sum_{\epsilon_S=1,2}\sum_{k_M(k_M',\epsilon_P,\epsilon_S t-1)}\phi(k,\epsilon_P,\epsilon_S,t-1)\ \cdot\ 1(\eta_S'(k,\epsilon_P,\epsilon_S,t-1)=0)$$
$$+(1-fp(t))\sum_{\epsilon_S=3,4}\sum_{k_M(k_M',\epsilon_P,\epsilon_S t-1)}\phi(k,\epsilon_P,\epsilon_S,t-1)$$

특히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의 인구분포는 전기에 실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산출

$$\phi(k,\epsilon,1)=\begin{cases}fp(1)\ \cdot\ pop_0, & \epsilon=2,k=0\\(1-fp(1))\ \cdot\ pop_0 & \epsilon=4,k=0\\0 & otherwise\end{cases}$$
$$\phi(k,\epsilon_P,\epsilon_S,1)=\begin{cases}fp(1)\ \cdot\ popS_0, & \epsilon_P=2,k=0\\(1-fp(1))\ \cdot\ popS_0 & \epsilon_P=4,k=0\\0 & otherwise\end{cases} \quad (22)$$
$$\phi(k,\epsilon_P,\epsilon_S,1)=\begin{cases}fp(1)\ \cdot\ popS, & \epsilon_S=2,k=0\\(1-fp(1))\ \cdot\ popS & \epsilon_S=4,k=0\\0 & otherwise\end{cases}$$

6. 실업보험, 기초생보, EITC 제도의 예산제약식을 만족 (식 15, 16 만족)

2. 모형 캘리브레이션

□ 인구분포 및 임금률

○ 소득계층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분류
- 소득계층 1을 최저소득계층으로 소득계층 5를 최고소득계층으로 함.
- 기혼가구와 미혼가구는 각각 70%, 30%로 가정(김동겸, 2017)

□ 임금 및 고용의 안정성

○ 학력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률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에 보고되어 있는 '학력별, 연령별 임금률 및 근로조건', '임금계층별 교육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기혼가구의 주소득자와 보조소득자의 임금률은 동일하다고 가정

○ 이직률 및 구직률

-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구직률 추정 (소득계층별 구직률 동일 가정)
- 『국가통계포탈(KOSTAT)』상의 학력별 실업률을 이용하여 최종학력별 이직률 산출

실업률 = 이직률/(이직률 + 구직률) (23)

○ 최저임금 수준 변화에 따른 구직률 변동 반영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wage gap (Wgap) 상승으로 인한 고용률 하락 규모 계산
- 고용률 변화를 식 (23)을 이용하여 구직률 변화 계산

$$\triangle \text{고용률}/\text{고용률} = \epsilon_{E,\ Wgap} \times \text{Wgap} \quad (24)$$

Wgap = (최저임금 - 시간당 임금)/시간당 임금

- Wage gap 증가에 따른 고용률 변화 탄력성 ($\epsilon_{E,\ Wgap}$) : 0.7로 가정 (Lee and Park, 2019 참조)

[그림 3-1] 소득계층별 연령별 임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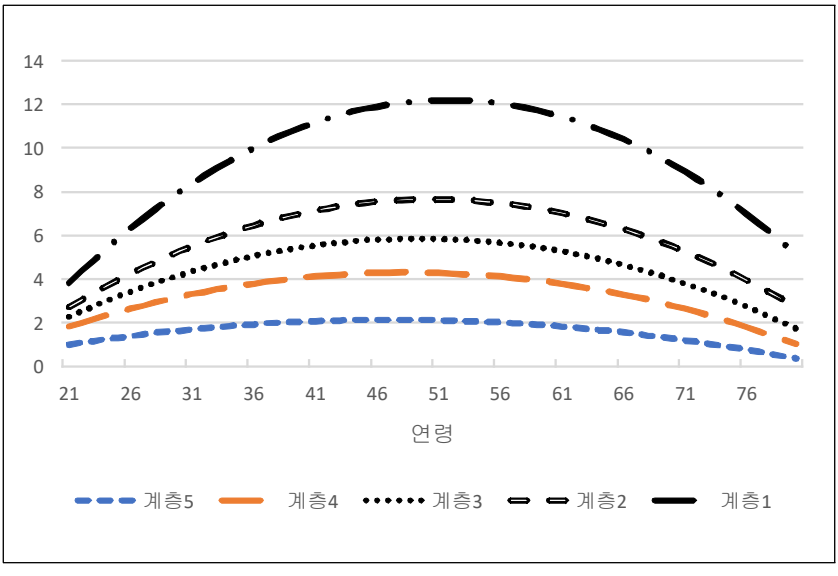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표 3-1〉 소득계층별 연령별 구직률 및 이직률

(단위 : %)

	연령	21-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이직률 ($Sp_j(i)$)	계층 1	2.8	4.6	2.3	2.6	1.8	1.5	1.1	1.3	1.0
	계층 2	2.7	4.4	2.1	2.4	1.7	1.4	1.1	1.2	1.0
	계층 3	2.6	4.3	2.0	2.3	1.7	1.4	1.1	1.2	1.0
	계층 4	2.6	4.3	1.9	2.2	1.6	1.3	1.0	1.1	0.9
	계층 5	2.5	4.2	1.7	2.0	1.5	1.2	1.0	1.1	0.9
구직률 ($fp_j(i)$)	계층 1-5	30.9	51.3	60.8	69.8	73.7	60.4	48.2	54.0	44.9

자료 : 『노동패널』, 『국가통계포탈(KOSTAT)』을 이용하여 계산 저자 작성.

□ 선호관련 모수

○ 선호관련

- 할인요소 (β) : 0.96
- Frisch elasticity (γ) : 0.5

Chetty et al.(2011)의 meta 분석에 의하면 intensive margin과 extensive margin 노동공급 행태를 반영할 경우 0.5가 적합하다고 평가됨.

- 노동에 대한 비선호 강도 ($\alpha_{M_1}, \alpha_{M_2}, \alpha_S$) :

  α_{M_1} : 21-25세 (8.5), 26-55세 (7.5), 56-80세 (6.0)

  α_{M_2} : 21-25세 (22.5), 26-55세 (22.5), 56-80세 (18.0)

  α_S : 21-25세 (17.0), 26-55세 (15.0), 56-80세 (12.0)

  연령별 고용률에 근접하도록 조정 ([그림 3-2])

○ 노동시간

- 전일제 노동시간 $\hat{h}_1$: 0.45

  『고용노동통계』, Statistica 자료 참조

- 시간제 노동시간 $\hat{h}_2$: 전일제의 60%

  (『노동패널자료』 이용하여 추정)

○ 정책변수

- 현행제도를 반영하여 〈표 3-2〉에 정리
- 자산소득세율(τ_k)은 0으로 가정

○ 최저임금

- 평균임금의 50%

〈표 3-2〉 기초생보 및 EITC 관련 모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ζ)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12.3% 28.8% 32.8%
기초생보	소득요건 ($W_{MLSS}^{\max}$)	미혼가구 기혼 가구	16.8%[1)] 42.4%[1), 2)]
	자산 소득환산율 (R_{MLSS})	60%[2)]	
	소득공제율 (edr)	30%	
EITC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9%[1)] 6.8%[1)] 7.9%[1)]

〈표 3-2〉의 계속

EITC	점증률 (rc_1)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7.5% 37.1% 37.5%
	점감률 (rc_3)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3.6% -16.3% -15.9%
	점증률 적용 상한 소득 (yc_1)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0.5%[1)] 18.3%[1)] 21.0%[1)]
	평탄구간 상한 소득 (yc_2)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3.9%[1)] 36.7%[1)] 44.5%[1)]
	EITC 적용 상한 소득 (yc_3)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52.4%[1)] 78.6%[1)] 94.3%[1)]
	재산기준	36.7-5.24%[1)] 52.4%-	(50% 지급) (지급 중지)

주 : 1) 평균임금 대비 비율(%).
2) 2-6인 가구 기준 평균.
3)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를 복리(단리)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63.3(56.4)%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60%로 가정.
자료 : 현행 제도를 이용한 계산 저자 작성.

제3절 분석결과

1. 기준경제(S0)

□ 현행의 EITC, 기초생보, 실업보험, 최저임금제를 상정한 기준경제에서 산출된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표 3-3〉에 제시

○ Capital/GDP 비율 : 3.7
- 「국민대차대조표」의 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추계량 수준(2000-2020 기간동안 GDP 대비 비율 평균이 약 3.7)에 근접함.

○ 총저축률 (순저축률) : 39.2% (20.5%)
- 총저축률 (=총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의 2000-2021 기간 평균 (34.7%)

과 2021년 현재 수준(36.3%)을 상회함.

- 동기간 민간저축률 평균(26.7%)를 상회하나 본 모형에서는 정부예산 균형을 가정하였으므로 민간저축률에 일반정부의 저축률(8.0%)를 더한 총저축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

○ 복지급여 지출액(GDP 대비 비율)

- EITC : 0.4%

  2018년 및 2019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 지출액 합계(각각 0.28%, 0.27%)를 소폭 상회

- 실업급여 : 1.8%

  실업급여 지출액이 과대 산출됨. 2012-2021년 기간동안의 지출액 평균이 GDP의 0.43%에 비해 모형에서 산출된 금액이 크게 나타남. 최근의 실업급여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2020년 0.72%, 2021년 0.70%),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임. 과대 추계의 원인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를 노동 가능인구 전체로 가정하여 실제 제도적용 범위보다 높게 가정하였기 때문임.

- 기초생보 : 2.2%

  기초생보 지출액이 과대 산출됨. 2014-2019년 기간동안 실적치 평균은 GDP의 0.2%이며 의료급여지출액을 포함하더라도 GDP의 0.6% 수준임. 과대산출의 원인은 청년기(20-29세) 수급자 비율이 과대추정되었기 때문임.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의하면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청년기에는 2.1%이나 모형에서 산출된 비율은 20-24세 연령기와 25-29세 연령기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각각 26.5%, 5.8%로 과대 산출되었음. 이는 생애주기모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없이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

○ 정부지출 :

- EITC, 실업급여, 기초생보, 여타 정부소비 지출총액은 GDP의 10%
- 근로소득세 누진구조를 현행 세제와 맞추기 위해 정부소비를 GDP의 5.5%로 가정

○ 세율 :

- 실업보험료 : 3.0%
- 누진과세체계하에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GDP의 6.7%

○ 고용률 (20-80세) :

- 전체 : 58.1%
- 기혼가구 : 57.7%, 남성(주소득자) : 72.6%, 여성(보조소득자) : 42.7%
- 미혼가구 : 60.0%

○ 고용률 (20-64세) :

- 전체 : 71.1%
- 기혼가구 : 70.7%, 남성(주소득자) : 89.9%, 여성(보조소득자) : 51.5%
- 미혼가구 : 73.3%

20-64세 연령집단의 고용률 모형 산출치가 실적치(2010-2021년 기간 평균 65.5%)보다 다소 높음. 이는 사망이전 인구수가 모든 연령기에 동일하다는 모형설정에 기인함.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모형산출치가 실적치에 상당수준 근접한 것으로 보임([그림 3-2])

○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 0.345
- 소비 : 0.271
- 자산 : 0.504

모형에서 산출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7-2018년 수준에 근접함. 최근 실적치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2019년 0.349, 2020년 0.331, KOSIS)

□ 고용의 연령별 추이

○ 고용률([그림 3-2])

- 기초생보, 최저임금제 적용에 다른 소득계층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최저소득계층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
- 전체 고용률 수준과 독신가구의 고용률 수준이 유사한 추이
- 기혼가구의 주소득자(남성)에 비하여 보조소득자의 고용률이 낮음.

〈표 3-3〉 거시경제 변수(기준경제)

			기준경제
Capital/GDP			3.7
총저축률(순저축률) (%)			39.2 (20.5)
실업급여[1)]			1.7
기초생보[1)]			2.2
EITC[1)]			0.4
실업보험료(%)			2.8
소득세 수입(GDP 대비 비중, %)			6.7
정부지출(GDP 대비 비중, %)			10.0
고용률(%)	전체		58.1
		전일제	45.7
		시간제	12.4
	기혼가구		57.7
		전일제	44.0
		시간제	13.7
	기혼가구(주소득자)		72.6
		전일제	67.8
		시간제	4.8
	기혼가구(보조소득자)		42.7
		전일제	20.1
		시간제	22.6
	미혼가구		60.0
		전일제	53.6
		시간제	6.4
노동시간 (가용시간 대비 비율)	전체		0.297
	기혼가구		0.290
	기혼가구(주소득자)		0.394
	기혼가구(보조소득자)		0.188
	미혼가구		0.325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0.345
		소비	0.271
		자산	0.504

주 : 1) GDP 대비 비율 (%).
자료 : 저자 작성.

○ 전일제 비율([그림 3-3])

-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전일제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44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최저소득계층의 전일제 비율이 대부분의 연령에서 여타 계층보다 낮은 경향
- 기혼가구 주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전일제 근로를 하는 반면 보조소득자의 상당부분이 시간제 근로를 함. 특히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5-60대 이상 연령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음.

○ 노동시간([그림 3-4])

- 총 가용시간 중 노동에 배정한 시간의 비중으로 정의
  노동시간 = 고용률 × 전일제 비중 × 전일제 근로 시간
- 주 근로연령대(25-64세)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0.29-0.33 수준
  전체 0.297, 기혼가구 0.290, 미혼가구 0.325
- 최저소득계층의 노동시간(0.209)은 여타 계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 보조소득자의 노동시간이 여타 유형의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기혼가구(전체) : 주소득자 0.394, 보조소득자 0.188

[그림 3-2] 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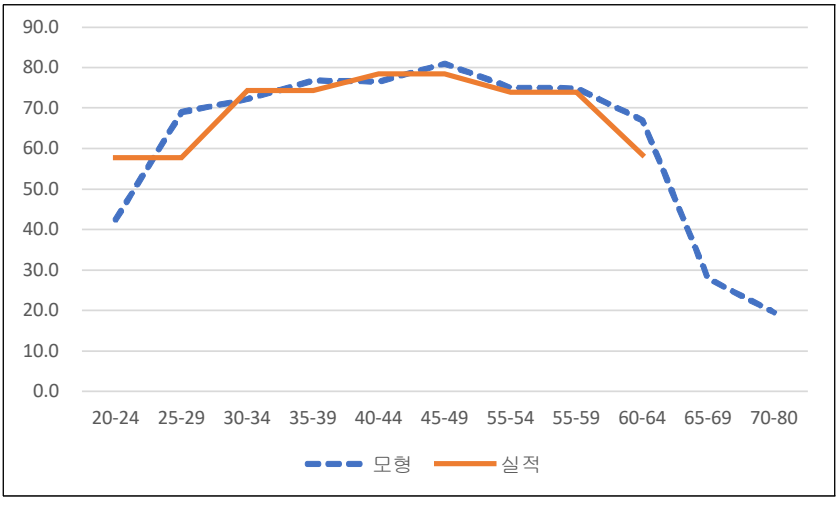

[그림 3-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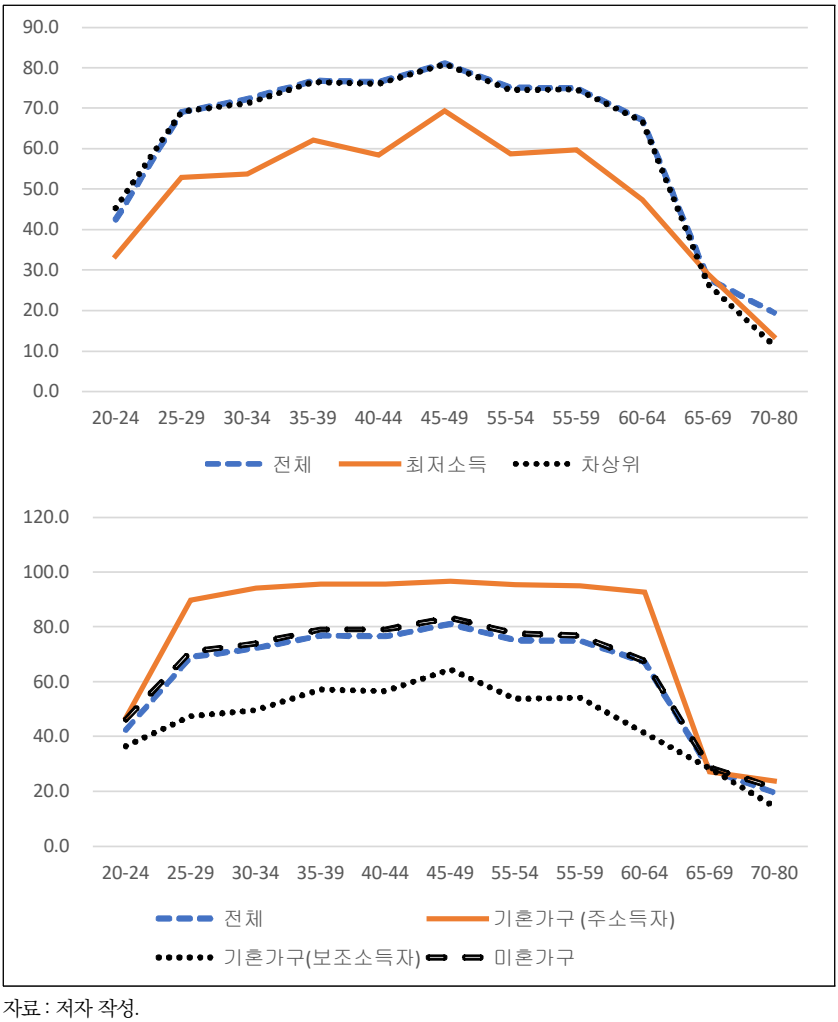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3-3] 연령별 전일제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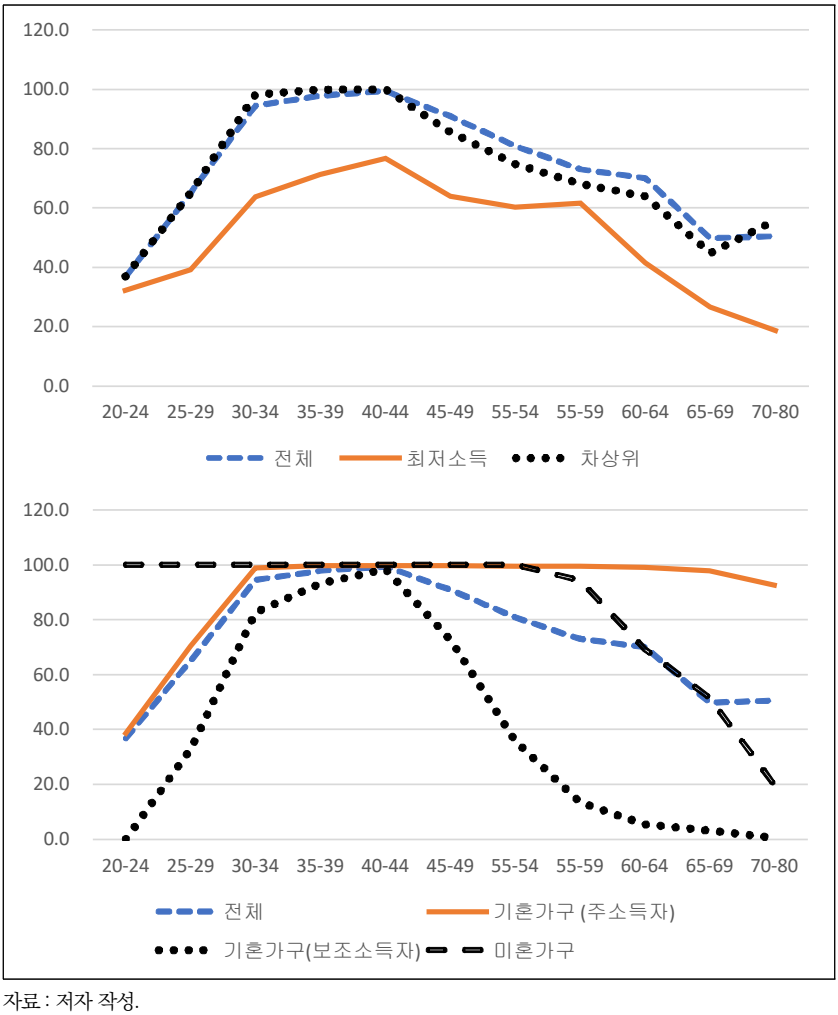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3-4] 연령별 노동공급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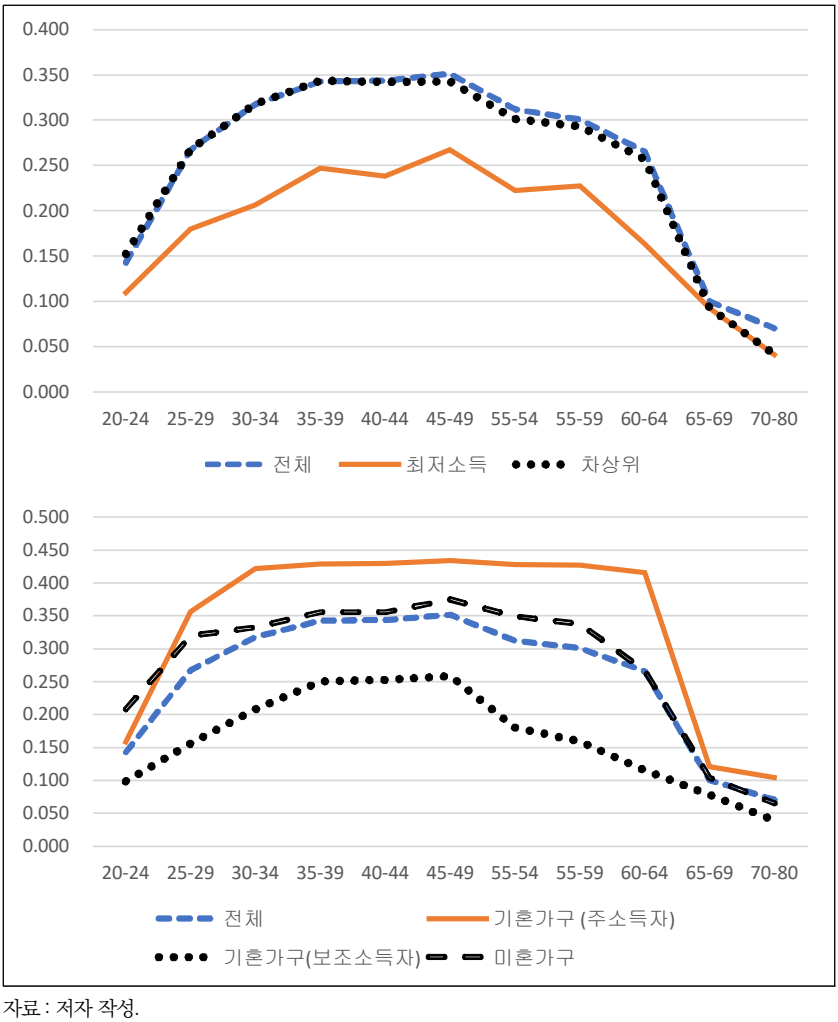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정책시뮬레이션(S1-S7)

□ 정책시나리오(〈표 3-4〉)

○ EITC와 관련제도의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 상정

- EITC 제도 도입이전(S1), 2018년 제도(S2)

- EITC 제도 개편안 :

  대통령 공약(S3), 평탄구간 확장(S4), 최대지급액 상향조정(S5), 재산요건 완화(S6)

- 기초생보 선정기준 완화(S7), 최저임금 상향조정(S8)

〈표 3-4〉 정책시나리오

Scenario #0 (S0)	기준 경제(2019년 제도)
Scenario #1 (S1)	EITC 부재
Scenario #2 (S2)	2018년 제도
Scenario #3 (S3)	EITC 확정안 (소득구간 확장+고원높이 상승)
Scenario #4 (S4)	평탄구간 확장
Scenario #5 (S5)	고원높이(최대지급액 상승)
Scenario #6 (S6)	재산요건 완화 기준 경제 재산요건(1.4억/2.0억)에서 40% 인상된 (2.0억/2.8억) 적용
Scenario #7 (S7)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금액 상승 선정기준금액 10% 일괄 상승
Scenario #8 (S8)	최저임금 1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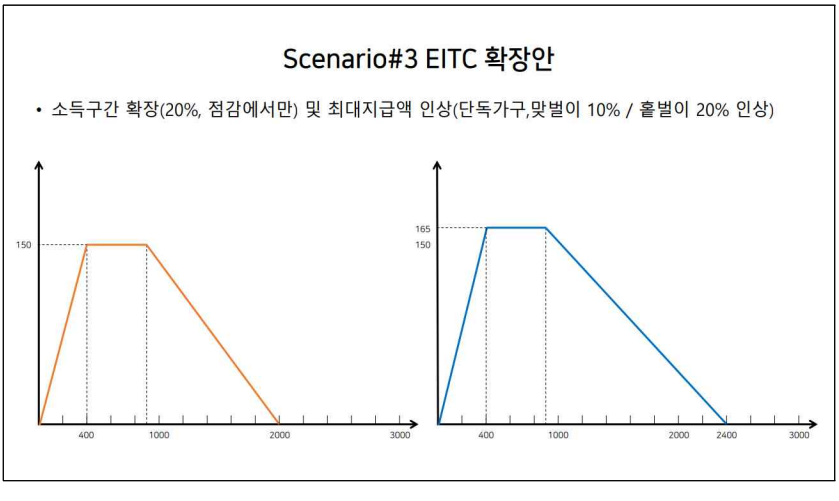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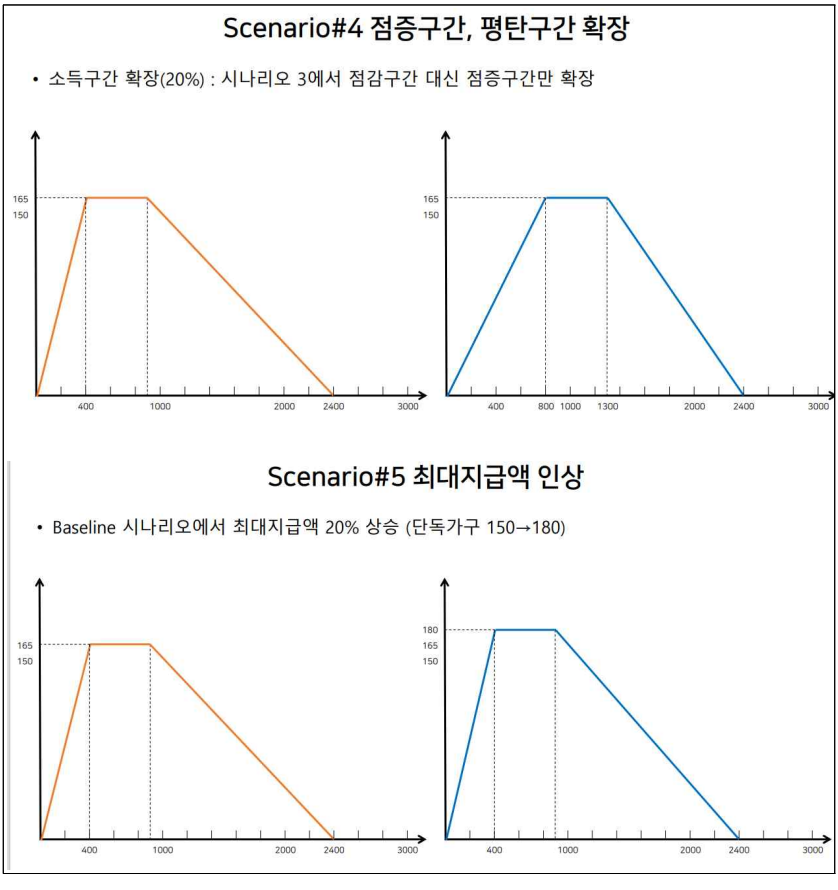

□ EITC 도입 이전(S1)과 비교(S1→S0)

○ EITC 부재 시와 비교하여 현행 제도하에서의 거시경제변수가 대체적으로 소폭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3-5〉).

- GDP 1.0% 하락, 노동 0.8% 하락, 자본 1.2% 감소
- 실업보험급여 지출액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이러한 실업급여의 감소는 EITC에 의한 전반적인 고용률의 증가에 기인함(전체 고용률 0.7%p 증가, 최저소득계층 고용률 5.3%p 증가 〈표 3-7〉, 〈표 3-8〉).
- 기초생보급여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초생보 수급자 증가

(7.7%→8.2%, 0.5%p 증가)와 평균수급액의 증가(9.2% 증가)에 기인함.

- 이러한 증가는 기초생보 급여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근로소득의 30% 적용)와 EITC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임. 소득공제율 30%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암묵적 한계세율이 70%이던 것이 EITC 도입에 따라 음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EITC 점증구간에 속한 소득집단의 암묵적 한계세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보 수급자 중 근로에 참여하는 자가 증가하여 기초생보급여지출액이 증가하였음.
- 가처분소득과 소비의 GINI계수 소폭 하락(〈표 3-6〉)

  가처분소득 : 0.350 → 0.345

  소비 : 0.275 → 0.271

○ 고용률은 소폭 상승, 전일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기혼가구 특히 기혼가구의 보조소득자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남.
- EITC제도의 주 수혜자인 최저소득계층의 고용률 상승(5.3%p), 전일제 비중 하락(29.7%p), 노동시간 감소(1.1%)가 나타남(〈표 3-8〉).
- 차상위 계층의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의 변화폭은 최저소득계층보다 대폭 줄어듦(〈표 3-9〉).

  고용률 0.5%p 증가, 전일제 비중 6.4% 감소, 노동시간 1.8% 감소

○ 최저소득계층의 고용구조의 연령별 패턴 변화([그림 3-5])

- EITC 도입에 따른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고용률 증가폭이 여타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며, 전일제 감소폭도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크게 나타남. 노동시간의 감소폭은 대체적으로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더 크게 나타남.

□ 2018년 제도에서 현행제도로 제도 확대 개편(S2→S0)

○ 거시경제 변화는 S1→S0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며,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 GDP 감소 0.3%, 노동 감소 0.3%, 자본 0.3%

  지니계수 변화 : 가처분소득 (0.346 → 0.345), 소비 (0.273 → 0.271)

○ 최저소득계층 연령별 고용구조 패턴은 S1→S0와 상이한 패턴을 보임.

- 현행 제도를 일시에 도입하는 상황을 상정한 S1→S0의 경우 고용패턴의 변화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크게 나타나는 반면
- 2018년 제도를 현행의 제도로 확대하는 상황을 상정할 경우 40-54세 연령구간의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제도에서 현행의 제도로의 개편은 제도 수혜대상 소득 상한의 상향조정, 최대급여 수준의 상향조정, 재산요건의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개편이 최저소득계층의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장년층에 근로유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표 3-5〉 거시경제변수 변화

	GDP[1)]	자본[1)]	노동[1)]	소비[1)]	임금률[1)]	UI[1)]	기초생보[1)]	EITC[1)]	실업보험료[2)]	정부지출[3)]
S1	1.0	1.2	0.8	1.1	0.1	0.1	-9.3	-100.0	0.00	-0.60
S2	0.3	0.4	0.3	0.3	0.1	0.1	-2.4	-28.8	0.00	-0.16
S3	-0.1	-0.1	0.0	0.0	-0.1	0.0	-1.0	21.1	0.00	0.06
S4	-0.1	0.0	0.0	0.0	0.0	0.0	-0.7	15.8	0.00	0.04
S5	-0.1	-0.1	-0.1	0.0	0.0	-0.1	0.5	12.8	0.00	0.06
S6	-0.1	-0.2	0.0	-0.1	-0.1	0.1	0.1	4.2	0.00	0.02
S7	-1.2	-1.8	-0.7	-1.1	-0.5	-1.4	26.7	10.0	-0.04	0.61
S8	-0.9	-1.2	-0.6	-0.9	-0.3	1.1	13.0	-1.9	0.02	0.30

주 : 1) 단위 : %, 2) 단위 %p, 3) GDP 대비 비중의 %p 변화.
자료 : 저자 작성.

〈표 3-6〉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소비	보유자산
S0	0.345	0.271	0.504
S1	0.350	0.275	0.504
S2	0.346	0.273	0.504
S3	0.344	0.271	0.504
S4	0.344	0.271	0.504
S5	0.344	0.271	0.504
S6	0.345	0.272	0.504
S7	0.340	0.269	0.508
S8	0.345	0.273	0.504

자료 : 저자 작성.

〈표 3-7〉 고용효과(전체)

(단위 : %p, %)

	전체	기혼가구	기혼(주소득자)	기혼(보조소득자)	독신가구
고용률 변화 (%p)					
s1	-0.7	-0.9	0.0	-1.7	-0.1
s2	-0.1	-0.1	0.0	-0.2	-0.1
s3	0.0	0.0	0.0	0.0	0.0
s4	0.0	0.0	0.0	0.0	0.0
s5	0.0	0.0	0.0	0.0	0.0
s6	0.0	0.0	0.0	0.1	0.0
s7	-0.1	-0.1	0.0	-0.1	0.0
s8	-0.5	-0.5	0.0	0.2	-0.5
전일제 비중 변화 (%p)					
s1	5.3	6.4	5.6	6.6	0.3
s2	1.0	1.2	1.3	0.9	0.3
s3	0.1	0.1	0.4	-0.5	-0.1
s4	0.0	0.0	0.2	-0.5	-0.1
s5	-0.2	-0.3	-0.3	-0.3	-0.1
s6	-0.2	-0.2	-0.1	-0.3	-0.4
s7	-1.8	-2.2	-2.4	-2.0	0.2
s8	-0.3	-0.5	0.3	-1.1	0.3
노동시간 변화 (%)					
s1	1.0	1.3	2.3	-0.9	0.0
s2	0.3	0.4	0.5	0.1	0.0
s3	0.0	0.1	0.2	-0.2	0.0
s4	0.0	0.0	0.1	-0.2	0.0
s5	-0.1	-0.1	-0.1	-0.1	0.0
s6	0.0	0.0	0.0	0.0	-0.1
s7	-0.9	-1.1	-1.0	-1.3	0.0
s8	-1.0	-1.1	0.1	0.0	-0.6

자료 : 저자 작성.

〈표 3-8〉 고용효과(최저소득계층)

(단위 : %p, %)

	전체	기혼가구	기혼(주소득자)	기혼(보조소득자)	독신가구
고용률 변화 (%p)					
s1	-5.3	-6.5	0.0	-13.0	0.0
s2	-1.0	-1.3	0.0	-2.5	0.0
s3	0.2	0.2	0.0	0.5	0.0
s4	0.3	0.3	0.0	0.6	0.0
s5	0.1	0.2	0.0	0.3	0.0
s6	0.0	0.0	0.0	0.0	0.0
s7	-0.3	-0.3	0.0	-0.7	0.0
s8	-1.1	-1.1	-1.2	-1.0	-1.1

〈표 3-8〉의 계속

	전체	기혼가구	기혼(주소득자)	기혼(보조소득자)	독신가구
전일제 비중 변화 (%p)					
s1	29.7	35.4	31.3	30.9	1.4
s2	6.2	7.0	6.3	6.4	1.1
s3	−0.2	−0.2	2.5	−3.1	0.1
s4	0.2	0.3	2.5	−2.1	0.0
s5	−1.3	−1.5	−1.6	−1.2	−0.4
s6	−0.1	0.1	0.0	0.2	−1.0
s7	−3.7	−5.0	−7.4	−2.3	2.0
s8	−0.2	−0.7	−1.2	−0.2	2.1
노동공급 변화 (%)					
s1	1.1	1.2	14.4	−19.2	0.6
s2	0.7	0.7	2.9	−2.6	0.5
s3	0.4	0.4	1.2	−0.7	0.0
s4	0.7	0.8	1.2	0.3	0.0
s5	−0.4	−0.4	−0.7	0.1	−0.1
s6	−0.1	0.0	0.0	0.1	−0.4
s7	−2.4	−3.2	−3.4	−2.9	0.8
s8	−2.5	−2.8	−2.9	−2.6	−1.6

자료 : 저자 작성.

〈표 3-9〉 고용효과(차상위계층)

(단위 : %p, %)

	전체	기혼가구	기혼(주소득자)	기혼(보조소득자)	독신가구
고용률 변화 (%p)					
s1	−0.5	−0.6	0.0	−1.3	0.0
s2	0.0	0.0	0.0	−0.1	0.0
s3	0.0	0.0	0.0	−0.1	0.0
s4	0.0	0.0	0.0	−0.1	0.0
s5	0.0	0.0	0.0	0.0	0.0
s6	0.1	0.1	0.0	0.1	0.0
s7	−0.1	−0.1	0.0	−0.2	0.0
s8	−0.5	−0.4	−1.7	0.9	−0.8
전일제 비중 변화 (%p)					
s1	6.4	7.8	6.9	8.5	0.3
s2	0.8	0.9	1.0	0.6	0.3
s3	0.2	0.3	0.4	0.0	0.0
s4	0.1	0.1	0.4	−0.4	0.0
s5	−0.2	−0.2	−0.1	−0.3	−0.1
s6	−0.3	−0.2	0.0	−0.6	−0.7
s7	−1.8	−2.3	−2.7	−1.6	0.2
s8	−0.6	−0.9	0.3	−1.6	1.0

〈표 3-9〉의 계속

	전체	기혼가구	기혼(주소득자)	기혼(보조소득자)	독신가구
	노동공급 변화 (%)				
s1	1.8	2.2	2.9	0.9	0.1
s2	0.3	0.3	0.4	0.1	0.1
s3	0.0	0.1	0.2	−0.2	0.0
s4	0.0	0.0	0.2	−0.4	0.0
s5	−0.1	−0.1	−0.1	−0.3	0.0
s6	0.0	0.0	0.0	0.0	−0.2
s7	−0.9	−1.1	−1.1	−1.2	0.0
s8	−1.1	−1.1	−2.3	1.4	−0.9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3-5] 연령별 고용효과 1(최저소득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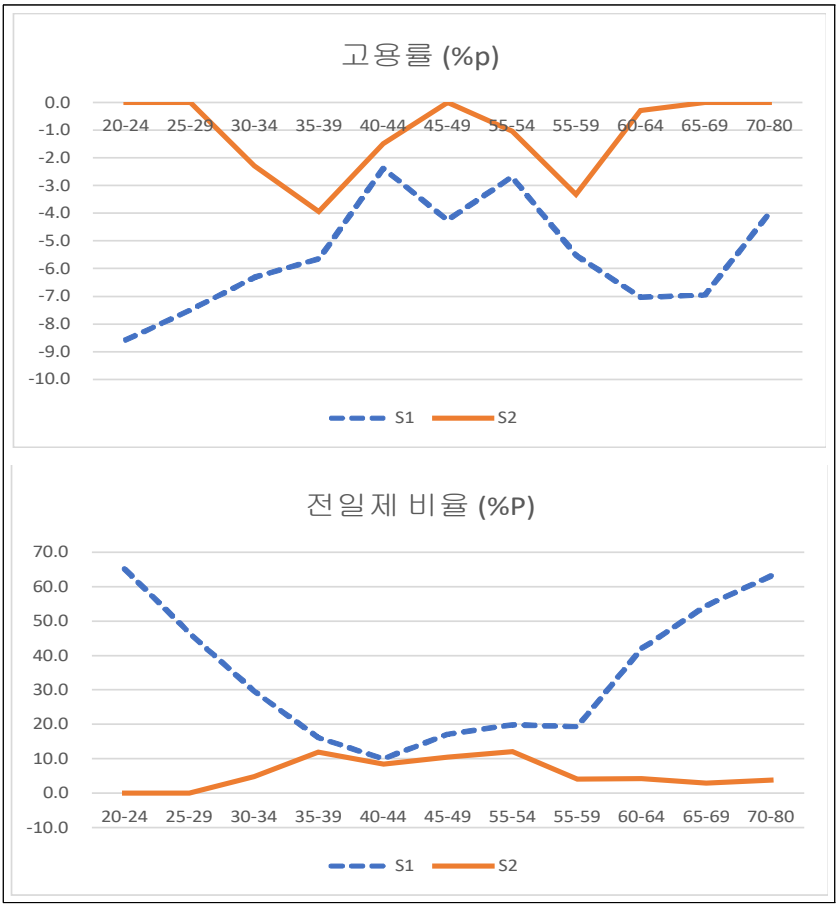

[그림 3-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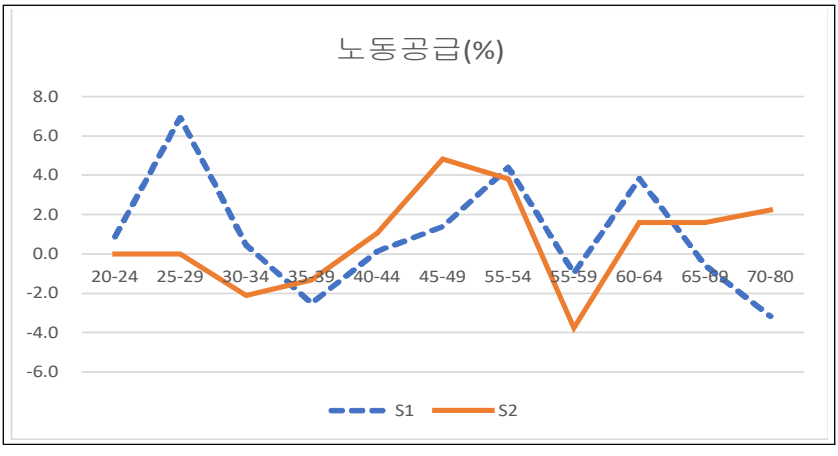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EITC 확장안(S0→S3, S0→S4, S0→S5, S0→S6)

○ 거시경제변수가 소폭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그 변화폭은 크지 않음.(〈표 3-5〉)

- GDP 약 0.1% 감소, 자본 0.1-0.2% 감소, 소비 최대 0.1% 감소
- 실업보험급여와 기초생보의 변화는 시나리오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나 변화폭은 크지 않음.

○ 지니계수에는 큰 변화 없음(〈표 3-6〉).

- 가처분 소득은 변화가 없거나 소폭 상승
- 소비는 변화가 없거나 소폭 하락
- 보유자산은 큰 변화가 없음.

○ 전반적인 고용구조 변화는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고원 높이고 제도 수혜자를 확대하는 S3로의 개편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나(0.2%p, 〈표 3-8〉)

- 여타 소득계층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전체근로자의 전일제 비율이 소폭 상승하나(0.2%p, 〈표 3-7〉) 이러한 상승은 최저소득계층보다 차상위계층 이상 계층에서 주로 나타남(〈표 3-9〉).
- 최저소득계층의 고용률 상승은 주로 40-44세 연령구간에서 나타남.

- 최저소득계층의 전일제 비중 변화는 연령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저연령층에서는 전일제 비중의 감소, 고연령층에서 증가가 나타남. 이는 고원높이 상승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효과와 점감률 감소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효과가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 점증구간을 확장하고 평탄구간을 평행 이동시키는 S4의 경우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고용률은 소폭 상승시키며, 전일제 비중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소득계층의 고용률 상승은 주로 40-44세 연령구간에서 나타남([그림 3-6]).
- 제도 적용 상한선을 그대로 두고 평탄구간을 평행 이동시킴에 따라 점감률이 높아져 노동시간 감소(전일제 비중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최저소득계층의 저연령층에서 나타남. 그러나 시간당 임금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령층의 경우 점감률 상승보다 점증률 적용구간의 확장에 영향을 받아 전일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전일제 비중 효과의 방향이 연령구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최저소득계층의 전일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원 높이를 상승시킴에 따라 점증률과 점감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S5로 전환할 경우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감소가 나타남.

- 최저소득계층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며(0.1%p 상승하며),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전일제 비중 감소가 나타남.
- 최저소득계층의 연령별로 보면 고용률 증가는 40-44세 연령구간에서 나타나며, 전일제 비중 감소는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남.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시나리오 S6을 상정할 경우, 제도 개편의 영향은 최저소득계층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남(〈표 3-8〉, 〈표 3-9〉).

-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일제 감소효과는 소폭에 거치는 반면, 차상위계층의 고용률 증가효과와 전일제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그림 3-6] 연령별 고용효과 2(최저소득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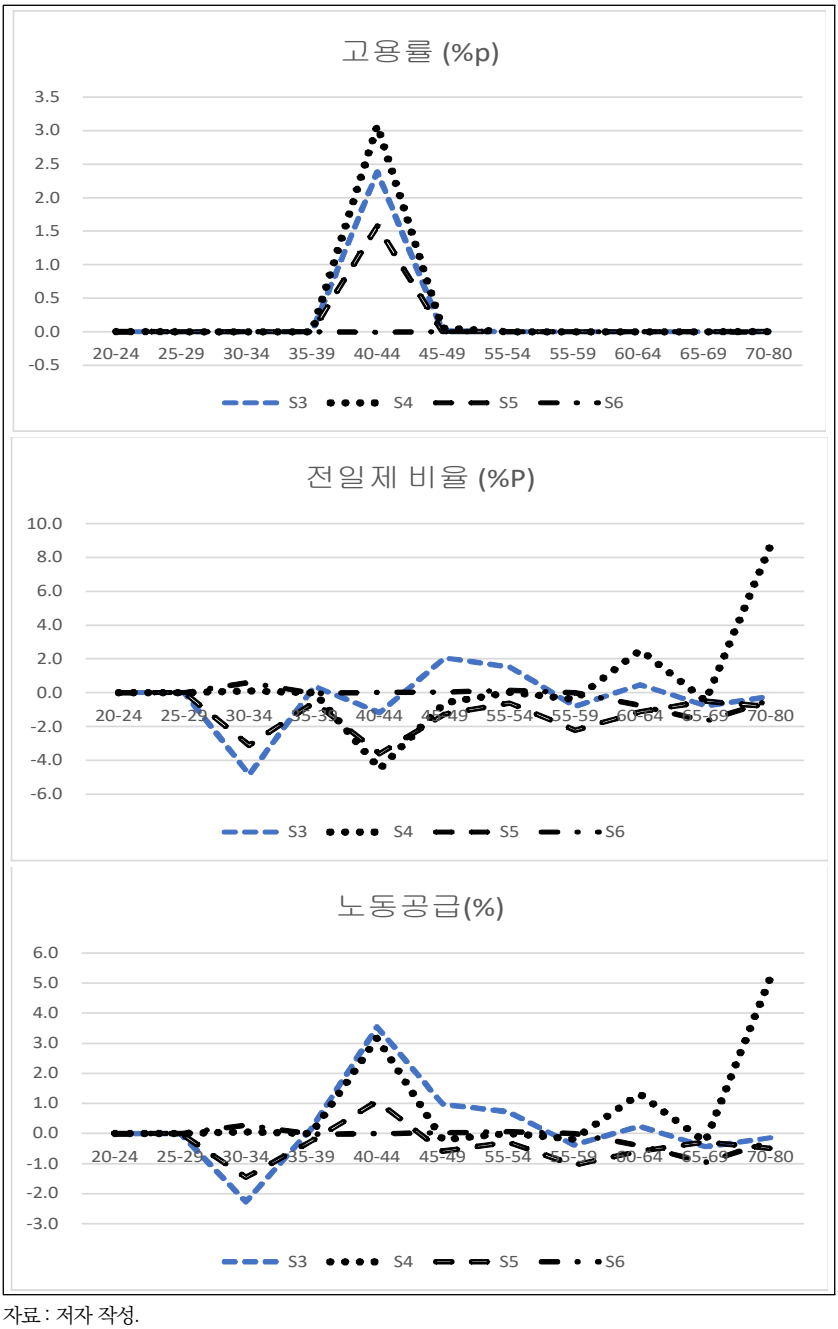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기초생보 급여 상향조정(S0→S7)

○ EITC 확장안에 비하여 거시경제변수 악화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짐(〈표 3-5〉)

- GDP 1.2% 하락, 노동 0.7% 감소, 소비 1.1% 감소, 자본 1.8% 감소
- 실업보험 급여 소폭 감소(1.4%), 기초생보 급여 대폭 증가(26.7%)

○ GINI계수(〈표 3-6〉)

- 가처분소득 지니 감소, 임금지니 상승, 소비지니 불변, 보유자산 지니 상승

○ 고용구조(〈표 3-7〉)

-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이 동반 하락함으로써 노동시간도 감소
- 기초생보의 주 수혜계층은 최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명확히 나타남(〈표 3-8〉,〈표 3-9〉).
- 최저소득계층의 근로구조의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고용률 감소는 저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전일제 비중은 일부 고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7]).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일부 고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연령별 고용효과 3(최저소득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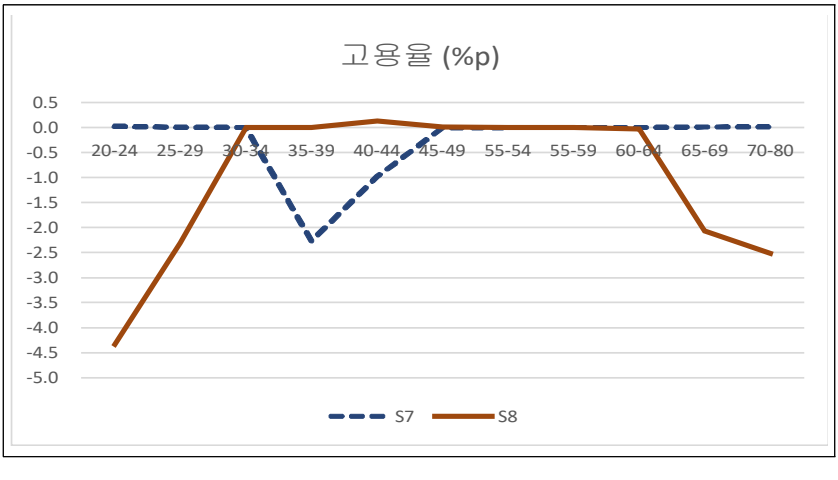

[그림 3-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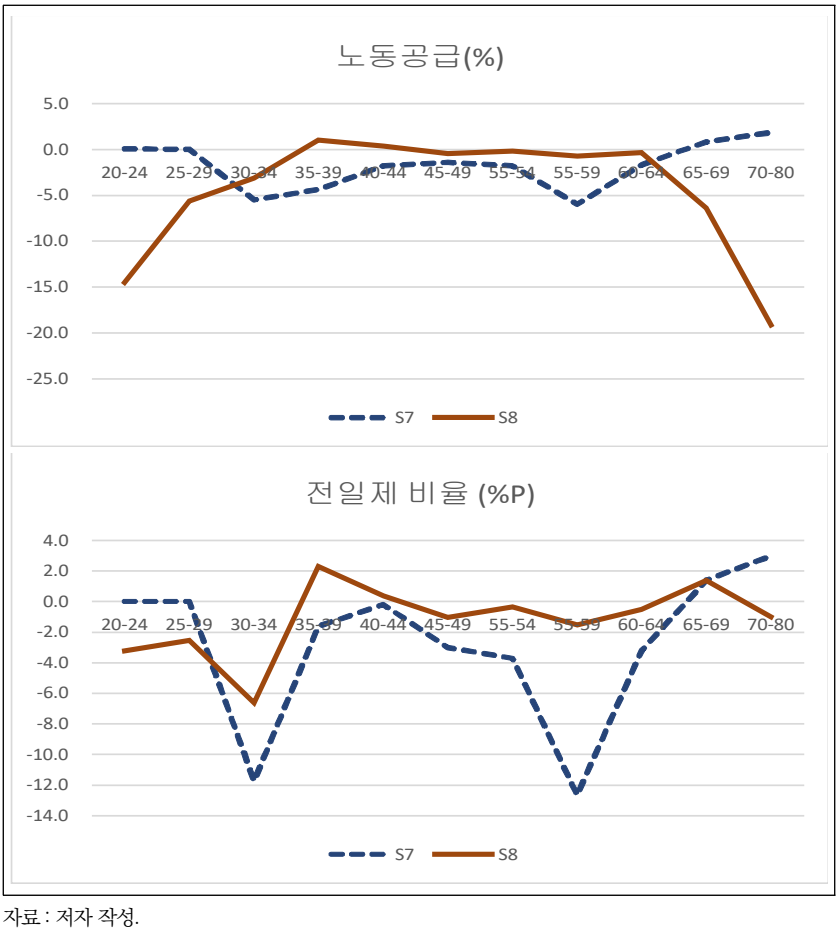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최저임금 상향조정(S0→S8)

○ EITC 확장안에 비하여 거시경제변수 악화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며, 기초생보급여 상향조정 시 보다 변화폭이 작음(〈표 3-5〉).

- GDP 0.9% 하락, 노동 0.6% 감소, 소비 0.9% 감소, 자본 1.2% 감소
- 실업보험 급여 소폭 증가(1.1%), 기초생보 급여 대폭 증가(13.0%)

○ GINI계수(〈표 3-6〉)

- 가처분소득 지니 불변, 소비지니 소폭 하락, 보유자산 지니 불변

○ 고용구조(〈표 3-7〉)
  -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함.
  -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의 감소폭이 여타 계층에 비하여 크게 나타남(〈표 3-8〉).
  - 차상위 계층의 경우도 최저소득계층과 유사한 변화가 있으며 다만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표 3-9〉).
  - 최저소득계층의 근로구조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고용률 감소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전일제 비중은 일부 연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7]).
  -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큰 감소폭을 보임.

제4절 소 결

□ 본 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경제주체의 유인구조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급여구조 관련 개편 이외의 제도적 환경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순수한 급여구조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본 장의 분석은 제도 개편의 장기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음.

□ 본 장에서 상정한 정책개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

○ EITC 제도 도입(S1→S0) 및 최근 제도 개편의 효과(S2→S0)
  - 정책개편 시나리오는 〈표 3-4〉 참조
○ 제도 확장 시니리오(S0→S3, S4, S5, S6)
  - 정부안(S0→S3)

- 평탄구간 확장(S0→S4)
- 최대급여 상향조정(S0→S5)
- 재산기준 완화(S0→S6)

○ 관련제도 개편(S0→S7, S8)
- 기초생보 선정기준 완화(S0→S7)
- 최저임금 상향조정(S0→S8)

□ 정책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행의 EITC 제도 도입과 현행 제도로의 확장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전일제 비중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전반적인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시나리오하에서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의 전반적인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제도 개편이 미치는 연령집단은 상이하게 나타남.
- S1→S0 시나리오하에서는 최저소득계층의 저연령대와 고연령대의 노동공급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만
- S2→S0 시나리오하에서는 중간연령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현행제도에서 제도를 확장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제도 개편이 영향을 미치는 소득계층과 연령대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시나리오별로 전반적인 고용률과 전일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
- 따라서 급여구조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령층 및 소득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목표 집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보 대상을 확대하거나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개편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률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야기하며 거시경제변수의 악화가 EITC 강화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제도개편은 저소득층의 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제4장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장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있으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함.

○ 이 자격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① 대상요건(신청 가능 대상, 제외 대상), ② 총소득요건, ③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 ④ 주택요건, ⑤ 재산요건임.

○ 2008년 첫 시행 이래로 근로장려세제는 수급 자격요건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수급 자격자의 폭을 넓히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확대해 옴.

○ 이러한 세부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매년 각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여부는 외생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임.

○ 개인이 특정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노동공급 유인이 발생함.

○ 본 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제도 개편이 사람들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의 외생적 변화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떤 가구가 특정 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Eligibility)'을 충족하는지가 가구주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또한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최근의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할 것임.

제2절 제도 주요 개정사항

1.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 개정 연혁

○ 제도의 개정사항을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의 하나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의 본문을 살펴보고 연혁별로 비교해보는 것임.

○ 특히, 법령의 개정(공포) 일자와 적용 일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유인 발생 시점을 판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임.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 따름.

○ 이 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을 토대로 주요 개정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먼저 근로장려세제가 처음 신설되었을 당시의 법령을 살펴보고, 다섯 가지 자격요건별로 구분하여 개정사항을 정리함.

가. 근로장려세제 도입(부록 〈표 A-1〉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46호) : 2006.12.30 공포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 규정을 도입함.

○ 첫 시행 이전의 근로장려세제는 1) 근로소득 있음, 2) 부양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음, 3) 부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4)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5) 재산[10]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대상요건 - 신청 가능 요건(부록 〈표 A-2〉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됨.

- 이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향후 근로장려세제 적용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33호) : 2011.12.31. 공포

○ 일부 사업소득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조기 적용하게 됨.

○ 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7조)에 따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됨.

---

10)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개인별 500만 원 이상인 금융재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196호) : 2014.2.21. 공포

○ 앞서 예고된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관련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를 명확화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전문직 사업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27호) : 2017.12.19. 공포

○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함.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

다. 대상요건 - 제외 요건(부록 〈표 A-3〉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827호) : 2007.12.31. 공포

○ 첫 시행 이전의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일 직전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방식으로 운영되어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근로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은 자를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생계급여 외의 급여는 실비변상 또는 정액급여방식으로 운용 중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베재할 이유가 적음을 감안한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신청년도 3월 중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로 개정하여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을 확대
-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단, 법령 개정의 경과조치로서 2013년 3월 중 생계·주거급여를 받았더라도 2012년 중 3개월 이상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201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73호) : 2014.1.1. 공포

○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 요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삭제함.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게 됨.[11)]

라.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부록 〈표 A-4〉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272호) : 2008.12.26. 공포

○ 도입 초기의 근로장려세제는 부양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00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부양자녀가 1명이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33호) : 2011.12.31. 공포

○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규정은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요건을 만족하면

11) 법령의 시행 일자와 적용 일자 간에 시차가 있을 경우 근로유인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함.
[종전]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는(2014년 3월에도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유지된다는 예상하에)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3년 중 근로유인이 발생하지 않았음.
[개정]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는(2015년 3월에도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201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 중 근로유인이 발생할 것임.

201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4호) : 2013.1.1. 공포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함.
-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73호) : 2014.1.1. 공포

○ 연령요건 단계적으로 완화
-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201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2016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760호) : 2017.4.18. 공포

○ 연령요건 단계적으로 완화
-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3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9호) : 2018.12.24. 공포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 삭제되면서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이 실질적으로 폐지됨.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연령 50대는 201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6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15년 중 근로유인이 발생할 것임. 연령 40대는 2016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7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중 근로유인이 발생할 것임.

13) 연령 30대는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8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중 근로유인이 발생할 것임.

마.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부록 〈표 A-5〉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272호) : 2008.12.26. 공포

○ 도입 초기의 근로장려세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1주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산의 범위에 주택을 추가함.
  - 200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33호) : 2011.12.31. 공포

○ 주택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1주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 개정규정은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요건을 만족하면 201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73호) : 2014.1.1. 공포

○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이면 주택요건을 충족함.
○ 재산요건을 종전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에서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함. 단, 재산 1억 원 초과 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390호) : 2016.12.20. 공포

○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가 삭제되면서 주택요건이 폐지됨.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9호) : 2018.12.24. 공포

○ 재산요건을 종전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함. 단,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 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바. 가구유형 정의(부록 〈표 A-6〉 참조)

○ 한편 근로장려세제에서 정의하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기준도 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173호) : 2014.1.1. 공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227호) : 2017.12.19. 공포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을 완화함.
  - 부양 부모의 범위는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동거 부모임.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5호) : 2019.12.31. 공포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가구요건을 완화
  - 부양 직계존속의 범위는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동거 직계존속이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759호) : 2020.12.29. 공포

○ 홑벌이 가구 인정 시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두지 않기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을 확대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표 4-1〉 근로장려세제상 가구유형 정의 변화

적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2014. 1. 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18. 1. 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2]가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1]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2]가 있는 가구	
2020. 1. 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1]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있는 가구	
2021. 1. 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상동,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상동,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주 : 1)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동거 부모.
2)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동거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2.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유인 발생 시점

○ 세제 개편에 따라 개인에게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는 시점을 특정해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법령의 시행 일자와 적용 일자 간에 시차가 있을 경우 근로유인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함.

○ 앞서 살펴본 법령 개정내용은 i) 개정 직후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규정도 있고, ii) 미래 시점부터 적용될 것이 미리 명시된 사항도 있음.

〈표 4-2〉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근로유인 발생 시점 기준)

<table>
<tr><th colspan="2">소득
귀속연도</th><th>2008</th><th>2009-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2021</th><th>2022</th></tr>
<tr><td rowspan="2">①
대상</td><td>신청
가능</td><td colspan="2">근로소득자</td><td colspan="2">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td><td colspan="4">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td><td colspan="3">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td></tr>
<tr><td>제외</td><td colspan="3">생계·주거·교육급여
귀속연도 3개월 이상 수급자</td><td>생계·주거급여
신청년도 3월 중 수급자</td><td colspan="7">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td></tr>
<tr><td colspan="2">②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총소득)</td><td colspan="3">1,700만 원 이하</td><td colspan="2">부양자녀 0명 : 1,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1명 : 1,7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2명 : 2,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3명 이상 : 2,500만 원 이하</td><td colspan="4">단독가구 :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이하</td><td colspan="2">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이하</td><td>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td></tr>
<tr><td colspan="2">최대지급액</td><td>80만 원</td><td>120만 원</td><td colspan="3">70/140/170/200만 원</td><td colspan="2">70/170/210만 원</td><td>77/185/
230만 원</td><td>85/200/
250만 원</td><td>150/260/300만 원</td><td>(개정안) 165/285/330만 원</td></tr>
<tr><td rowspan="3">③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td><td colspan="2">부양자녀
2명 이상</td><td colspan="10">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10">배우자가 있거나</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60세 이상</td><td>50세
이상</td><td>40세
이상</td><td>30세 이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td><td colspan="5">중증 장애인</td></tr>
<tr><td colspan="2">④ 주택요건</td><td>무주택</td><td>무주택 또는
5천만 원 이하
1주택</td><td colspan="3">무주택 또는
6천만 원 이하 1주택</td><td colspan="3">무주택 또는
1주택</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⑤ 재산요건</td><td colspan="5">1억 원 미만</td><td colspan="5">1억 4천만 원 미만</td><td colspan="2">2억 원 미만</td><td>(개정안) 2억 4천만 원 미만</td></tr>
</table>

주 : 미래 시점부터 적용될 것이 미리 법령에 명시된 개정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사람들이 각 소득 귀속연도에 인지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 개정 직후의 근로장려금 신청(지급)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사람들이 귀속연도에 소득 활동을 할 당시에는 몰랐으나 신청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경우 귀속연도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유인은 제도 개편을 인지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임.
- 같은 맥락에서 신상화(2021)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안은 2018년 겨울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새롭게 확대된 제도를 2018년 경제활동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에도 즉시 적용하였다. 따라서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행태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신상화 2021, p.270)."라고 설명함.

○ 미래 시점부터 적용될 사항이 미리 명시된 경우,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하는 귀속연도에 각자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미리 인지할 수 있음.

- 개인이 특정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노동공급 유인이 발생할 것임.

○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각 소득 귀속연도에 인지할 수 있는(근로유인이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표 4-2〉와 같음.

제3절 분석방법 및 기초통계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세법개정에 따라 수급 자격요건과 급여체계가 계속해서 바뀌어 옴.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 개정을 개인의 노동공급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외생적 변화요인으로 보고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이 절에서는 어떤 가구가 특정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Eligible)를 판별해 그에 따른 한 해 동안의 노동공급 행동의 변화를 실증분석함.

- 본 연구의 식별 방법은 제도의 도입과 변화에 의한 자격요건 충족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는 것임.

□ 분석방법의 의의

○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옴.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로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변화를 비교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취함.

○ 하지만 본 연구는 제도의 '수급'이 아닌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 가능함.

○ 첫째, 이들 선행연구에서 추정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수급 경험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근로장려세제가 주는 경제적 유인에 따른 효과는 아님.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조건부 급여(in-work benefit)로서 노동공급 유인(incentive)이 있는 제도임.
- 여러 자격요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를 통해 번 소득이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임.
- 개인이 특정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노동공급 유인이 발생함.
- 근로장려세제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노동공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로서 포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방법론이 포착하는 정책효과는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처치의도효과(intent-to-treat)임.

○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처치집단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로 설정한다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추정될 우려가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짐.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처리집단으로 정의할 경우 처리집단의 모두가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시간을 쓰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임.
- 반면 통제집단이 되는 근로장려금 비수급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거나 다른 자격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임.
- 따라서 만약 근로장려금의 노동시장 참가 효과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에 따라 처리 및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방법론은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추정할 우려가 있음(박지혜·이정민 2018, p.13).

□ 근로유인 발생 시점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각 소득 귀속연도에 인지할 수 있어 근로유인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한 연도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표 4-2〉)을 분석에 활용할 것임.

1. 연구모형[14)]

□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세부 자격요건은 총 다섯 가지로 ① 대상요건(신청 가능 대

14) 박지혜·이정민(2018)의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함.

상, 제외 대상), ② 총소득요건, ③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④ 주택요건, ⑤ 재산요건임.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종속변수(노동시장 참여, 근로소득 등)에 관련된 자격요건은 독립변수로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첫 번째 요건인 대상요건 중 신청 가능 대상요건은 대상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시장 참여자로 제한하는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인 총소득요건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의 최대액에 대한 규정임.
- 이 두 가지 자격요건은 노동공급의 결정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자격요건임.
- 경제활동(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양(+)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0이 됨.
-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참여 여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총소득의 크기도 결정하게 됨.
- 이 두 가지 자격요건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킬 경우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대상요건(신청 가능 대상)과 총소득요건을 제외한 A) 대상요건(제외 대상), B)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C) 주택요건, D) 재산요건 네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 표본을 정의하고 독립변수로 사용함.

○ 개인(가구)의 연도별 A~D 각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유인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한 연도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표 4-2〉)에 따라 판단함.

□ Eligible 변수 생성

○ 본 연구에서 사용할 첫 번째 독립변수 $Eligible_{it}$은 가구 또는 개인 i가 연도 t에 위에 정리한 A~D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 하나라도 충족

하지 못하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로 정의

○ 가구 또는 개인 i가 연도 t에 A~D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E_{it}^{j}(j=A,B,C,D)$라는 1(충족)과 0(미충족)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로 표시하면 $Eligible_{it}=E_{it}^{A}\times E_{it}^{B}\times E_{it}^{C}\times E_{it}^{D}$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위 A~D 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특정 연도에 A~D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근로장려금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한 해 동안의 노동공급 선택의 변화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라고 본 연구는 정의함.

□ 회귀식 설정

○ $Eligible_{it}$ 설명변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식을 설정함.

$$y_{it}=\alpha+X_{it}\beta+\gamma Eligible_{it}+\delta_t+\epsilon_{it} \quad (1)$$

○ 종속변수 y_{it}는 개인 i의 t년도 경제활동참여 여부로, 개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양(+)의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 즉, 개인 i가 t년도에 0원보다 큰 신청가능소득[15]이 있었으면 $y_{it}=1$, 신청가능소득이 0이거나 음(-)이었으면 $y_{it}=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로 정의함.

○ X_{it}는 부양자녀수, 배우자 유무, 연령, 주택소유 여부, 주택가격을 포함한 가구 순자산액 등과 더불어 성별, 가구원 수, 교육수준, 장애 여부, 수도권 거주여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다양한 인구학적, 경제적 가구 특성을 통제함.

- 수급 조건 중에서 연령과 순자산은 이차함수로 통제함.

○ δ_t는 연도고정효과, α는 상수항이며 ϵ_{it}는 오차항임.

15) 본 장에서 신청가능소득은 2013년까지는 근로소득,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

□ 결과의 해석 방법 및 식별 가정

○ 식 (1)의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계수 γ는 $Eligible_{it}$ 여부가 종속변수인 신청가능소득유무(임금근로 및 사업활동 등 경제활동에의 참여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 위 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관심 계수인 γ를 근로장려세제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구학적 특성과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Eligible_{it}$변수가 식 (1)의 오차항인 ϵ_{it}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

○ 이러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변수들(E_{it}^{A}, E_{it}^{B}, E_{it}^{C}, E_{it}^{D}와 관련된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을 이용함.

-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을 결정하는 특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부양자녀 혹은 배우자 유무, 연령,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재산 등인데, 식 (1)에서 이들 모든 변수를 통제변수(X_{it})로 통제하고 있음.

○ 즉, 식 (1)에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조건(가정)은 수급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 이들 특성들의 조합인 $Eligible_{it}$이 외생적이라는 것임.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이 여러 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변해 왔기 때문에 위의 가정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 자 료

○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 1~16차 자료를 사용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실시된 패널조사로 전국의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부터 각각 3,500가구씩 총 7천 가구 및 모든 가구원을 표본으로 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은 다음과 같음.

- 한국복지패널은 표본추출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과대표집된 자료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는 분석 표본을 보다 잘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현재 2021년 조사자료(2020년 소득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타 패널자료에 비해 가장 최근 기간까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본 장의 분석에서는 2006~2021년에 조사된(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16년치 자료를 사용함.

3. 기초통계

□ 표본 기초통계

○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 〈표 4-3〉은 표본의 기초통계량으로, 열 (1)~(2)는 전체 분석 기간, 열 (3)~(4)은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기간, 열 (5)~(6)은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함.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Eligible = 0$) 표본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Eligible = 1$) 표본의 기초통계를 비교함.
- 비교 결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자격요건 미충족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비율이 낮고, 가구 소득·자산 수준이 낮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경우가 많음.
- 한편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미충족 표본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미만 1인 가구가 자격요건 충족 가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임.

〈표 4-3〉 기초통계량

구분	전체 기간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자격여부($Eligible$)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성별	0.87	0.78	0.86	0.81	0.91	0.69
(남성=1, 여성=0)	(0.34)	(0.41)	(0.35)	(0.39)	(0.28)	(0.46)
나이	46.34	46.64	46.09	46.63	49.75	46.68
	(10.30)	(10.63)	(10.33)	(10.00)	(9.21)	(12.56)
고등학교 졸업	0.36	0.45	0.36	0.47	0.33	0.40
	(0.48)	(0.50)	(0.48)	(0.50)	(0.47)	(0.49)
고등교육 이상	0.42	0.32	0.40	0.30	0.59	0.39
	(0.49)	(0.47)	(0.49)	(0.46)	(0.49)	(0.49)
유배우자 여부	0.78	0.67	0.77	0.73	0.88	0.46
	(0.42)	(0.47)	(0.42)	(0.44)	(0.33)	(0.50)
가구원수	3.15	2.96	3.14	3.14	3.28	2.32
	(1.25)	(1.32)	(1.26)	(1.27)	(1.14)	(1.32)
1명	0.13	0.18	0.13	0.13	0.07	0.38
	(0.33)	(0.39)	(0.34)	(0.33)	(0.26)	(0.48)
2명	0.18	0.19	0.18	0.18	0.18	0.22
	(0.38)	(0.39)	(0.38)	(0.38)	(0.39)	(0.41)
3명	0.24	0.25	0.24	0.27	0.27	0.19
	(0.43)	(0.43)	(0.43)	(0.44)	(0.45)	(0.39)
4명 이상	0.45	0.38	0.45	0.42	0.47	0.22
	(0.50)	(0.48)	(0.50)	(0.49)	(0.50)	(0.41)
부양자녀수	0.79	0.84	0.79	0.97	0.72	0.40
	(0.96)	(0.99)	(0.96)	(1.01)	(0.95)	(0.78)
0명	0.54	0.50	0.54	0.43	0.58	0.75
	(0.50)	(0.50)	(0.50)	(0.50)	(0.49)	(0.43)
1명	0.18	0.22	0.18	0.25	0.17	0.12
	(0.38)	(0.41)	(0.38)	(0.43)	(0.38)	(0.33)
2명	0.24	0.22	0.24	0.25	0.21	0.10
	(0.43)	(0.41)	(0.43)	(0.43)	(0.41)	(0.30)
3명 이상	0.04	0.06	0.04	0.07	0.04	0.02
	(0.20)	(0.24)	(0.20)	(0.26)	(0.20)	(0.16)

〈표 4-3〉의 계속

구분	전체 기간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자격여부($Eligible$)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근로소득 유무	0.73	0.77	0.72	0.77	0.76	0.78
	(0.45)	(0.42)	(0.45)	(0.42)	(0.43)	(0.42)
사업소득 유무	0.22	0.15	0.22	0.16	0.23	0.12
	(0.41)	(0.35)	(0.41)	(0.36)	(0.42)	(0.32)
신청가능소득 유무	0.78	0.85	0.77	0.84	0.95	0.87
	(0.41)	(0.36)	(0.42)	(0.36)	(0.22)	(0.34)
가구균등화시장소득	3.12	2.28	2.99	2.14	4.87	2.75
(천만 원/연간)	(2.91)	(1.54)	(2.88)	(1.42)	(2.82)	(1.82)
순자산액	3.06	0.39	2.82	0.33	6.23	0.59
(1억 원)	(5.60)	(0.75)	(5.49)	(0.75)	(6.08)	(0.69)
무주택 여부	0.31	0.80	0.33	0.82	0.13	0.73
	(0.46)	(0.40)	(0.47)	(0.38)	(0.34)	(0.44)
기초생활수급 여부	0.04	0.10	0.05	0.09	0.00	0.13
	(0.21)	(0.30)	(0.21)	(0.29)	(0.07)	(0.34)
수도권거주 여부	0.50	0.49	0.50	0.50	0.53	0.45
	(0.50)	(0.50)	(0.50)	(0.50)	(0.50)	(0.50)
관측치	44,625	9,914	41,837	7,715	2,788	2,199

주 :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표기는 평균(표준편차)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자료).

□ $Eligible$ 변수 기초통계량

○ [그림 4-1]은 복지패널 표본에서 정의한 $Eligible$ 변수의 통계를 연도별로 그린 것임.

- 가로축은 소득 귀속연도이고 세로축은 각 연도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가구 비중(이항변수인 $Eligible$ 변수의 평균값)을 나타냄.
-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전에는 $Eligible$이 0이었다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래로 제도의 개정 및 확대에 따라 수급자격 가구 비중에 점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첫 시행 당시에는 전체 분석 표본 중 5~10%에 해당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했고, 이후 점차 자격요건이 변경 및 완화됨에 따라 2020년에는 표본의 약 37.8%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또한 자격요건이 확대되지 않는 시기에는 수급자격을 가진 가구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다른 요건의 상황이 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1] 연도별 수급자격가구($Eligible$)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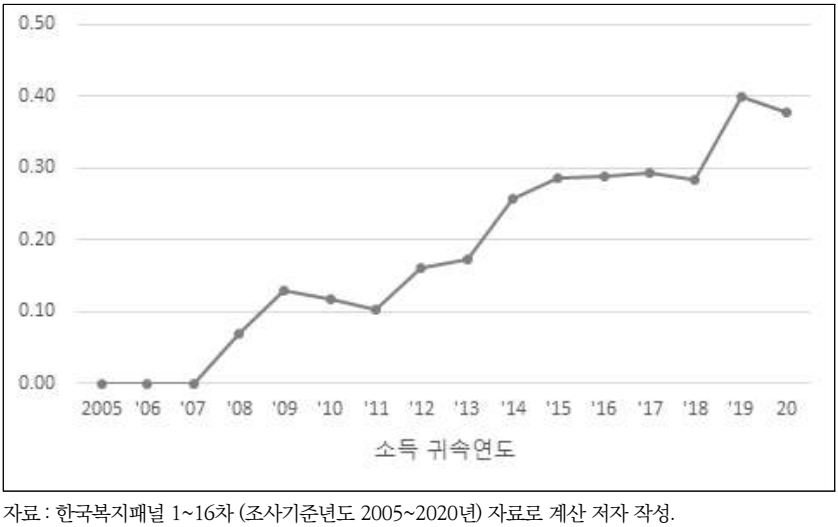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

○ [그림 4-2]는 복지패널 표본에서 파악한 A) 대상요건(제외 대상), B)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C) 주택요건, D) 재산요건 등의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을 연도별로 그린 것임.

- 가로축은 소득 귀속연도이고 세로축은 각 연도에 개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비중(이항변수인 E^A, E^B, E^C, E^D의 평균값)을 나타냄.

- 대상요건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법령이 2014년에 공포됨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가구가 대상요건을 충족 $E^A = 1$값을 가짐.
-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실질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019년부터 모든 가구가 $E^B = 1$의 값을 가짐.
- 주택요건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폐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가구가 $E^C = 1$의 값을 가짐.
- 재산요건이 꾸준히 완화되었음에도 재산요건을 충족한 가구 비중은 4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2019년부터 사실상 재산요건만 남음.

[그림 4-2] 연도별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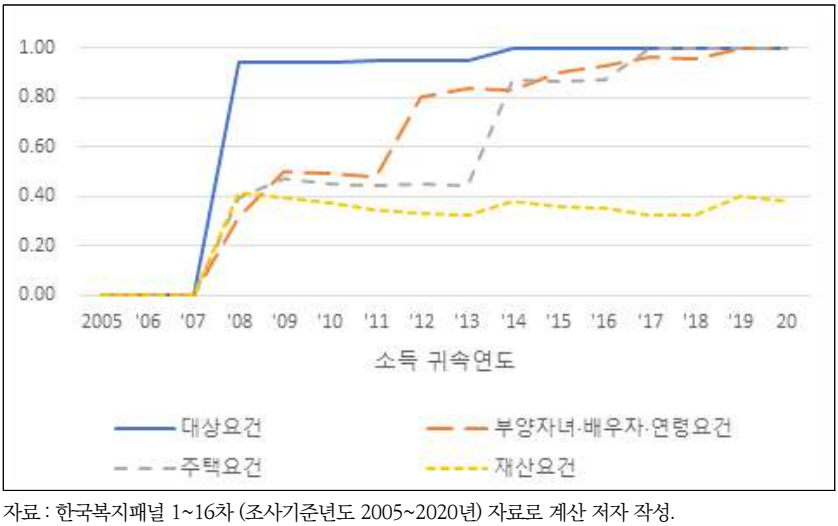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 *Eligible* 변수의 정합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복지패널 분석 표본 중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수급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과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을 확인해 봄.

- [그림 4-3]의 실선은 복지패널 분석 표본 중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수

급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임.

- [그림 4-3]의 점선은 전국 주민등록세대수(12월 기준) 대비 국세청 통계에 따른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의 비중임.
- 복지패널 분석 표본 중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가구는 제도 시행 초기 전체 표본의 약 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9.4%에 해당함.
-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국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약 3.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21%에 해당함.

[그림 4-3] 연도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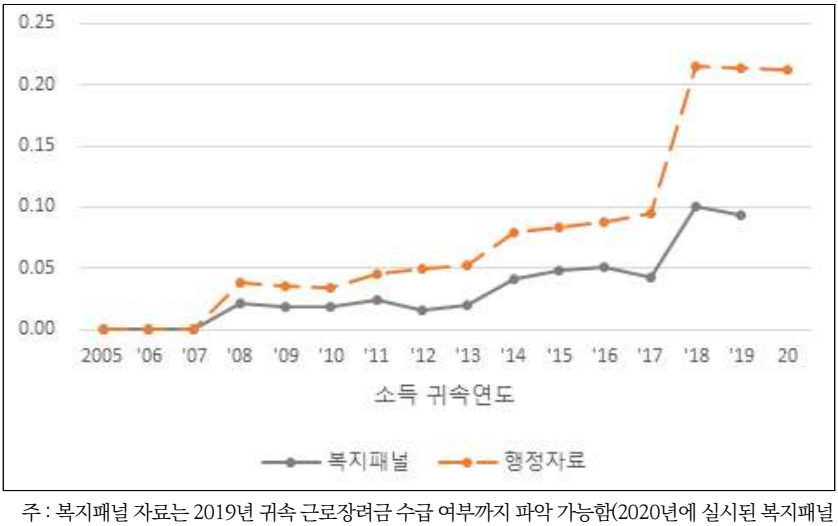

주 : 복지패널 자료는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까지 파악 가능함(2020년에 실시된 복지패널 조사에서 그해에 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5~16차 (조사기준년도 2009~2020년)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수 및 주민등록세대수(12월 기준)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 [그림 4-1] 및 [그림 4-3] 두 그래프의 추이는 매우 유사함.

- 다만 [그림 4-1]의 수급자격가구($Eligible$) 비중이 [그림 4-3]의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비중에 비해 수치가 높게 나타남.
- 그 이유는 $Eligible$ 변수 정의 시 총소득요건을 제외했기 때문임.

□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 복지패널은 4차(조사연도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단 2016~2018년 및 2020년에는 조사되지 않음.
- 조사되지 않은 해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직전 연도에 응답한 값과 같다는 가정하에, 연도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분포를 [그림 4-4]와 같이 파악하였음.

○ 분석 표본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2021년 현재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90%이며,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25%를 차지함.

[그림 4-4] 연도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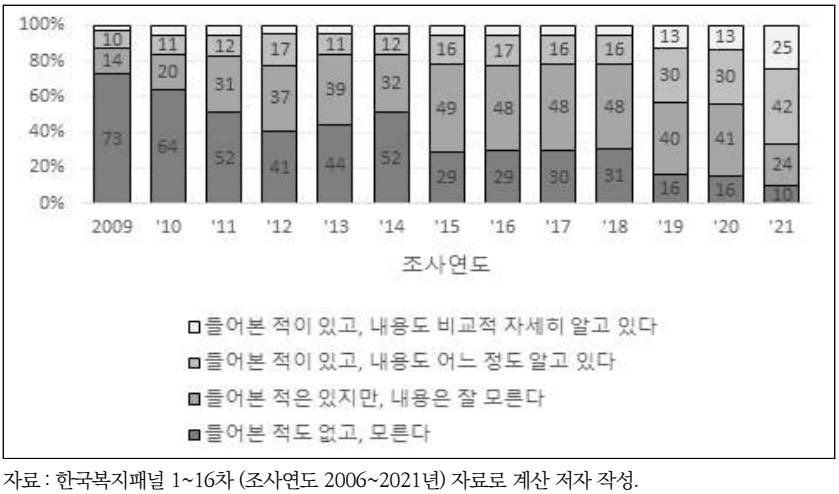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연도 2006~2021년)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제4절 분석결과

□ *Eligible* 변수 사전 검정

○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노동공급에 관련된 자격요건

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기반으로 정의한 $Eligible$ 변수가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여부와 상관관계가 높도록 잘 정의된 변수인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봄.

○ $Eligible_{it}$ 설명변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식을 설정함.

$$Received_{it} = \alpha + X_{it}\beta + \gamma Eligible_{it} + \delta_t + \epsilon_{it} \quad (2)$$

○ 종속변수 $Received_{it}$는 개인 또는 가구 i가 t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수급했는지 여부임.

- 시계열 패널 조사인 복지패널은 t+1년도 조사에서 개인 또는 가구 i가 t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는지를 조사하므로, 그 정보를 1년 앞당기는 시차(lead)를 취해 $Received_{it}$ 변수를 정의함.
- 식 (2)의 그 외 변수의 정의는 식 (1)에서와 동일함.

○ 식 (2)의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계수 γ는 (노동공급에 관련된 자격요건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기반으로 정의한 $Eligible$ 변수가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여부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냄.

○ 〈표 4-4〉는 $Eligible$ 변수 검정 결과로, 열 (1)은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최근의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고용효과를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열 (2)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기간, 열 (3)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각 제시함.

-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과 연도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모든 기간에서 $Eligible$ 변수가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에서 가용한 변수들을 최대한 정확히 이용해 구축한 $Eligible$ 변수가 실제 자격 여부를 잘 반영하는 식으로 구축되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 자격 여부가 실제 수급에 미치는 한계효과 추정치는 0.094~0.139임.

- 이론적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키는 $Eligible$ 변수가 실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오차 없이 반영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았다면, 위의 추정치는 1이 되어야만 함.
- 따라서 추정치가 1을 훨씬 밑돈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구축하는데 사용한 응답값에 측정오차가 존재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노동시장 참가를 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4-4〉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와 자격 여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 :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	전체 기간 (1)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2)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3)
성별(남성)	-.002 (.006)	-.002 (.006)	-.006 (.026)
나이	-.001 (.002)	-.001 (.002)	.000 (.009)
나이2	.000 (.000)	.000 (.000)	.000 (.000)
고등학교 졸업	.008 (.006)	.007 (.006)	.003 (.028)
고등교육 이상	-.005 (.007)	-.005 (.007)	-.025 (.030)
유배우자 여부	-.018*** (.007)	-.014** (.006)	-.062** (.029)
가구원수(base=1명)			
2명	.030*** (.007)	.027*** (.006)	.077** (.031)
3명	.036*** (.007)	.031*** (.007)	.111*** (.036)
4명 이상	.040*** (.008)	.035*** (.008)	.113*** (.037)
부양자녀수(base=0명)			
1명	.012** (.005)	.014*** (.005)	-.007 (.021)
2명	.007 (.006)	.007 (.006)	.024 (.026)
3명 이상	-.003 (.009)	-.001 (.009)	-.017 (.037)
순자산액(1억 원)	-.004*** (.001)	-.003*** (.001)	-.006*** (.002)
순자산액(1억 원)2	.000*** (.000)	.000*** (.000)	.000*** (.000)
무주택 여부	.013*** (.004)	.011*** (.004)	.054** (.021)
기초생활수급 여부	-.007 (.009)	-.007 (.008)	-.026 (.046)
수도권거주 여부	-.008** (.004)	-.007** (.003)	-.015 (.014)

〈표 4-4〉의 계속

종속변수 :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 여부	전체 기간 (1)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2)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3)
연도 더미(base=2008년)			
2009년	-.007*** (.003)	-.007*** (.003)	- -
2010년	-.004 (.003)	-.004 (.003)	- -
2011년	.003 (.003)	.003 (.003)	- -
2012년	-.012*** (.003)	-.012*** (.003)	- -
2013년	-.006* (.004)	-.006 (.004)	- -
2014년	.007 (.004)	.008* (.004)	- -
2015년	.014*** (.005)	.016*** (.005)	- -
2016년	.016*** (.005)	.017*** (.005)	- -
2017년	.007 (.005)	.008* (.004)	- -
2018년	.057*** (.007)	.058*** (.007)	- -
2019년	.051*** (.007)	- -	.098 (.069)
Eligible	.101*** (.006)	.096*** (.007)	.139*** (.022)
상수항	.020 (.039)	.014 (.039)	-.138 (.143)
관측치	35,123	32,804	2,319
R-squared	0.088	0.081	0.117

주 :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10; ** p〈0.05; *** p〈0.01.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6차(조사기준년도 2008~2020년 자료).

□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 회귀분석 결과

○ 〈표 4-5〉는 식 (1)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열 (1)은 전체 기간, 열 (2)는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기간, 열 (3)은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한 분석 결과임.

- 식 (1)로 추정되는 $Eligible$의 계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구학적 특성과 연도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Eligible$ 여부가 종속변수인 신청가능소득 유무(임금근로 및 사업활동 등 경제활동에의 참여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냄.
- 신청가능소득은 근로장려세제 범위에 해당되는 소득, 즉 귀속연도 2013년까지는 근로소득,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으로 정의함.

〈표 4-5〉 임금근로 및 자영업 고용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 신청가능소득 유무	전체 기간 (1)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2)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3)
성별(남성)	.022 (.014)	.015 (.014)	.071*** (.025)
나이	.007** (.003)	.008** (.003)	.010 (.006)
나이2	-.000*** (.000)	-.000*** (.000)	-.000** (.000)
고등학교 졸업	.001 (.013)	.000 (.013)	-.012 (.022)
고등교육 이상	.022 (.015)	.028* (.016)	-.022 (.024)
유배우자 여부	-.017 (.013)	-.020 (.014)	.026 (.025)
가구원수(base=1명)			
2명	.051*** (.014)	.047*** (.014)	.033 (.027)
3명	.063*** (.016)	.058*** (.017)	.045 (.028)
4명 이상	.065*** (.019)	.064*** (.019)	.035 (.030)
부양자녀수(base=0명)			
1명	-.021* (.011)	-.026** (.012)	-.009 (.016)
2명	-.015 (.013)	-.020 (.014)	-.011 (.018)
3명 이상	-.037* (.021)	-.045** (.022)	-.005 (.020)
순자산액(1억 원)	-.005*** (.001)	-.005*** (.001)	-.002 (.002)
순자산액(1억 원)2	.000*** (.000)	.000*** (.000)	.000** (.000)
무주택 여부	.013 (.009)	.011 (.009)	-.023 (.015)
기초생활수급 여부	-.292*** (.022)	-.282*** (.022)	-.395*** (.041)
수도권거주 여부	.012 (.008)	.012 (.009)	.018 (.011)
$Eligible$	-.022*** (.008)	-.011 (.009)	.006 (.015)
상수항	.704*** (.062)	.716*** (.065)	.766*** (.130)
연도 더미	○	○	○
관측치	54,539	49,552	4,987
R-squared	0.161	0.156	0.196

주 :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연도 더미 추정치는 생략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10; ** p<0.05; *** p<0.01.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자료).

○ 실증분석 결과, 열 (1) 전체 기간 분석에서 $Eligible$ 여부가 신청가능소득 유무에 미친 영향은 -0.022로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즉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사람들의 임금근로 및 사업활동 등 경제활동 참여를 2.2%p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분석 기간을 2018년 이전으로 한정해보면 $Eligible$의 계수는 -0.011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분석 기간을 2019년 이후로 한정해보면 $Eligible$의 계수는 0.006으로 추정되었고, 이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표 4-5〉에서 신청가능소득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고,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임금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벌어들였는지 분석해본 결과, 최근 근로장려세제 개편을 통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 임금근로와는 차이가 있고,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사업소득이 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근로유인은 서로 상이할 것임.

- 따라서 임금근로참여에 더 초점을 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 유무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함.

○ 〈표 4-6〉은 종속변수를 근로소득 유무로 두고 식 (1)을 동일한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임.

- 실증분석 결과, 열 (1) 전체 기간 분석에서 $Eligible$ 여부가 근로소득 유무에 미친 영향은 0.018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사람들의 임금근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함.
- 그런데 분석 기간을 2018년 이전으로 한정해보면 $Eligible$ 여부가 근로소득 유무에 미친 영향이 0.020으로 추정되었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격요건 충족 시 사람들의 임금근로 참여가 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이후에는 임금근로 참여 효과가 9.3%p로 더 컸음.

○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근로유인이 서로 다르며 자영업의 경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사업수입을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함.

- 위의 〈표 4-5〉에서와 같이 자영업을 포함해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파악한다면 아래 〈표 4-6〉의 임금근로 고용효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이 낮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표 4-6〉 임금근로 고용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 근로소득 유무	전체 기간 (1)	소득 귀속연도 2018년 이전 (2)	소득 귀속연도 2019년 이후 (3)
성별(남성)	.001 (.016)	-.001 (.016)	.026 (.030)
나이	.005 (.004)	.007* (.004)	-.005 (.008)
나이2	-.000*** (.000)	-.000*** (.000)	-.000 (.000)
고등학교 졸업	-.014 (.016)	-.011 (.016)	-.054* (.033)
고등교육 이상	.059*** (.019)	.059*** (.019)	.062* (.036)
유배우자 여부	-.022 (.016)	-.024 (.016)	.016 (.032)
가구원수(base=1명)			
2명	.039** (.016)	.035** (.016)	.050 (.034)
3명	.056*** (.018)	.048** (.019)	.078** (.037)
4명 이상	.053** (.021)	.046** (.022)	.079* (.042)
부양자녀수(base=0명)			
1명	-.016 (.013)	-.019 (.014)	.003 (.029)
2명	-.016 (.016)	-.017 (.017)	-.030 (.034)
3명 이상	-.042 (.027)	-.045 (.028)	-.028 (.047)
순자산액(1억 원)	-.009*** (.002)	-.010*** (.002)	-.005 (.003)
순자산액(1억 원)2	.000*** (.000)	.000*** (.000)	-.000 (.000)
무주택 여부	.001 (.011)	.002 (.011)	-.048** (.024)
기초생활수급 여부	-.262*** (.022)	-.255*** (.023)	-.340*** (.043)
수도권거주 여부	.030*** (.011)	.026** (.011)	.061*** (.018)
Eligible	.018 (.011)	.020* (.012)	.093*** (.026)
상수항	.800*** (.072)	.783*** (.075)	.939*** (.170)
연도 더미	○	○	○
관측치	54,539	49,552	4,987
R-squared	0.113	0.156	0.196

주 :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연도 더미 추정치는 생략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10; ** p<0.05; *** p<0.01.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조사기준년도 2005~2020년 자료).

□ 2019년 이후 임금근로 고용효과 - 이질적 효과

○ 2019년 이후 임금근로 고용효과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함.
  - 도입 초기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는데,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차상위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의 영향 아래 들어왔을 것으로 보임.
  - 행정상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해줄 만한 부양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함.
  -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차상위계층을 가구의 균등화시장소득이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연간 균등화소득 중위값의 50% 이내인 경우로 정의함.

○ 〈표 4-7〉은 2019년 이후 기간에 대해 종속변수를 근로소득 유무로 두고 식 (1)을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표본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한정함.
  - 열 (1)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열 (2)는 중위소득 100% 이하, 열 (3)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표본을 한정한 분석 결과임.
  - 실증분석 결과, 열 (1) 차상위계층 표본 내에서 $Eligible$ 여부가 근로소득 유무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열 (2) 중위소득 100% 이하 표본에서는 $Eligible$ 여부가 근로소득 유무에 미친 영향이 0.077로 추정되었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자격요건 충족 시 중위소득 100% 이하 사람들의 임금근로 참여가 7.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2019년 이후 임금근로 고용효과는 차상위계층보다는 차상위계층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4-7〉 2019년 이후 임금근로 고용효과 – 이질적 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 근로소득 유무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1)	중위소득 100% 이하 (2)	중위소득 150% 이하 (3)
성별(남성)	-.032 (.056)	.050 (.044)	.030 (.033)
나이	-.025 (.019)	-.020* (.012)	-.011 (.009)
나이2	.000 (.000)	.000 (.000)	.000 (.000)
고등학교 졸업	-.075 (.062)	.007 (.041)	-.041 (.034)
고등교육 이상	-.025 (.086)	.024 (.049)	.006 (.039)
유배우자 여부	.060 (.076)	-.060 (.048)	-.006 (.036)
가구원수(base=1명)			
2명	.079 (.071)	.107** (.048)	.066* (.039)
3명	.115 (.111)	.151*** (.055)	.088** (.043)
4명 이상	-.024 (.143)	.087 (.068)	.060 (.050)
부양자녀수(base=0명)			
1명	.016 (.110)	-.000 (.052)	.030 (.036)
2명	.050 (.141)	.098 (.063)	.026 (.043)
3명 이상	-.151 (.179)	.138* (.078)	.046 (.054)
순자산액(1억 원)	-.051** (.024)	-.034*** (.010)	-.027*** (.006)
순자산액(1억 원)2	.001 (.001)	.000* (.000)	.000* (.000)
무주택 여부	-.125* (.076)	-.069* (.038)	-.067** (.028)
기초생활수급 여부	-.249*** (.064)	-.327*** (.046)	-.347*** (.044)
수도권거주 여부	.039 (.054)	.064** (.030)	.062*** (.021)
Eligible	.068 (.114)	.077* (.042)	.046 (.030)
상수항	1.387*** (.463)	1.236*** (.257)	1.184*** (.185)
연도 더미	○	○	○
관측치	694	2056	3512
R-squared	0.126	0.158	0.149

주 : 표본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가구주임.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균등화시장소득이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연간 균등화시장 소득 중위값의 50% 이내인 가구로 정의함. 연도 더미 추정치는 생략함.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 $p<0.10$; ** $p<0.05$; *** $p<0.01$.

자료 : 한국복지패널 15~16차 (조사기준년도 2019~2020년 자료).

제5절 소 결

○ 본 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의 고용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사람들이 각 소득 귀속연도를 인지할 수 있어 근로유인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한 연도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분석함.

○ 근로장려세제 범위에 해당되는 소득, 즉 귀속연도 2013년까지는 근로소득,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을 '신청가능소득'이라 정의했을 때, 실증분석 결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신청가능소득 유무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 참여에만 초점을 두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근로소득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는 사람들의 임금근로 참여를 2.0~9.3%p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였음.

-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근로유인이 서로 다르며 자영업의 경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사업수입을 얻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함.
- 자영업을 포함해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파악한다면 임금근로 고용효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이 낮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2019년 이후에는 임금근로 참여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효과는 차상위계층이나 중산층 이하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도입 초기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는데,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차상위계층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의 영향 아래 들어온 것으로 보임.

□ 2022년 세법개정안의 영향 추정

○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요건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임(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7.22).

○ 이에 따른 영향을 예상해보기 위하여, 2020년의 가구 특성(재산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표 4-2〉에 따른 2021년 및 2022년(개정안)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구 비중을 추정해 봄.

○ [그림 4-1]의 연도별 수급자격가구 비중에 2021년 및 2022년 추정치를 이어서 그려보면 [그림 4-5]와 같으며,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은 2022년 약 4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5] 연도별 수급자격가구($Eligible$) 비중(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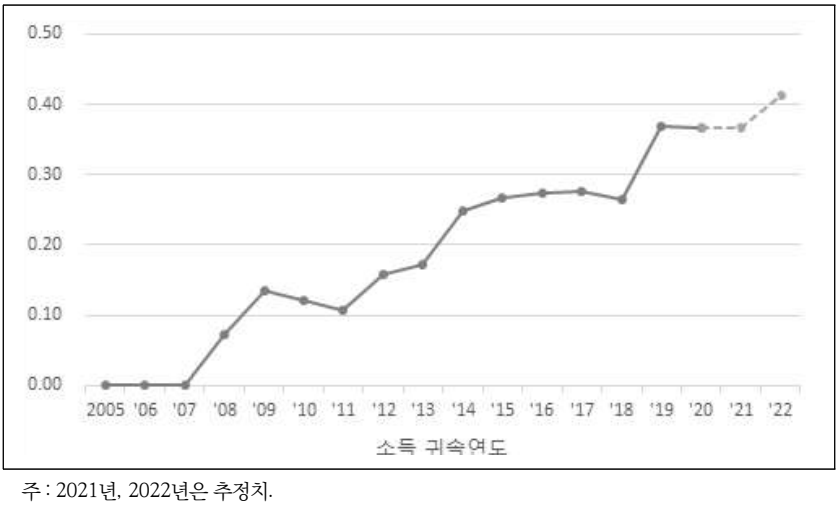

주 : 2021년, 2022년은 추정치.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소득 귀속연도 2005~2020년)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 [그림 4-2]의 연도별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에 2021년 및 2022년 추정치를 이어서 그려보면 [그림 4-6]과 같음.

- 재산요건이 꾸준히 완화되었음에도 복지패널 표본 내에서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비중은 40%대 정도를 유지해 왔으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격요건 충족 가구가 40%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이는 2020년의 가구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분석 표본의 이탈도 없는 시나리오이므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음.

[그림 4-6] 연도별 개별 자격요건 충족 가구 비중(추정)

주 : 2021년, 2022년은 추정치.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6차 (소득 귀속연도 2005~2020년) 자료로 계산 저자 작성.

제5장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통한 정책효과 추정

제1절 서 론

○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에 대한 정책효과를 2019년(2018년 귀속소득)에 있었던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정함.

□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편

○ 2018년 7월에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이 발표됨.
- 이는 2018년 귀속소득에 대해 2019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되는 안이었음.

○ 개편의 내용은 기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유지하되, (1) 소득요건·재산요건의 완화, (2) 단독가구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 그리고 (3) 최대지급액 증액을 골자로 함([그림 5-1] 참고).
- 소득요건은, 총급여액등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됨.

- 재산요건은 기존 1.4억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나, 1.4억~2억 사이의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 단독가구는 개정 전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연령제한이 폐지됨.
-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가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됨.
-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지급액 증가는 (1) 점증구간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고 (2) 평탄구간의 높이와 너비를 증가시키며, (3) 점감구간을 늘임.

[그림 5-1] 총급여액·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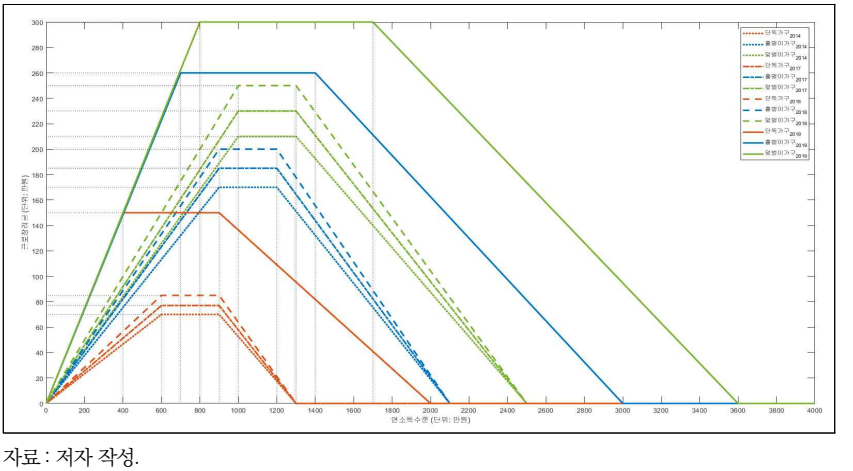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 연구 목표

○ 이 장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함.
- 복지패널은 (1) 근로장려금 수급여부와 수급액 변수, (2) 노동공급에 대한 변수들, (3)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변수, (4)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에 필요한 부양자녀 유무 및 가구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 분석에 적합함.
- 분석집단을 세분화하여, 연령과 가구형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추정함.

○ 추정량(estimand)을 개정된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의한 종속변수의 변화 기댓값으로 설정

- 수급조건을 만족한 사람의 노동공급 반응을 개정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로 정의함.
- 종속변수로, (1) 근로소득 유무(노동참여 유인), (2)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노동시간 효과) 그리고 (3) 근로소득이 점증구간에 속하는지 여부(변화된 점증구간의 노동참여 유인)를 사용함.

○ 추정을 위해 Arkhangelsky et al(2021)의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

- 인과관계 추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과 합성통제집단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일반화시킨 방법론
- 다양한 통제집단에 가중치를 매겨서 처치집단의 처치 전 추세를 잘 모방하는 합성 통제집단을 사용하는 합성통제집단법의 장점과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차분을 허용하여 더 유연한 합성 통제집단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이중차분법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론
-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구의 가구원(자산 2억 이상) 데이터를 통해 통제집단을 합성함.

제2절 분석방법

1. 정책효과의 정의

가. 정책효과의 개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준, 2018년 7월에 2019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

려세제 개편방안이 발표됨.

○ 이를 인지한 개인들 중 수급대상(재산 2억 미만)은 개편안을 감안하여 2019년 노동참여 및 노동공급 결정을 함(2020년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을 고려함).

○ 처치집단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2019년 노동공급 결정에 관한 변수들을 처치집단의 종속변수로 설정함.

- 종속변수로는 (1) 근로소득 유무, (2) 주당 평균 근로시간, (3) 점증구간 내 근로소득 유무를 고려

○ 비교집단은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비수급대상자로 정의함.

- 처치집단과 근로장려세제 개편전 종속변수의 추세가 비슷한 비교집단을 합성하여 개편후의 차분을 정책효과로 정의

나. 분석 틀

○ N명 개인들의 T기 동안의 균형패널을 상정함.

○ i는 개인에 대한 식별자, t는 시기에 대한 식별자임.

- $i \in \{1,2,\cdots,N\}$, $t \in \{2015,2016,\cdots,2019\}$
- 2020년 데이터도 가용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영향을 받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제외함.

○ p는 2017년과 2018년(귀속소득 기준)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 대한 식별자임.

- $p \in \{v17, v18\}$

다. 분석 틀을 활용한 정책효과(처치효과)의 정의

○ $Y_{i,t}$는 i의 t기 시점에서의 종속변수로 정의함.

○ $W_{i,t}$는 i가 t기 시점에서의 처치여부를 뜻함.

- $E^{v18_{i,t}}$을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

머지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재산요건 2억미만)를 뜻한다고 정의함.

- $E^{w18_{i,t}}$을 처치여부로 설정함.
- 따라서 $W_{i,t} \equiv E_{i,t}^{w18} \in \{0,1\}$로 나타냄.

○ $Y_{i,t}(w)$를 i가 t시점에 $W_{i,t} = w$일 경우의 잠재결과라고 정의함.

- 실제 데이터에서는 $Y_{i,t}(0)$과 $Y_{i,t}(1)$ 중 하나만 관측됨.

○ 잠재결과를 통해 추정량(estimand)인 처치효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tau \equiv E[\, Y_{i,t}(1) - Y_{i,t}(0) \mid W_{i,t} = 1, t = 2019]$
- 즉 τ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에 따라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책효과의 기댓값임(ATT,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 데이터에서 관측되지 않는 $E[\, Y_{i,t}(0) \mid W_{i,t} = 1, t = 2019]$를 추정하기 위해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처치효과를 추정함.

2.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가. 분석방법 개요

○ 편의상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SDID로, 이중차분법을 DID로, 합성통제집단법을 SC로 지칭함.

○ SDID는 DID와 SC의 장점을 동시에 갖는 방법론으로서, SDID의 특수한 경우로 DID와 SC를 표현할 수 있음.

□ DID, SC와의 차이점

○ SDID는 DID와 달리 비교집단을 합성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처치전 종속변수 추세가 더 비슷해짐.

○ SDID는 SC와 달리 처치전 비교집단과의 차분을 용인하므로 더 유연하

게 비교집단을 구성할 수 있음.

○ SDID는 DID, SC와 달리 처치전 시기에도 가중치를 두어서 합성된 비교집단별로 처치전과 처치후의 종속변수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함.

□ 예시 : 캘리포니아 법안 99호

○ 캘리포니아주는 1988년 담배 한갑당 2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99호(California proposition 99)를 시행함.

○ 법안 99호가 담배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SDID, DID, SC로 분석한 예시를 통해 비교할 수 있음.

- 종속변수($Y_{i,t}$)는 주(state)별 일인당 평균 담배소비량
- 처치시점($\beta_t = 1$)은 1988년 이후, 처치집단($\alpha_i = 1$)은 캘리포니아주이며 비교집단($\alpha_i = 0$)은 나머지 주들임.
- 처치변수($W_{i,t}$)는 1988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만 1의 값을 가짐.

[그림 5-2] SDID, DID, SC로 추정한 캘리포니아 법안 99호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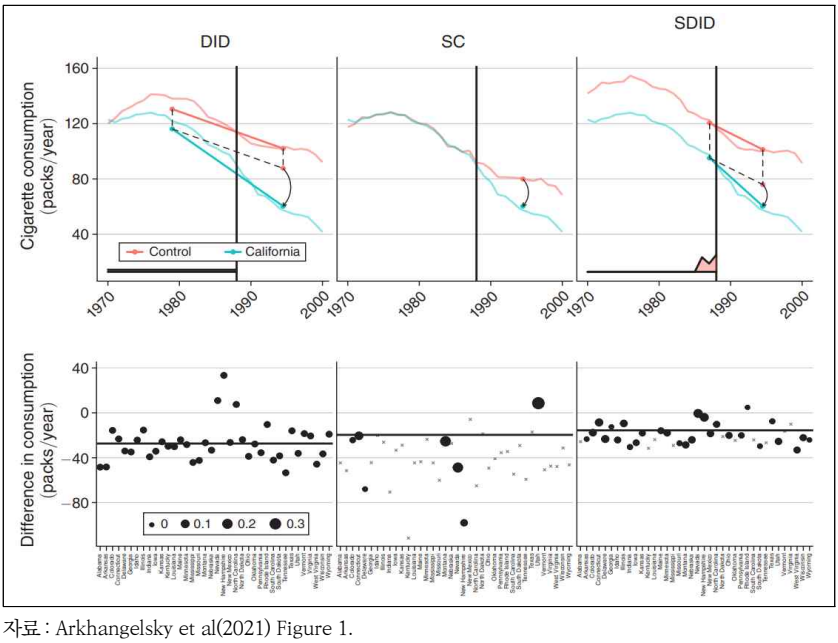

자료 : Arkhangelsky et al(2021) Figure 1.

○ [그림 5-3]의 위 패널을 통해서

- SDID의 비교집단이 DID에 비해 처치집단의 처치전 추세를 잘 모방함을 알 수 있음.
- SDID의 비교집단은 SC에 비해 처치집단과의 차분을 허용함을 볼 수 있음.

○ [그림 5-3]의 아래 패널을 통해서는

- DID에서는 모든 비교집단들이 같은 가중치를 갖고(점의 개수와 크기), 처치전 평균과 처치후 평균의 편차도 어느 정도 있음을 볼 수 있음(점들이 평균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 SC에서는 몇몇 비교집단만 가중치를 부여받아 합성 비교집단을 이루고, 처치전 평균과 처치후 평균의 편차도 어느 정도 있음을 보임.
- SDID는 비교적 다양한 비교집단을 통해 합성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처치전 평균과 처치후 평균의 편차도 크지 않음.

나.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추정

○ SDID

$$(\hat{\tau}^{sdid}, \hat{\mu}, \hat{\alpha}, \hat{\beta}) = \underset{\tau,\mu,\alpha,\beta}{\arg\min} \left\{ \sum_{i=1}^{N} \sum_{t=1}^{T} \left(Y_{i,t} - \mu - \alpha_i - \beta_t - W_{i,t}\tau \right)^2 \hat{\omega}_i^{sdid} \hat{\lambda}_t^{sdid} \right\}$$

- 유닛별 가중치($\hat{\omega}_i^{sdid}$)는 처치전 종속변수 차이의 추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즉 종속변수 수준 차이의 추세 변동이 최소화하도록 구성함.[16]
- 시기별 가중치($\hat{\lambda}_t^{sdid}$)는 합성된 비교집단 내 처치전 종속변수 평균과 처치후 종속변수 평균이 균일하도록 편차를 최소화함.[17]
- 처치효과 추정량인 $\hat{\tau}^{sdid}$의 표준오차는 Placebo variance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함.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처치집단으로 대체하여 처치효과를 추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여 추정된 처치효과들을 이용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임.[18]

16) 자세한 수식은 Arkhangelsky et al(2021)의 p.4091을 참고.
17) 자세한 수식은 Arkhangelsky et al(2021)의 p.4092을 참고.

3. 근로장려세제 개편 효과 추정을 위한 적용

가.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의 적용

○ 분석 시기(t)는 현행 가구형태별로 근로장려금 산정이 정착된 2015년부터 2019년으로 설정

○ 처치집단은 소득요건을 제외한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복지패널 가구원임.

○ 소득요건을 제외한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복지패널 가구원을 비교집단으로 삼되, 합성통제집단 구성의 편의를 위해 그룹(j)을 구성하고, 이를 분석의 단위로 삼음.

- 비교집단의 가구원을 가구유형(단독가구, 비단독가구)과 자산규모(2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연령그룹(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분류함.
- 총 20개의 비교집단을 가지고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함.
- $j \in \{111,112,113,114,115,121,122,\cdots,225\}$

나.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이 갖는 이점

○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정책효과를 추정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 중 하나는 비교집단 구성임.

- 처치집단, 즉 근로장려금의 정책 대상이 자산 2억 미만 가구로 정의될 때, 처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비교집단을 2억 이상 가구에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

○ 통제집단 합성차분법에서는 2억 이상 가구들을 여러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을 합성하여서 최대한 처치집단과 가까운 대안적 비교집단을 구성할 수 있음.

---

18) 자세한 설명과 알고리즘은 Arkhangelsky et al(2021)의 p.4110을 참고.

- 결과변수의 처치전 추세 평행을 이루도록 합성 가중치가 결정됨.

제3절 분석결과

1. 전체 처치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

○ 〈표 5-1〉은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재산 2억 미만인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자의 2019년 노동공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 결과를 보여줌.

○ 노동참여 및 노동시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되었음.
-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인한 노동참여의 증가효과와 노동시간의 감소효과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
- 근로소득 유무와 점증구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 표준오차가 너무 크게 추정되어 추정량의 정확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이는 복지패널의 표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임.
- 추정 정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장려금의 확대가 노동참여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임.

○ 첫 번째 결과변수는 임금 근로소득 유무로, 이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노동참여에 미친 효과를 볼 수 있음.
- 서론의 고용연계성 부분에서 이론상 양의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논하였음.
- 음의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효과의 크기도 0.69%p로 크지 않음.

○ 두 번째 결과변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근로장려금을 통해 노동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정함.

- 이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소득효과로 인해 근로시간이 소폭 줄어드는 반응이 예상됨.
- 주당 0.9시간 감소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마지막 결과변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점증구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근로유인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증구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함임.

- 점증구간의 근로소득을 받는 비율이 0.8%p 줄어드는 효과가 추정되었음.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효과의 크기가 크지 않음.

〈표 5-1〉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종속변수	근로소득 유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여부	
추정량($\hat{\tau}$)	-0.0069		-0.9317		-0.0085	
표준오차	0.1349		2.2735		0.0593	
합성비교집단 가중치 상위 10	j	$\hat{\omega}_i$	j	$\hat{\omega}_i$	j	$\hat{\omega}_i$
	124	0.1317	214	0.0891	125	0.1072
	213	0.0901	213	0.0796	124	0.0857
	121	0.0850	212	0.0753	112	0.0772
	223	0.0778	124	0.0716	121	0.0683
	215	0.0728	121	0.0672	221	0.0660
	212	0.0727	223	0.0623	222	0.0618
	224	0.0664	122	0.0568	213	0.0614
	225	0.0647	224	0.0567	211	0.0612
	214	0.0594	215	0.0534	122	0.0601
	221	0.0488	125	0.0525	224	0.0578
시점 가중치 (내림차순)	t	$\hat{\lambda}_t$	t	$\hat{\lambda}_t$	t	$\hat{\lambda}_t$
	2018	0.8532	2018	0.6585	2018	0.9680
	2015	0.1468	2015	0.3415	2017	0.0320
	2017	0.0000	2017	0.0000	2016	0.0000
	2016	0.0000	2016	0.0000	2015	0.0000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는 각 결과변수에 대해 합성된 비교집단이 처치집단과 결과변수에서 처치전 추세의 평행을 이루는지 보여줌.

[그림 5-3] 근로소득 유무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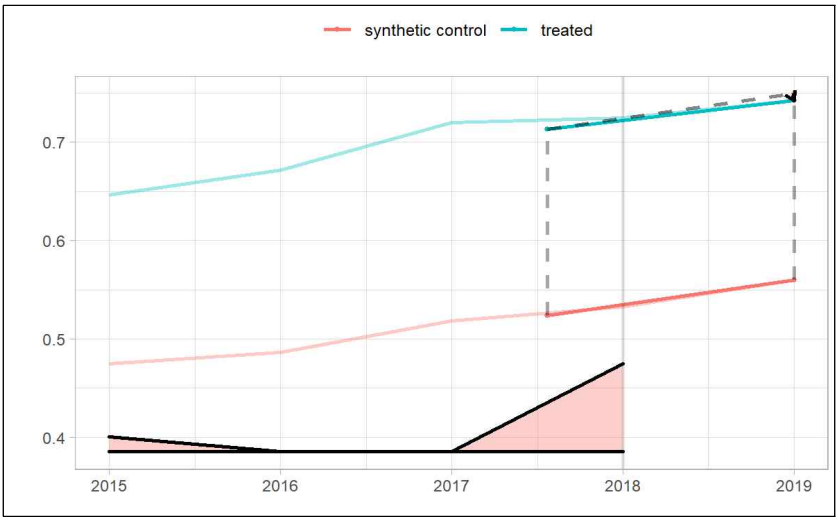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4] 임금근로자 주당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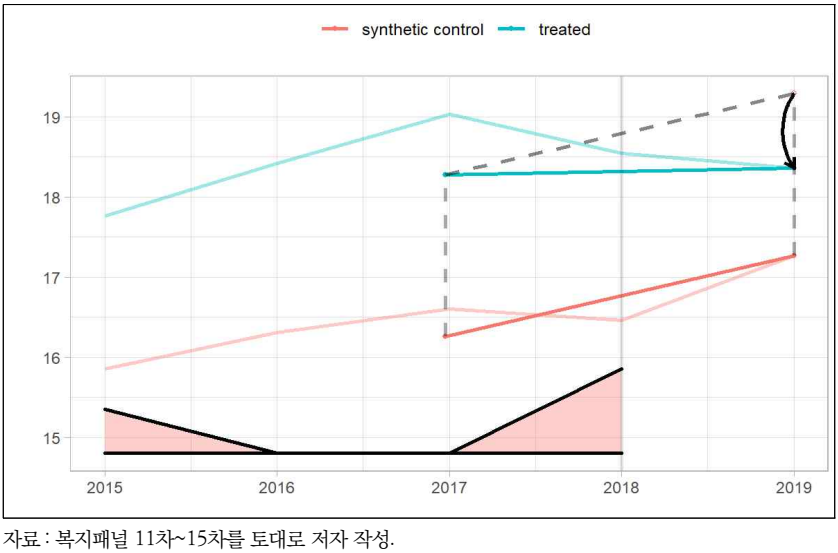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5-5]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유무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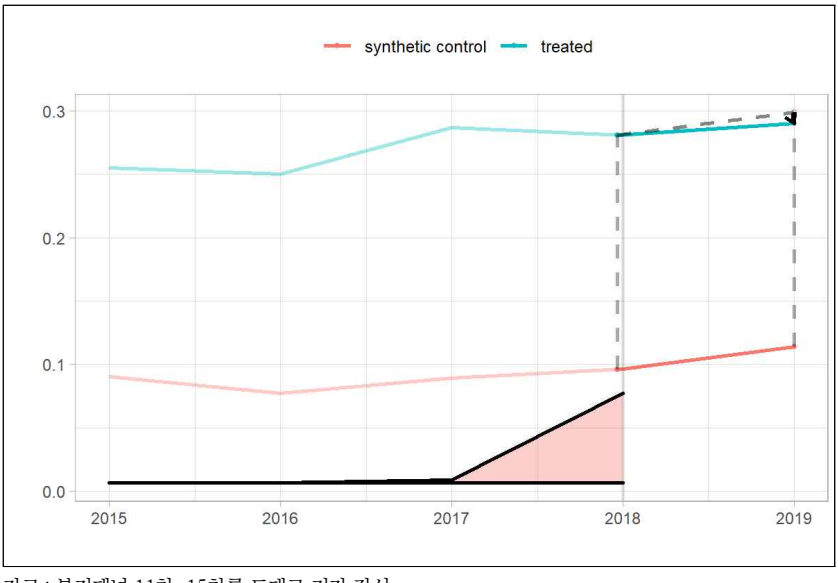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세부 처치집단에 대한 추정 결과

○ 〈표 5-2〉는 연령별 단독가구에 대한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줌.

○ 근로소득 유무에서 연령에 따라 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처치집단도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특히 20대 단독가구는 2018년 개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아닌 근로장려금 도입에 대한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음.

○ 평균 근로시간과 점증구간 포함 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음.

○ 단독가구로 나누어 분석해봐도 근로장려금 개편의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음.

〈표 5-2〉 연령별 단독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처치집단	항목	종속변수		
		근로소득 유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여부
20대 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434	-0.5937	0.0096
	표준오차	(0.1227)	(2.1049)	(0.0732)
30대 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075	-2.3847	-0.0149
	표준오차	(0.1441)	(2.5441)	(0.0710)
40대 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410	-3.0659	-0.0286
	표준오차	(0.1392)	(2.4182)	(0.0667)
50대 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873	-2.8343	-0.0642
	표준오차	(0.1561)	(2.3924)	(0.0718)
60대 이상 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173	0.2873	-0.0051
	표준오차	(0.1350)	(2.3465)	(0.0634)

주 : 합성비교집단 가중치와 시점 가중치는 생략함.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표 5-3〉는 연령별 비단독가구에 대한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의 노동공급 효과를 보여줌.

○ 근로장려세제의 가구 분류인 홑벌이, 맞벌이로 더 나누어 살펴보지 않은 이유는 홑벌이와 맞벌이라는 분류 자체가 이미 한 가구의 노동참여 패턴을 정하고 있기 때문임.

〈표 5-3〉 연령별 비단독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처치집단	항목	종속변수		
		근로소득 유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여부
20대 비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075	-0.7389	-0.0180
	표준오차	(0.1465)	(2.3606)	(0.0611)
30대 비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598	-1.2227	-0.0119
	표준오차	(0.1540)	(2.3521)	(0.0651)
40대 비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017	-1.6179	-0.0223
	표준오차	(0.1546)	(2.3699)	(0.0708)

〈표 5-3〉의 계속

처치집단	항목	종속변수		
		근로소득 유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여부
50대 비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485	0.0454	-0.0356
	표준오차	(0.1594)	(2.1616)	(0.0784)
60대 이상 비단독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424	-1.5797	0.0190
	표준오차	(0.1602)	(2.2551)	(0.0829)

주 : 합성비교집단 가중치와 시점 가중치는 생략함.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비단독가구에서도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근로소득 유무와 점증구간 포함 여부를 통한 노동참여 증가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표 5-4〉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정책효과를 보여줌.

○ 기초생활수급가구가 근로소득 유무에서 비교적 큰 음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점증구간 포함 여부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노동공급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5-4〉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정책효과 추정

처치집단	항목	종속변수		
		근로소득 유무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임금근로)	근로소득 점증구간 포함 여부
기초생활수급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746	-2.0569	-0.0099
	표준오차	(0.1432)	(2.7232)	(0.0712)
비수급가구 (자산 2억 미만)	추정량($\hat{\tau}$)	0.0057	-0.5909	-0.0074
	표준오차	(0.1357)	(2.3695)	(0.0685)

주 : 합성비교집단 가중치와 시점 가중치는 생략함.
자료 : 복지패널 11차~15차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4절 소 결

○ 이 장은 2018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효과를 추정하였음.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발표되고 난 후인 2019년에 정책대상자의 노동공급 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추정함.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은 처치집단과 유사하면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

- 자산이 2억 이상인 집단에서 처치집단 자산 2억 미만 가구의 노동결정과 비슷한 집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음.
- 비교집단을 찾는 대신, 처치집단과의 처치전 결과변수 추세가 평형하게 유지하는 '합성된' 비교집단을 활용함.

○ 추정 결과, 노동참여와 노동시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됨.

- 표준 오차가 커서 추정 정확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 근로장려금의 확대가 노동참여를 증진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음.
- 20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아닌 도입의 효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참여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노동참여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추후 연구를 위해, 연간 자산 정보와 소득 정보, 노동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면서 많은 관측수를 갖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정리

1. 보고서 요약

□ 서론

○ (정책 배경과 발전)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됨.
- 도입 이후로 꾸준히 정책 대상 확대 및 지급액의 증가가 있었고, 그 중 2018년에 큰 제도 개편이 있었음.
- 정책 대상 확장 : (1) 30세 미만 단독가구 대상 추가, (2) 자산요건 확장(1.4억 → 2.0억), (3) 가구별 소득평가액(총급여액등) 구간 확장
-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대폭 상승

○ (고용연계성)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는 소득구간에 따라 다름.
- 이론적인 소득-여가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면
- (1) 점증구간에서 노동참여 증가 효과가 기대됨.
-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선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최저임금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공급 모형으로 노동참여 효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 설명 가능하므로 이론적 예측이 어려움.

□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추이) 국세통계포털(TASIS) 데이터를 통해 2008년 도입 이후로 꾸준히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이 증가해왔음을 볼 수 있음.
- 특히 2018년의 제도 개편으로 수급가구 수와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였음.

○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식) 복지패널의 근로장려금 관련 설문을 통해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 수급가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
- 지급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수급액 사용처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 근로의욕(근로상태의 유지로 해석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임.

○ (수급가구의 근로 현황) 복지패널을 통해 수급가구의 근로자들은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임시임금근로와 일용임금근로의 비율이 높음.
-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음.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 일반균형모형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기에 용이함.

○ 각 시나리오별 균제상태(steady state)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므로 장기적 정책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결과 1 : EITC 도입과 2018 개편) EITC의 도입과 현행제도로의 확장은 저소득층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전일제 비중이 줄어듦으로써 노동시간은 감소시킴.

○ (결과 2 : 제도 확장) (1) 2022년 개편안, (2) 최대지급액 상승과 함께 점증구간 기울기 상향, (3) 자산기준 완화 시나리오를 2018년 개편을 토대로 한 기준 경제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용률의 소폭 상승이 있었음.
- (1) 2022 개편안은 최저소득계층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고, 차상위계층에서의 전일제 비율이 소폭 상승함.
- (2) 최대지급액 상승을 통한 점증구간 기울기 상승은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비율의 감소를 불러옴.
- (3) 자산기준 완화는 최저소득계층보다 차상위계층에서 고용률 상승과 전일제 비율 감소 효과를 보임.

○ (결과 3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영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상한액의 상승과 급여액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때, (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EITC의 효과를 비교해봄.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고용률이 내려가고 노동시간도 감소함.
- (2) 최저임금 상향조정은 고용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감소시킴.

□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함.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근로장려금 수급을 염두에 두고 일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자격이 충족되는지 여부($\mathit{Eligibility}$)를 관심 독립변수로 설정함.

○ (분석결과 1) 근로 및 사업소득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했을 때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분석결과 2) 근로소득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했을 때, 분석범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옴.
- 2018년 이전만 범위에 포함하면 약 2%p, 2019년 이후만 포함하면 약 9%p의 계수가 추정됨.

- 이는 모형에 포함된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두 동일할 때, 수급요건의 변화가 근로소득의 유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해석할 수 있음.

□ 2018년 제도 개편의 정책 효과 추정

○ (분석방법) 2018년 개편의 정책 효과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통해 분석함.
- 2018년 개편에서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산 2억 미만) 가구원을 처치집단으로 둠.
- 정책 개편을 인지한 상태로 결정될 2019년(처치시점) 이후의 노동참여를 종속변수로 둠.
- 비교집단을 정책의 영향받지 않을 비대상(자산 2억 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활용하되, 인과관계 추정의 핵심가정인 추세 평형을 만족하도록 합성된 비교집단을 구성함(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 (분석결과) 근로소득유무, 근로시간, 점증구간소득유무 세 가지의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됨.
- 근로장려금의 확대가 노동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 연령별, 가구형태별 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표준오차가 커서 추정 정확도에 아쉬움이 있음.

2. 분석 결과 정리

○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과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분석은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른 노동공급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다른 결과를 보고함.
- 일반균형모형에서는 고용률의 상승과 근로시간의 감소효과를 보고함.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 분석에서는 고용률과 근로시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고함.
- (1)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의 차이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 실증분석에서는 일반균형모형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정책 이해도

(제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지급체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와 체감도의 차이까지 반영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정책 효과의 추정 결과에 차이를 불러올 수 있음.

○ 4장과 5장에서 수행한 두 실증분석은 추정하고자 하는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정책 효과에 대한 다른 효과를 보고한 것이 아님.

-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활용한 선형모형 분석은 특정 기간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가 노동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의 '격차'를 추정하였음(예 : 2019년 이후 같은 조건이지만 자격요건만 서로 다를 경우 9%p의 근로소득 유무 차이가 있음).
- 합성통제집단 이중차분법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인한 처치집단과 합성된 통제집단의 격차의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s)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추정하였음(예 : 개편 전까지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고용률 차이가 4%p였는데, 개편 후에 집단간 차이가 4.5%p로 바뀜).

○ 두 실증분석의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음.

- 정책 개편 후 자격요건 충족과 노동참여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정책 개편 전후 비교를 통한 인과 효과 추정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아, 정책 개편의 노동참여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정책 개편 후 추정된 양의 상관관계는 정책 개편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정책 개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종합하자면

- 근로장려세제는 장기적으로 고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및 급여 상승과 최저임금의 상향은 근로장려세제의 고용효과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이해도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을 실증분석에서는
- 근로장려세제하에서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노동참여의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었으나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노동참여 증진을 불러온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음.

제2절 정책 제언

1. 노동 참여 효과의 원인

○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참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꽤 있었고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고한 경우도 있었음.
  -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에 좋은 2018년 제도 개편을 다룬 연구들에서, 노동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경우가 드뭄.

○ 이론적으로 노동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 예상되는 근로장려세제에서 뚜렷한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는 이유를 정책 제언 이전에 고려해 보았음.

□ 비탄력적인 노동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저소득 가구에는 결코 적은편이 아니지만, 소득에 대한 노동참여 탄력성이 낮을 경우 노동 결정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

○ 즉, 노동 결정이 근로장려금에 의해 영향받을 정도로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참여 증진 효과가 관측되지 않을 수 있음.
  - 일 안하는 사람은 일 안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있고(예:

안정적인 직장을 위한 준비 등) 그 이유가 근로장려금이 주어진다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 또한 그 근거가 될 수 있음.

- 2018년 30대, 40대, 50대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비율은 75%에서 80%대였음.
-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긍정적인 노동참여효과를 보였던 미국의 한부모 가구 여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참여율이 낮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 (1)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여 노동참여를 결정할 비경제활동인구 자체가 많지 않고, (2) 이들 중 상당수가 단순한 여가 선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노동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여 증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표 6-1〉 2018년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연령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20세~29세	57.9	6.0	36.0	100.0
30세~39세	75.7	2.7	21.7	100.0
40세~49세	79.0	2.0	19.0	100.0
50세~59세	75.2	1.9	22.9	100.0
60세~69세	54.0	1.8	44.2	100.0

자료 :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사후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체계

○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은 t-1년 소득에 대해 t년 5월에 신청하여, t년 9월에 수급받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근로장려금의 노동참여 효과는 (1) 근로장려세제가 없을 때에는 t-1년에 일하지 않을 사람이, (2) t년도 9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감안하여, (3) t-1년도 한해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때 나타남.

- t년도 9월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감안하여 t-1년도의 노동결정을 한다

는 것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년 9월까지의 금액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임.

○ 그러나 노동결정과 최종지급까지의 시기적 차이가 짧지 않은 현행 지급체계에서는 사전적 고려를 통한 수급이 아닌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주어지는' 사후적 수급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음.

- 대부분의 정책대상자가 근로장려금을 사후적 수급으로 받아들일 경우 앞서 설명했던 노동참여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음.
- 근로장려금을 사후적 수급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경우라고 표현하겠음.

○ 2019년 시행된 반기지급은 상반기분 지급을 t-1년 12월에, 하반기분을 포함한 정산을 t년 6월에 하므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임.

- 반기분을 t-1년 12월에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시기를 앞당겼음.
- 여전히 노동결정 시기와 수급시기 간의 차이가 있어서 사후적 수급에 대한 인식이 바뀔지 알 수 없으나 체감도를 개선시키는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음.
- 아직은 2020년(귀속연도) 하반기분 지급 가구수가 113만[19], 2020년(귀속연도) 전체지급 가구 중 근로소득으로 수급한 가구수가 253만[20]으로 반기지급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정책 체감도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영국의 주별 혹은 월별 지급 경우에서 보듯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음.

2. 정책 제언

□ 복지정책 인프라 활용

○ 현행 지급체계가 정책 체감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세무행정의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기지급의 경우, 근로소득의 명세가 반기별로 나오는 것에 맞춰서

19) 국세통계포털, 14-5-1.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
20) 본 보고서 2장, 〈표 2-7〉.

최대한 주기를 앞당겼음.

- 반기별 근로소득 명세는 세무행정의 체계하에 운영되므로 근로장려금 정책만을 위해 주기를 변경하기 쉽지 않음.

○ 사회안전망으로서 형태적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복지정책의 인프라를 활용할 여지가 있어보임.

-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심사하여 지급되고 있음.

○ 위의 복지정책들의 특징 중 근로장려금의 개선에 활용할 만한 점들은 다음과 같음.

- (1) 신청시기를 고정할 필요가 없고, (2) 월단위로 지급되어 정책 체감도가 높으며, (3) 한번 신청한 뒤에는 재심사 및 갱신이 시스템에서 이뤄지고, (4) 다른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대상자를 추가 발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정책 체감도가 높아지면, 근로장려금 수급을 의식하여 노동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음.

○ 복지정책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위의 장점들을 도모할 수 있음.

- 복지정책의 인프라 활용이란, 좁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소득 및 자산 파악의 행정력 활용을 의미함.
- 복지정책의 인프라를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협의가 가능함(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활용 중).
- 세무행정의 범위를 벗어나 복지정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세제'로서의 정체성을 어지럽히거나 저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정책적, 행정적 애로사항을 유발할지도 모르겠으나, 정책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환영할 만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 조심스럽게 제언을 남김.

□ 정책의 정체성 확립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조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된 정책임.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유인 증진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보조의 역할이 더 컸다고 여겨짐.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비롯하여 선행연구들에서도 근로유인 증진의 뚜렷한 효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았음.
- 이는 정책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 비탄력적 노동 등의 환경적 요소가 작용했다고 보임.

○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근로장려금에 대한 체험수기에서도 소득보조의 역할이 강조됨을 볼 수 있음.

- 〈표 6-2〉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기집 최근 3년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여줌.
- 매해 선정되는 수기들은 노동참여를 하게되었다는 내용보다 사후적으로 주어진 근로장려금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득보조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표 6-2〉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분석

수기 작성자가 수급한 장려금				
연도	근로·자녀장려금 동시수급	근로장려금 단독수급	자녀장려금 단독수급	총합
2019	9	10	6	25
2020	16	9	0	25
2021	9	16	0	25
총합	34	35	6	75

수기의 내용 분류			
연도	노동참여	소득보조	총합
2019	1	18	19
2020	0	25	25
2021	2	23	25
총합	3	66	69

자료 : 국세청(2019, 2020, 2021)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연구보조원(정해웅)이 작성.

- 노동참여로 분류된 3개의 수기도 근로장려금 받을 것을 고려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등)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들이었음.

○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1) 근로유인 증진과 소득보조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과, (2) 소득보조의 역할에 집중하여 근로유인의 저해가 없는 저소득가구 소득지원세제로 발전시키는 방향, 둘 중 하나의 선택이 필요

○ 근로유인의 증진 효과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점증구간 기울기의 상승, 자산요건 완화, 앞서 언급한 복지정책 인프라 활용을 통한 정책 체감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환경적 한계(비탄력적 노동, 이미 높은 경제활동참여율)로 인해 기울인 노력과 자원에 비해 근로유인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 소득보조에 집중한다면

- 근로유인의 저해가 없는 저소득가구 지원세제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현재 잘 작동하고 있는 소득보조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보다 근로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명 변경이 정책 대상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고 정책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안이라 생각됨.
- 근로유인의 저해가 없는 한에서 기존 점증구간이 포함된 사다리꼴 지급액 결정구조에서 평탄구간부터 시작하는 영국식 지급액 결정구조를 택하여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2007),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국세청(2019), 『2019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국세청(2020), 『2020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국세청(2021), 『2021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국세청(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기획재정부(202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김문정·김빛마로(2020),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남재량(2017),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지원(2022),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38권 제1호, pp.51~78.

박지혜·이정민(2018),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3호, pp.1~59.

서민지(2021), 「근로장려세제(한국형EITC)가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신상화(2021),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가구유형별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265~308.

신우리·송헌재(2018),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pp.107~138.

안종석·송헌재·홍우형(2017),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민이·임다희·조민효(2014),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분석 : 가구특성과 성별에 따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4권 제1호, pp.21~50.

이대웅·권기헌·문상호(2015),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pp.27~56.

한종석·장용성·김선빈(2019), 「근로장려세제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경제

의 분석』, 제25권 제2호, pp.1~52.
한종석·김선빈·장용성(2021),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 효과 분석」, 『계량경제학보』, 제32권 제1호, pp.80~115.
홍민철·문상호·이명석(2016),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pp.1~27.
홍우형(2021),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4권 제4호, pp.77~106.

Arkhangelsky, Dmitry, Susan Athey, David A. Hirshberg, Guido W. Imbens, and Stefan Wager(2021), "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1(12), pp.4088~4118.
Athreya, Kartik, Devin Reilly, and Nicole Simpson(2014), "Young Unskilled Women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Insurance Without Disincentives?", Working Paper Series, 14-11,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Bastian, Jacob(2020), "The rise of working mothers and the 1975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Journal : Economic Policy 12 (3), pp.44~75.
Blundell, Richard, Monica Costa Dias, Costas Meghir, and Jonathan Shaw(2016), "Female Labor Supply, Human Capital, and Welfare Reform", Econometrica 84 (5), pp.1705~1753.
Bonnefoy, V., Buffeteau, S., & Cazenave, M. C.(2009), De la prime pour l'emploi au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un déplacement de la cible au profit des travailleurs pauvres. INSEE, France, portrait social-edition.
Cho, Jang-Ok and Richard Rogerson(1998), "Family Labor Supply and Aggregate Fluctu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1,

pp.233~245.

Chetty, Raj, Adam Guren, Day Manoli, and Andrea Weber(2011), "Are Micro and Macro Labor Supply Elasticities Consistent? A Review of Evidence on the Intensive and Extensive margin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 pp.471~475.

Crandall-Hollick, M. L.(2018),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A brief legislative histor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Dickert, Stacy, Scott Houser, and John Karl Scholz(199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9, pp.1~50.

Dilnot, A., & McCrae, J.(1999), "Family Credit and the Working Families Tax Credit",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Drees(2018), Minima sociaux et prestations sociales - Ménages aux revenus modestes et redistribution - Édition 2018,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ss).

Dupont, G., & Sterdyniak, H.(2001), La prime pour l'emploi, un instrument ambigu. Lettre de l'OFCE, (203), pp.1~4.

Dwyer, P., & Wright, S.(2014), Universal credit, ubiquitous condition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citizenship. The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22(1), p.27.

Eissa, Nada and Jeffrey B. Liebman(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 (2), pp.605~637.

Ellwood, David T.(2000),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cial Policy Reforms on Work, Marriage, and Living Arrangements", National Tax Journal, 53 (4), pp.1063~1105.

Falk, G.(2014),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isher, P.(2011), British Tax Credit Reform : Labour Market Outcomes

and Beyond, University of Sheffield.

Francesconi, Marco and Wilbert Van Der Klaauw(2007), "The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In-Work" Benefit Reform for British Lone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 (1), pp.1~31.

___ and ___(2009), "The Effects on In-Work Benefit Reform in Britain on Couples : Theory and Evidence", *Economic Journal* 119 (535), F66-F100.

Froemel, Maren and Charles Gottlieb(2021),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 Targeting the poor but crowding out wealth",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4 (1), pp.1~35.

Grogger, Jeffrey(2003), "The effects of time limits, the EITC, and other policy changes on welfare use, work, and income among female-headed famil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2), pp.394~408.

Groulx, L. H.(2003), Le revenu de solidarité : une solidarité en trompe l'œil?. Canadian Review of Social Policy/Revue canadienne de politique sociale, (51).

Hotz, V. J.(2001),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Hoynes, Hilary W. and Ankur J. Patel(2018),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3 (4), pp.859~890.

Institut des Politiques Publiques(2022), https://www.ipp.eu/baremes-ipp/impot-sur-le-revenu/calcul_credits_impots/ppe/, 2022/06/20 접속.

Internal Revenue Service(2022a),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arned-income-and-earned-income-tax-credit-eitc-tables, 2022/03/28 접속.

Internal Revenue Service(2022b),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how-to-claim-the-earned-

income-tax-credit-eitc, 2022/04/01 접속.
Internal Revenue Service(2022c), https://www.irs.gov/e-file-providers/definition-of-adjusted-gross-income, 2022/04/05 접속.
Kleven, Henrik(2019), "The EITC and the Extensive Margin : A Reappraisal", No. w2640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Laun, Lisa(2017), "The effect of age-targeted tax credits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work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52, pp.102~118.
Laun, L.(2019), In-work benefits across Europe, IFAU.
Lee, Jungmin, and Geumbi Park(2019),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Business Closing : Evidence from Employer-Employee Matched Panel Data", presented 2019 WEAI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June 28-July 2.
Lim, Katherine and Katherine Michelmore(2018), "The EITC and self-employment among married mothers", *Labour Economics* 55, pp.98~115.
Marx, I., & Nolan, B.(2014), In-work poverty. Reconciling work and poverty reduction : how successful are European welfare states, pp.131~57.
Meyer, Bruce D. and Dan T. Rosenbaum(2000), "Making Single MothersWork : Recent Tax and Welfare Policy and its Effects", National Tax Journal, 53 (4.2), pp.1027~1059.
___ and ___(2001),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 (3), pp.1063~1114.
Michelmore, Katherine and Natasha Pilkauskas(2021), "Tots and Teens : How Does Child's Age Influence Maternal Labor Supply and Child Care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9 (4), pp.895~929.
Ministe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eforme de l'etat(2012),

LA PRIME POUR L'EMPLOI(Impôts 2012).
Montgolfier, A.(2015), Avis n° 490 (2014-2015), SÉNAT.
Ortigueira, Salvador and Nawid Siassi(2022), "The U.S. Tax-transfer System and Low Income Households : Savings, Labor Supply and Household Formation", *Review of Economic Dynamics* 44, pp.184~210.
Pervier, H.(2005), "La prime pour l'emploi : pour qui, pourquoi ?", Droit Social.
Rachidi, A.(201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marriage penalties : Does a childless worker expansion make them wors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Rothstein, J., Ben Zipperer(2020), "The EITC and minimum wage work together to reduce poverty and raise incomes", Economic Policy Institute.
Royston, S.(2012), Understanding universal credit.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20(1), pp.69~86.
Strickland, P.(1998), Working families tax credit and family credit.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Tax Policy Center(2022a),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parameters, 2022/03/30 접속.
Tax Policy Center(2022b), https://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what-earned-income-tax-credit, 2022/04/07 접속
UK Goverment(2022a),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what-youll-get, 2022/04/11 접속.
UK Goverment(2022b),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1/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1-background-and-definitions-document, 2022/05/02 접속.
UK Goverment(2022c), https://www.gov.uk/when-is-your-next-tax-credits-payment, 2022/05/17 접속.

UK Goverment(2022d), https://www.gov.uk/guidance/tax-credits-working-out-income, 2022/05/19 접속.
UK Goverment(2022e), https://www.gov.uk/guidance/tax-credits-working-out-income, 2022/08/02 접속.
UK Goverment(2022f), https://www.gov.uk/working-tax-credit, 2022/04/11 접속.
UK Goverment(2022g), https://www.gov.uk/universal-credit, 2022/04/11 접속.
UK Goverment(2022i),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and-working-tax-credits-statistics-provisional-awards-april-2021, 2022/06/28 접속.
UK Goverment(2022j),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93421/Finalised_Awards_2021_Main.ods, 2022/09/14 접속.
UK Goverment(2022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tax-credits-child-benefit-and-guardians-allowance/tax-credits-child-benefit-and-guardians-allowance, 2022/09/19 접속.
World Bank(202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N?end=2021&locations=OE&start=2014, 2022/09/20 접속.

부록

근로장려세제 관련 법령 개정 주요 연혁

〈표 A-1〉 근로장려세제 도입

주요 사항	법령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6. 12. 30.〉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 대상요건 -근로소득자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자녀·배우자·연령요건 -부양자녀 2인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총소득요건 -1,700만 원 미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 원 미만일 것
○ 주택요건 -무주택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재산요건 -1억 원 미만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대상요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주요 사항	법령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112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2008. 1. 1.부터 시행	**부칙**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2〉 대상요건 – 신청 가능 요건

주요 사항	법령 본문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 **부칙** 〈법률 제9921호, 2010. 1. 1.〉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일부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일부개정]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주요 사항	법령 본문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제100조의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5.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제10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3〉 대상요건 – 제외 요건

주요 사항	법령 본문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범위 명확화 -신청일 직전년도에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부칙**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 수급자의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탈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 확대 -신청년도 3월 중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자 제외 2013.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단, 2013년 3월 중 받았더라도 2012년 중 3개월 이상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1.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 포함 2015.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법 시행일 유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014. 1. 1.〉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제21조(근로장려금의 산정자격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2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4〉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주요 사항	법령 본문
○ 부양자녀요건 1인으로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08. 12. 26.〉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부칙**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200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배우자요건 - 유배우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11. 12. 3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201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적용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연령요건 -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까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11. 12. 31., 2013. 1. 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 1. 1.〉
2013.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연령요건 단계적 완화 (50세 이상) 2016.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40세 이상) 2017.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 40세 이상

주요 사항	법령 본문
(※법 시행일 유의)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연령요건 단계적 완화 (30세 이상) 2017. 4. 18.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적용 (※법 시행일 유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1. (생략)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40세 이상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 30세 이상 **부칙** 〈법률 제14760호, 2017. 4. 18.〉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연령요건 폐지 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1. 삭제 〈2018. 12. 24〉 **부칙**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5〉 주택요건 및 재산요건

주요 사항	법령 본문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200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08. 12. 26.〉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일부개정]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부칙**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도 허용 2012. 1. 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주택요건 주택 가격기준 삭제 ○ 재산요건 재산요건 1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 1억 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주요 사항	법령 본문
2015 1. 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 제4호를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주택요건 폐지 2017.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3. 삭제 〈2016. 12. 20.〉 **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재산요건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 1억 4천만 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지급 2019.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략)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17. 12. 19., 2018. 12. 24.〉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 원 미만일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24.〉 **부칙**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6〉 가구유형

주요 사항	법령 본문
결혼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 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1.〉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 1. 1.〉
2014.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칙**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2018.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2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사항	법령 본문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생략)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칙**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2020.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부양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생략)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

주요 사항	법령 본문
	이라 한다)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칙**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2021.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A-7〉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주요 사항	법령 본문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설정함으로써 총소득 합계액 산정기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생략)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 100분의 75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100분의 90 **부칙**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201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제1조(시행일)**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사항	법령 본문
업종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률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8. 1.]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생략) 4.「소득세법」 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40 마.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00분의 75 차.「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100분의 90
2022.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제13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③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표 A-8〉 근로장려세제 신청 자격요건과 급여체계 세부 변화

소득 귀속연도		2008-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20	2021	2022 (개정안)
① 대상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제외	생계·주거·교육급여 귀속연도 3개월 이상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신청년도 3월 중 수급자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②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1,7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0명 : 1,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1명 : 1,7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2명 : 2,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3명 이상 : 2,5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2,5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120만 원	70/140/170/200만 원		70/170/210만 원			77/185/230만 원	85/200/250만 원	150/260/300만 원		165/285/330만 원
③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요건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이거나										
		-	배우자가 있거나									
		-		6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		
									중증 장애인			
④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5천만 원 이하 1주택	무주택 또는 6천만 원 이하 1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				
⑤ 재산요건		1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2022.7.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 발행연월일	2022년 12월 26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3 0 1 4 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 ·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13-155호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260-0631-1 (비매품)

근로장려세제(EITC)의
고용효과

93330
9 791126 006311
ISBN 979-11-260-0631-1